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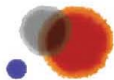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122-11

2015 정기국회 보고 자료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이 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과 그 시행 결과를 수록한 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 목 차

제 1 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3
1. 언어정책의 개념	3
2. 국어정책의 개념과 방향	4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8
1. 국어기본법	8
2. 국어기본법 시행령	12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16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18
1. 문화체육관광부	18
2. 국립국어원	21
3. 국립한글박물관	26
4. 세종학당재단	29
5. 국어심의회	33
6. 국어책임관	41
7. 국어문화원	45

제 2 장

국어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51
1. 공공언어 사용 실태	51
2. 국내외 국어교육	67
3. 국내 한국어교육	81
4. 국어 관련 민간단체	86
제2절 국외 현황	99
1. 한국어의 위상	99
1.1. 한국어 사용자 수	99
1.2. 외국의 한국어 과목 채택 및 개설 현황	100

2. 한국어 국외 보급	104
2.1. 한국어 보급 기관	104
2.2.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104

제 3 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109
1.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기반 조성	109
2.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으로 전환	110
3. 한글·한국어의 대내외 위상 강화	112
제2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113
1. 근거 및 목적	113
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	114
3. 제1차~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115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 수립 배경 및 추진 성과 ...	121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21
1.1. 수립 배경	121
가.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121
나.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21
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122
1.2. 추진 성과	122
가.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122
나.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23
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125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126
2.1. 수립 배경	126
가.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126
나.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127
다.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127
2.2. 추진 성과	128
가.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128
나.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129
다.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129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130
3.1. 수립 배경	130
가.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130
나.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131
다. 언어 사용 문화 개선	131
3.2. 추진 성과	132
가.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132
나.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136
다. 언어 사용 문화 개선	138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138
4.1. 수립 배경	138
가. 세종학당 확대·운영	139
나.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40
다.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141
4.2. 추진 성과	142
가. 세종학당 확대·운영	143
나.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55
다.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161
5.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166
5.1. 수립 배경	166
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166
나.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167
다.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	171
5.2. 추진 성과	172
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172
나.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177
다.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	188

제 4 장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제1절 비전과 목표	197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201
1.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추진	201
1.1. 쉽고 바른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	201

1.2. 고품격 바른 언어 사용을 선도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201
1.3. 미래세대의 자율 참여로 가꾸어 가는 청소년 언어	202
1.4.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홍보	203
2.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	203
2.1.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203
2.2. 국어문화원을 지역 국어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육성·지원	204
2.3.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연계 강화	204
3. 수요자 중심의 국어정책 지원	205
3.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어·언어정책 구현	205
3.2. 국어 소외계층의 언어능력 향상 지원	205
3.3.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206
4. 세종학당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산	206
4.1. 부처 간 협력 및 기업 후원 유치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 강화	206
4.2. 교육과정 다양화 및 시설 지원 등의 운영 내실화	207
4.3. 세종학당 운영 체계 강화	207
5. 한글의 산업적 성장 기반 강화	208
5.1. 국민 참여 한글문화 축제 활성화	208
5.2. 한글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208
6.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활성화	208
6.1.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는 기획 전시 개최	208
6.2. 문자, 언어 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교육 강좌 운영	209
6.3.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공공자원화 추진	209

부 록

국어기본법(2013. 3. 23. 개정 공포)	213
국어기본법 시행령(2014. 12. 23. 개정 공포)	221
국어기본법 시행규칙(2010. 12. 29. 제정 공포)	238
국어심의회 운영세칙(2014. 5. 16. 개정 공포)	251

● 표 목차

◆ 제1장

〈표 1-1〉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5
〈표 1-2〉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	5
〈표 1-3〉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0
〈표 1-4〉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5
〈표 1-5〉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16
〈표 1-6〉 국어정책과 세출 예산	20
〈표 1-7〉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20
〈표 1-8〉 국립국어원의 세출 예산	22
〈표 1-9〉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23
〈표 1-10〉 국립한글박물관 세출 예산	27
〈표 1-11〉 국립한글박물관 과별 주요 업무	28
〈표 1-12〉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36
〈표 1-13〉 국어심의회 위상, 기능, 조직 변천	36
〈표 1-14〉 국어심의회 주요 심의 사항	37
〈표 1-15〉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3. 1.~14. 12.)	40
〈표 1-16〉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41
〈표 1-17〉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42
〈표 1-18〉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13년~14년)	44
〈표 1-19〉 전국 20개 국어문화원 현황(15. 6.)	45
〈표 1-20〉 국어문화원 연혁	46
〈표 1-21〉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47

◆ 제2장

〈표 2-1〉 매체언어 실태 조사 결과	52
〈표 2-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52
〈표 2-3〉 공공언어의 종류	54
〈표 2-4〉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59
〈표 2-5〉 공공기관 보도 자료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61
〈표 2-6〉 행정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대상(총 312개 중 일부)	62
〈표 2-7〉 공공언어 바로잡기 관련 책자 및 주요 배포처	64
〈표 2-8〉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10년~14년)	64
〈표 2-9〉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68
〈표 2-10〉 국어·언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수(13년)	72
〈표 2-11〉 중학교 교원현황(14년)	74
〈표 2-12〉 고등학교 교원현황(14년)	75
〈표 2-13〉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13년)	77
〈표 2-14〉 2012년~2013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원 금액 및 참여 현황	78
〈표 2-15〉 2012년~2013년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현황	79

〈표 2-16〉 2015년도 전 세계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	80
〈표 2-17〉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및 대학 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14년)	81
〈표 2-1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82
〈표 2-1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	83
〈표 2-20〉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4년)	84
〈표 2-21〉 국어 관련 단체 통계('15년 6월)	86
〈표 2-22〉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15년 6월)	87
〈표 2-23〉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활동 내용	97
〈표 2-24〉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회원 학회 명단(가나다순 배열)	97
〈표 2-25〉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상위 20개 언어	100
〈표 2-26〉 외국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13년)	101
〈표 2-27〉 외국의 한국학(대학 및 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현황	102
〈표 2-28〉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	105

제3장

〈표 3-1〉 3대 중점 추진 과제	115
〈표 3-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16
〈표 3-3〉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120
〈표 3-4〉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10년~'14년)	125
〈표 3-5〉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요청 및 지원('10년~'14년)	132
〈표 3-6〉 공공용어 (한국어=외국어) 번역 표준화 절차	133
〈표 3-7〉 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한 전면적 진단 평가 결과('13년~'14년)	134
〈표 3-8〉 대중매체의 언어 개선 주요 실적('13년~'14년)	135
〈표 3-9〉 전문용어 개선 상시 지원 체제	137
〈표 3-10〉 세종학당 지정 절차	143
〈표 3-11〉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15년 5월 기준)	145
〈표 3-12〉 국가별 일반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15년 5월)	146
〈표 3-13〉 세종학당 교육과정별 교재 현황	150
〈표 3-14〉 『세종한국어』, 『세종한국문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현황	157
〈표 3-15〉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현황	162
〈표 3-16〉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참여 기관별 역할	169
〈표 3-17〉 국립한글박물관 주요 공간	175
〈표 3-18〉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콘텐츠 구축 실적('13년~'14년)	179
〈표 3-19〉 한국어의 지역어 분포 조사 실적('13년~'14년)	188
〈표 3-20〉 민족생활어 조사 현황	189

제4장

〈표 4-1〉 국내외 국어 환경의 비대칭적 상황	198
----------------------------	-----

● 그림 목차

제1장

[그림 1-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7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조직도	19
[그림 1-3] 국립국어원 조직도	22
[그림 1-4]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27
[그림 1-5]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29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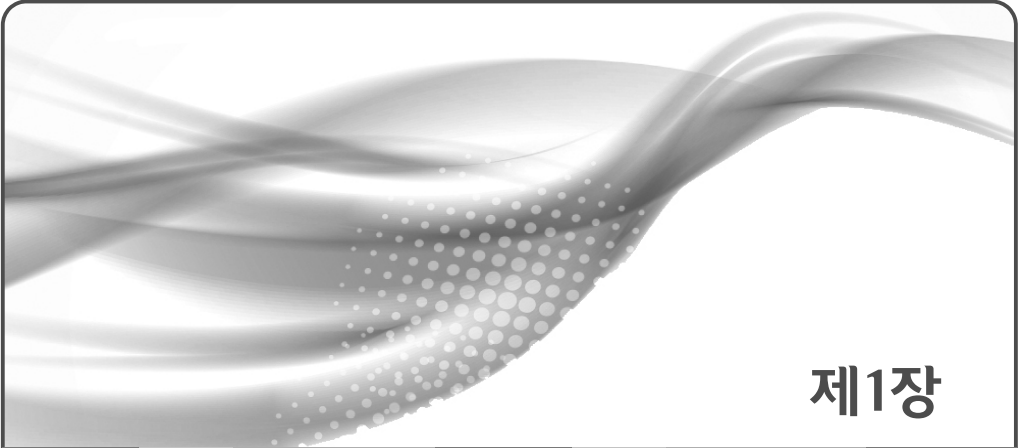
[그림 2-1]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및 오류 분포 결과	53
[그림 2-2] 전국 대학·대학원의 국어 관련 학과 현황('13년)	71
[그림 2-3]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현황('13년)	75
[그림 2-4]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인정 체제 현황('13년)	76
[그림 2-5]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 기관('13년)	77
[그림 2-6]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84
[그림 2-7]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혁	105

제3장

[그림 3-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114
[그림 3-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119
[그림 3-3] 2014년 신규 세종학당 누리집	144
[그림 3-4] 국가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15년 5월 기준)	146
[그림 3-5]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원용 지침서	151
[그림 3-6]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14년)	153
[그림 3-7]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자가 연구 과정 화면	156
[그림 3-8] 온라인·모바일 '누리-세종학당' 화면	157
[그림 3-9] 세종한국어 6, 세종한국문화 2 온라인 강좌 화면	158
[그림 3-10] 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13년~'14년)	159
[그림 3-11]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화면	160
[그림 3-12] 한국어교육학습센터	163
[그림 3-13] 세종학당의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	164
[그림 3-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요	168
[그림 3-15] 국립한글박물관 전경	173
[그림 3-16] 한글주간 행사, 전시 사진	177
[그림 3-17] 언어 정보 나눔터(http://itub.korean.go.kr)	183
[그림 3-18]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kcenter.korean.go.kr/)	187
[그림 3-19] 지역어 경연대회 사진	192

제4장

[그림 4-1] 앞으로의 언어정책 비전과 목표	199
---------------------------------	-----



제1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제1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1. 언어정책의 개념

‘언어정책’은 일반적인 ‘정책’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정책’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정책’을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하고 있고, 영어의 ‘policy’는 “결정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는 생각이나 계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언어정책’을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언어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또는 “언어와 관련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반으로 사용되는 생각이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은 국가에서 언어와 관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풀어 볼 때, 결국 ‘언어정책’은 국가가 언어와 관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방책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언어정책을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하고 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예로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등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정책’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통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언어정책은 곧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인 국가가 언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정책의 범주는 어문규범이나 문자 정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언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언어정책의 실현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민간에서 펼치는 각종 언어 관련 활동은 그것이 표준어 확립이나 맞춤법 제정,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활동, 국어 순화 등에서 국민 전체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어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활동은 ‘언어운동’이라 하여 언어 정책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의 구분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언어정책을 실행하면서 대중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언어운동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며, 민간 단체의 언어운동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에 의존하기도 한다.

2. 국어정책의 개념과 방향

국어정책은 언어정책의 하위 범주로, 정책의 대상이 국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라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때의 ‘한국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접하는 한국어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언어정책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국어정책은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의 언중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 등 언중의 언어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상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문제, 사전 편찬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표 1-1〉 1991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 한글의 기계화 및 과학화 사업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제 규범
- 생활 언어 및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
- 한글의 역사적 변천과 방언의 조사 및 연구
- 남북한 언어 통일
-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
- 국어의 해외 보급과 해외 거주자의 국어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과 국어 관련 각종 사전의 발간
-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중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01년과 2002년에 들어 국어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국어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된다. 국립국어원이 국어정책의 국가 중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나아가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에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07년~11년)을 수립하고 5년 뒤인 2011년에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12년~16년)을 수립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보겠다.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2011. 6. 16. ‘국어정책과’로 변경)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던 국어정책 가운데 순수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되면서 다시 한번 국어정책 수행에 변화가 있었다. 2009년 5월 이후의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1-2〉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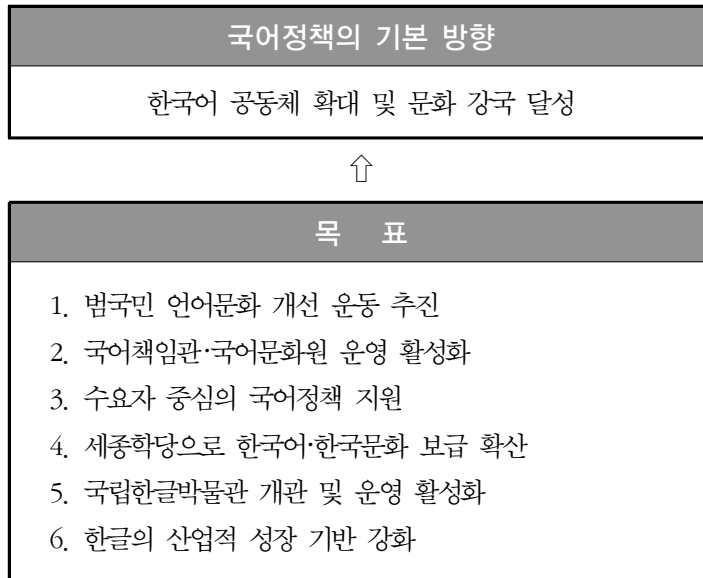
-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
-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지역어 발굴 및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 ○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책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국어원 추진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및 통계 생성·수집 ○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특수 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 ○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올바른 국어의 보급, 언어순화 활동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 관련 기관과 종사자를 위한 지원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국내외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자격 부여 ○ 한국어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

이렇게 정책 수행 기능과 연구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으로 분리되었지만 두 기관의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나라 안팎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국내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확산에 따라 전문 영역을 넘어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의 사용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심각한 외래어·외국어의 오·남용과 인터넷 통신언어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국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세대교체는 지역어와 민족 문화 생활어를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반대로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 국제적 위상 향상,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대미문의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탈북민’, ‘탈북 동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임.),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로 언어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남북한의 정세 변화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언어정책은 이러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엄정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1.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24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시행 2013. 3. 23.)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와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변칭 변경)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한글 관련 주요 법령이었지만 거의 사문화되었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어기본법」이 명실상부한 국가 단위의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최상위 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어기본법」 연혁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된 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 방침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에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어상담소의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검정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을 확대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2012년 5월에는 한국어 보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도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다.

다. 「국어기본법」의 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반해 「국어기본법」은 ‘국어’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글 역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임을 밝혀 그동안 관습적으로 정의되었던 ‘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어 발전을 통해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와 ‘한글’을 명시적으로 정의	제3조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어의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분류	조항	주요 내용
실태 조사	제9조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국어책임관 지정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함.
공문서 작성	제14조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국어의 보급	제19조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함. 재단은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등의 사업을 함.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국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을 명시함.
국어 능력의 검정	제23조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문화원 지정	제24조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시행 2005. 7. 28.)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시행 2011. 6. 15.)
일부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일부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시행 2012. 8. 24.)
일부개정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4호
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일부개정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2호
일부개정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2호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 조(전문 19개 조, 부칙 4개 조)를 제정·공포하였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른 일부개정(2010. 12. 14.)에서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였다. 후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만 한정했던 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학 등으로부터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신청받아 그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4053호에 따른 일부개정(2012. 8. 22.)에서는 한국어 보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 설립 및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에 따라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세종학당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때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그 외 2013년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같은 타법개정에 따라 두 차례(2013. 1. 16., 3. 23.) 일부개정이 되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4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7. 16.)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0조 신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5872호에 따른 일부개정(2014. 12. 23.)에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변경하였다. 위원은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체부 문화정책관 및 한국어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의 정신과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또한 국어 연구자를 중심으로 국어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이는 국가의 국어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국가 책임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국어운동과 국가의 국어정책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부응하면서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과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외국어 학습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역시 한국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문화 교류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담당자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국어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국민의 국어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 조사는 단순히 국민의 국어 실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국어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어문규범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제4조)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국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언어규범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제11조),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2조).

넷째,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의한 국어 능력 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제18조). 이로써 일반 국민이 언제나 자신의 국어 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전문 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 실태 조사	제2조	-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어의 실태 조사 실시 -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음.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4조	- 국어정책 수립 및 어문규범을 제·개정하는 경우 어문규범이 국어에 미치는 영향 및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조사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10조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의 세 분과위원회 설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	제12조	-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5~20명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어 전문 용어 표준화안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심의회를 거쳐 회신하고 각 중앙행정 기관은 확정안을 고시하고 활용해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한국어교원 능력 검정 시험	제13조, 제14조	-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의 이수, 한국어교육 경력이나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함. - 한국어교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종학당정책 협의회의 구성·운영, 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제14조의2 ~제14조의4	-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조항 규정 -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운영 방법 규정 - 세종학당재단 수익사업 계획의 승인과 변경에 관한 내용 규정
한글날 기념행사	제15조	-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세종문화상 수여
국어 능력의 검정 방법	제18조	- 국어 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함. -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에 대해 검정함.
국어문화원의 지정	제19조	-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어 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음. - 국어문화원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시행 2011. 6. 30.)

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은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22529호, 2010. 12. 14. 공포·시행)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전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5〉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 기준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였다(규정 제2조).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규정 제3조). 한국어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셋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규정 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넷째,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5조).

다섯째, 대학(원) 및 양성 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6조).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국어정책과 설립 목적 및 연혁

국어정책 및 국어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세종조 무렵의 '집현전'과 '정음청(언문청)',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 학부 내에 설치된 '국문연구소'가 있다. 물론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차이가 커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문 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정책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문교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1990년부터는 문화부(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하나로 그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문교부(1990. 12. 27. 교육부로 명칭 변경)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따라,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국어정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은 문화부 본부의 어문과가 담당하고, 정책 수립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기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수행해 왔다. 그 후 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 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정책국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1997년 3월 20 일에는 다시 국어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 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 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 말과 글의 정보화·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남북 어문규범 관련 업무 및 어문 자료 교류,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국립국어연구원과의 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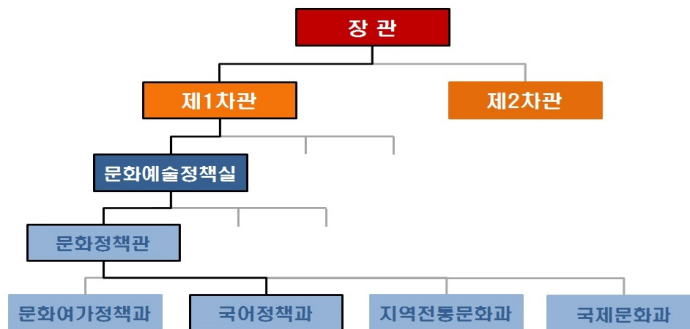
그리고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정과 국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 아래 있는 문화예술국의 문화정책관 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 3월 23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문화예술국이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정책국 소속이 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문화융성의 국정 기조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실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4. 10. 23.)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소속이 되었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며,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나. 조직 및 예산

1) 문화정책관 조직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국어정책과’이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소속이다.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조직도

2) 예산

〈표 1-6〉 국어정책과 세출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 업 비	14,677	14,255	14,521	266	1.9
○ 한글의 가치 확산	7,790	10,179	16,105	5,926	58.2
○ 한글박물관 건립	16,978	0	0	0	0
○ 국어 진흥 기반 조성	705	1,105	1,750	645	58.4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지원	121	120	115	△5	△4.2
○ 한글박물관 운영 기반 구축	2,000	8,554	0	△8,554	순감
합 계	14,677	14,255	14,521	266	1.9

※ 한글박물관은 완공 후 별도 예산 운영

다. 주요 업무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국어정책과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7〉 국어정책과의 주요 업무

일련 번호	주요 업무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및 제도,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 기관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2. 국립국어원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198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연구소의 위상 제고는 1990년도 문화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정원 35명으로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1991년 1월 23일에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원의 주목적은 합리적인 국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것이었다.

연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정책 및 연구 통합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에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책 집행 업무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으로써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과 연구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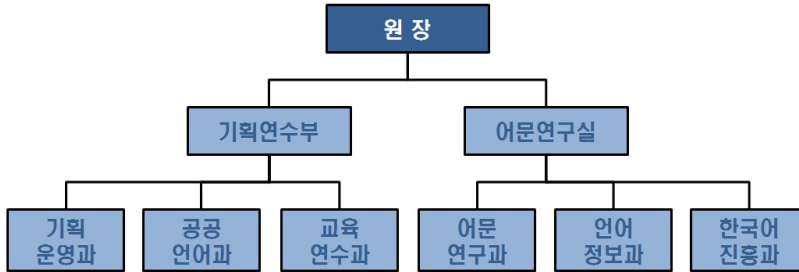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생활에 필요한 어문규정을 관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국어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국어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국어원의 조직은 1부(기획연수부), 1실(어문연구실), 6과(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5월 31일 현재 정원은 45명(연구직 24명)이며 현원은 45명(연구직 24명)이다.



[그림 1-3] 국립국어원 조직도

2) 예산

〈표 1-8〉 국립국어원의 세출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업비	11,745	11,209	11,456	247	2.2
○ 국어 진흥 연구 개발	4,487	4,070	4,825	755	18.6
○ 국어 능력 향상 및 사용환경 개선	1,643	1,852	1,510	△342	△18.5
○ 국어원 시설 개선 및 관리	1,167	1,147	1,090	△57	△5.0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	3,816	3,514	3,403	△111	△3.2
○ 언어정보자원 통합 관리(정보화)	632	626	628	2	0.3
□ 인건비	2,584	2,703	2,722	19	0.7
□ 기본경비	347	343	343	0	0
합계	14,677	14,255	14,521	266	1.9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53호, 일부개정 2015. 3. 23.) 제36조~제41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0호 일부개정 2015. 5. 26.) 제24조~제27조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9〉 국립국어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보안 및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감사 관련 업무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공언어과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과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 직종 종사자를 위한 국어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국어 능력 검정 및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과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및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국어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언어정보과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진흥과	국내외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자 및 교육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 지원과 한국어 자료 집대성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어·언어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어정책 및 국어학 분야와 관련된 정책 통계를 생성·수집하여 변화하는 언어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 말과 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문규범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발간하며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를 제작하여 누리집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표준적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 검색 시스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가나다 등의 누리집과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어사전, 각종 외래어 표기 및 로마자 표기 등 언어 자료, 제반 어문규범 등 국어 관련 자료 제공과 안내 서비스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1세기 세종계획 등 국어 정보 처리 성과물의 통합 관리 및 배포 체계인 ‘언어정보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어 대용량 언어 자료 및 활용 도구를 보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관련어 검색이 가능한 한국어 어휘 의미망 서비스를 포함하며 국민이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 사전)”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국어 문화유산의 현대화, 디지털화를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판(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출간하고 한글 고전 자료 정리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방언 자료 등 한국어 음성 자료의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있다.

2)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공공언어 지원 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언어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문, 안내문, 보도 자료 등 각종 공문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수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서식과 문서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쓰고 있는 전문용어를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초·중·고 교과서 언어의 표현·표기를 감수하며 표준화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방송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지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을 위한 교육용 전자책(e-book)을 발간하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티(<http://malteo.korean.go.kr>)'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언어문화의 확산에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말 사랑 동아리, 청소년 언어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쓰이는 용어 번역어의 확산과 정비를 통해 우리 문화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3)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국어 전반에 관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수강 인원 30명 이상이면 1회 2시간 연 2회까지 전국 어느 기관·단체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날짜, 시간, 과목 등을 정하여 신청하면 교재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대학 교양국어 강사 과정, 공공언어 향상 과정, 독서·화법 능력 향상 과정 등 대상별·내용별 특별 과정도 운영한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스스로 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어 강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4) 국내외 한국어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강좌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자료,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초·중·고교 표준 한국어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원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등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재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과 교육 연수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종학당 등 국내외의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한 현장의 한국어교원을 위한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어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그 밖의 국민 언어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점자 규정 정비, 점자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의 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용어, 전문용어, 문화 정보 용어 등에 관한 한국수어(한국수화) 자료를 구축하고 한국수어 사전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 발음 교재 및 학습 시디를 개발하고 차별적 언어문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어 어문규정을 비롯하여 언어생활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가나다 전화, 1599-9979)'와 '온라인 국어 생활종합상담실(온라인 가나다)'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국어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는 등 국민의 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맞춰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3. 국립한글박물관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2009년 12월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 공원 사이, 총면적 11,322㎡)에 준공하여 2014년 10월 9일에 개관하였다. 국립한글 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보존·확산·재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과 한글 자료를 전시하는 상설 전시실, 한글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위한 교육 체험실, 다양한 한글문화의 융합을 꾀하는 기획 전시실, 한국과 한글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에게 한글을 교육하기 위한 한글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 자료를 조사·수집·보존·전산화하는 한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창조하여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나. 조직 및 예산

1) 조직

국립한글박물관은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의 3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월 6일 현재 정원은 36명(연구직 14명)이다.



[그림 1-4]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2) 예산

〈표 1-10〉 국립한글박물관 세출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증감	
	예산	예산(A)	예산(B)	B-A	%
□ 사 업 비	2,000	8,554	11,952	3,398	40
○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60	3,311	3,734	423	13
○ 한글박물관 전시	-	1,736	1,954	218	13
○ 한글문화 연구·교육	-	-	1,443	순증	순증
○ 한글문화자원 확충	1,940	3,507	4,821	1,314	38
□ 인 건 비	-	-	2,227	순증	순증
합 계	2,000	8,554	14,179	5,625	66

다.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53호, 일부개정 2015. 3. 23.) 제67조의5~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

부령 제210호 일부개정 2015. 5. 26.) 제40조의3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1〉 국립한글박물관 과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기획운영과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추진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박물관 홍보, 박물관 정보화 조직, 예산, 시설관리 및 방호, 고객지원
전시운영과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 전시실 운영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연구교육과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아카이브 구축·운영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1)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및 운영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서 한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 9일에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한글놀이터, 외국인을 위한 한글배움터, 한글누리(도서관) 등의 국립한글박물관의 시설 일부는 구글, 네이버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고 한글과 관련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 전시실, 교육 체험실, 기획 전시실, 한글배움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글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하여 한글과 한글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개관을 기념하여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2) 한글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국립한글박물관은 훈민정음 창제 전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한글 자료를 10,509점(구입 2,781점, 기증 7,728점)을 수집, 소장하고 있다. 수집한 한글 자료는 박물관의 전시, 교육,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한글 자료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일본 자료 가운데 18세기 한글 필사본 『곤전어필』, 『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등 세 편을 선정하여 원문 사진 및 해제, 역주(주석 및 현대어 번역)를 수록한 『소장 자료 총서 1』을 2014년 11월에 발간했다. 이와 같이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글 자료를 소개하기 위한 『소장 자료 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글 자료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학술모임 및 국제학술대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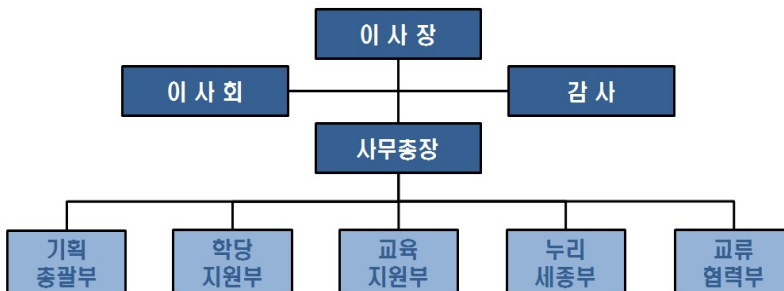
3) 한글과 연계한 교육·문화 서비스 사업 전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한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연극, 음악극, 동화 구연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4. 세종학당재단

가. 개요 및 현황

세종학당재단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자 「국어기본법」 제19조 2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 24일에 설립된 법인이다.



[그림 1-5] 세종학당재단 조직도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의 배움터로서 세종학당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54개국 140개소(2014년 12월 기준으로는 54개국 130개소)에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의 개발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해외 한국어교원 초청 연수, 한국문화 교육 및 각종 홍보 등의 사업을 통해 세종학당이 세계 각지에서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이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에 접속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교육 자료와 지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한국어교육의 국가 대표 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이 한국어 학습의 장을 넘어서 문화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종학당을 활성화할 것이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류의 지속·확산과 한국어 문화권역·한국어 공동체의 확대를 기하며, 세계 문화 다양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혁

2008년 국무회의 때 “한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2009년 7개 부처가 합동하여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세종학당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안 부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5월 23일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8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2. 8. 22.)되어 시행령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가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세종학당재단 임원 임명식 및 창립총회가 2012년 10월 11일에 열렸으며,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하였다.¹⁾

1) 2012년 10월 17일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등기를 함과 동시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해산되고, 한국

다. 주요 사업

1)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

한류 확산, 국제결혼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고용 허가제 시행 등으로 급증하는 국내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외 한국어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을 설치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을 지정하고, 전 세계의 세종학당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학당’이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강좌를 지칭하는데, 대부분 재외 한국문화원 및 현지 대학 등에 개설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운영비, 교재, 문화 교육 프로그램, 교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총 54개국 140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재외 한국문화원에 개설된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이 27개소, 현지 대학 등에 개설된 ‘일반 세종학당’이 113개소이다.

세종학당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 따라 한국어교육 단계, 내용, 시간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 세종학당 어디서나 동일한 과정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세종학당에 표준 교재인 ‘세종 한국어’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재 보급 및 세종학당의 교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종 한국어’의 출판·판매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현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교재에 대한 익힘책(워크북) 개발, 보조 교육 자료의 현지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 세종학당 평가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종학당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 세종학당 평가 체계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결과를 토

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를 세종학당재단이 승계하였다. <법률적 근거: 「국어 기본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일부개정)의 부칙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1년 한국어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법인인데, 그동안 한국어 학습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년~2004년) 시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2005년 제1회~2007년 제3회) 위탁시행,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로 2014년부터 일반 운영, 교육 운영 분야에 대해 서면 평가,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운영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당 운영 내실화와 효율적인 성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육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학습자의 성취도를 표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명사 특강 및 공개토론회(포럼)의 개최, 세종학당 홍보 안내지·소식지의 제작·배포 등 세종학당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화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우수 학습자 초청 문화 연수를 통한 깊이 있는 한국문화 체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화 전문가 파견을 통한 단계별·지역별 한국문화 교육과정 지원 및 문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으로 문화 교육의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10월 한글주간에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세종학당의 문화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 관계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세종학당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

국내외를 아울러 전문 한국어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있으며('12년 20명 → '13년 24명 → '14년 39명)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종학당 운영자, 세종학당 교원 및 전 세계 한국어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세계 한국어교육자들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세종학당 간에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등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해외 한국어교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누리·세종학당'(<http://www.sejonghakdang.org>)은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누리집이다. 누리-세종학당은 크게 학습자용, 교원용 페이지로 구분되어 있다. 학습자 페이지에는 ‘세종한국어’, ‘세종한국문화’, ‘만화 한국전래동화’, ‘그림으로 보는 한국어’ 등 다양한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용 페이지에는 「세종한국어」를 교재로 사용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세종한국어 지침서」를 제공하며, 한국어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자가 연수 과정, 현직 교원들이 제작한 교안 등 교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교육자료관을 구축하여 사진, 그림, 음성,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교원 및 세종학당 운영자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세종학당에 대한 기업 후원(메세나) 활성화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의 한국문화 애호 분위기(이른바 ‘한류’) 덕분에 기업 이미지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류의 성과를 세종학당에 대한 기업 후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한국문화의 확산 기반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업무 협약²⁾을 통해 세종학당 사업의 가용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법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통해 후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후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세종학당 후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

5. 국어심의회

가. 개관

국어심의회는 장관 자문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 구글코리아(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특강), 천재교육(표준교재 지원), 한국문화정보센터(콘텐츠 제공), 아리랑 국제방송(콘텐츠 제공), 산돌커뮤니케이션(교구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한류 콘텐츠 제작 관리 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 근로자 대상 세종학당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이다. 그 심의 사항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어심의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나. 연혁

국어심의회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따라 처음 조직되었는데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실질적인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에 국어정책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어심의회 운영 업무도 함께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조사, 연구 기능까지 아울러왔던 국어심의회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할 때,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국어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 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 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 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회의의 의결,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이전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월 1일 당연직 13명, 위촉직 34명으로 국어심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구성 범위도 국어, 언어, 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장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밀착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4년 일부개정(2014. 5. 16.)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직제 개편에 따라 간사를 언어정책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으로 하였다. 2014년 일부개정 전까지 어문연구실장이 위원회와 어문규범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여 간사의 수가 총 3명이었으나, 2014년 일부개정으로 총 간사의 수가 4명으로 변경되었다.

국어심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1-12〉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64년	「국어심의회규정」 제정 - 문교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개정 -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95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14727호
'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법률 제4883호
'95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분과 구성 변경	법률 제7368호
'09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14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31호

국어심의회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와 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만 전담하게 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과의 구성이 변경된 2005년에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3〉 국어심의회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자문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예비 지급
'91년 ~ '05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 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예비 지급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06년 ~ '14. 5.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14. 5.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전체위원회와 분과 위원회 간사 분리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다. 기능 및 역할

국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어심의회의 기능은 분과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의 변화 과정은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64년부터 유지되던 ‘학술용어심의위원회’가 2002년에 ‘국어정보화분과’로 대체되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5개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분과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지금의 분과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따라 설정되어 차이가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분과별 심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4〉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 전문소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 밑에 두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라. 심의회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적

1) 심의회의 운영 방법

국어심의회의 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

국어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와 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또는 그 하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국어심의회의 운영 실적

국어심의회의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문규범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국어심의회의는 1958년에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 1968년에 인명·지명·숫자 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 어문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안)을 심의했다. 1976년부터는 순화 대상 용어를 심의하여 국어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

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심의·확정했다.

국어심의회는 대표적인 실적으로 1988년 1월에 고시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심의를 들 수 있다. 1988년의 어문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절위원회의 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988년 어문규정 개정 이후에도 <표준어 모음 제2집 심의>(1990. 7.), <표준화법 심의,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 10.),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 심의>(1994. 9.), <한글 맞춤법 일부 조항 재심의>(1994. 12.),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여부 심의>(1991. 5.), <외래어 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심의>(1992. 4.),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 심의>(1995.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심의>(1996.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자문 및 심의>(1997. 6.), <한국 점자 규정안 심의>(1997. 11.) 등의 실적이 있다.

1990년대에는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으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 용어 순화안 심의>(1990. 7.), <일본어투 표현 순화 자료 심의>(1991. 6./1991. 7.), <건설 용어, 미술 용어 심의>(1992. 2.~5.), <글자체 용어 심의>(1992. 10.), <식생활 용어 심의>(1992. 11.), <행정 용어 심의, 신문 인쇄 용어 심의>(1992. 12.), <생활 외래어·전산기 기본용어·행정용어·선거·정치용어 심의>(1993. 12.), <임업·봉제용어 심의>(1994. 9.~12.),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심의>(1995. 7.~8.), <행정 용어 심의 및 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 제작 용어 사용 구분 표시 심의>(1995. 12.), <임업 용어 심의>(1996. 11.~12.),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심의>(1997. 6.),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 심의>(1997. 12.) 등을 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심의회 역할에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심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어심의회는 2011년 12월 국어 발전 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실적을 심의하였고 그 외 표준어 규정 영향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2013년 1월~2014년 12월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1-15〉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13. 1.~'14. 12.)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전체 회의	('13. 4. 12.) ○ 2013년 국어정책추진방향, 한글박물관 추진현황 및 계획, 문장부호 개정안 고시추진계획, 표준발음법 영향평가 결과, 개방형 지식대사전 추진실적 및 계획 등 보고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14. 2. 5.) ○ 위원장 선출 ○ '14년 국어정책 추진 방향, 문장 부호 개정 계획, 표준어 사정 계획,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추진 계획 등 보고	○ 서정목 위원장 선출 ○ 보고 안건: 이견 없음.
언어정책 분과위원회	('14. 2. 5.) ○ 분과위원장 선출	○ 신현숙 분과위원장 선출
어문규범 분과위원회	('13. 4. 12.) ○ '문장부호' 규정 개정안 심의	○ 원안대로 통과
	('14. 2. 5.) ○ 분과위원장 선출, '레이더' 외래어 표기 심의	○ 채완 분과위원장 선출 ○ '레이더'의 외래어 표기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례까지 확인 후 논의하기로 결정
	('14. 8. 29.) ○ 문장 부호 규정 개정안, 표준어 추가 사정안, 'RADAR'의 외래어 표기 방안, 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용례 오류 수정안 원안 의결, 'RADAR'의 관용적/원칙적 표기 모두 인정	○ 문장 부호 규정 개정안, 표준어 추가 사정안, 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용례 오류 수정안 원안 의결, 'RADAR'의 관용적/원칙적 표기 모두 인정
국어순화 분과위원회	('13. 2. 14.) ○ 방송통신 전문용어 심의기준 마련 및 용어 심의	○ 방통위에서 의뢰한 방송통신 전문용어 심의기준 마련 및 93개 검토
	('13. 2. 28.) ○ 방송통신 전문용어 심의(계속)	○ 방송통신 전문용어 1차 소위에 참석지 못한 방통위 관계자 참석하여 의견 제시 ○ 1차 소위결과 추가 검토 필요 용어 재검토(4개) 및 용어 검토 계속
	('13. 9. 16.) ○ 방송통신 전문용어 심의(계속)	○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 안 93건 심의 ○ 국어순화분과 전문소위 위원 확대(6명 → 8명)
	('13. 9. 24.) ○ 방송통신 전문용어 심의(계속)	○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 안 62건 재검토
	('14. 2. 5.) ○ 분과위원장 선출,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 안 검토	○ 서정목 분과위원장 선출 ○ 안건 심의를 위한 차기 회의 결정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14. 3. 12.) ○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 안 심의	○ 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 안 대상 용어 93건 중 고시 대상 52건, 고시 제외 대상 41건으로 심의 확정
	(‘14. 9. 16.) ○ 외교부 유엔 관련 전문용어 표준화 82건 심의	○ 외교부 유엔 관련 전문용어 표준화 안 대상 용어 82건 중 고시 대상 68건, 고시 제외 대상 14건으로 심의 확정

6. 국어책임관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국어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직하게 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2호) 제3조에서 규정한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6〉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이 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대해 국어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013년 3월 23일에도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45명,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371명, 광역 지방자치단체 17명,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명, 합계 659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 국어책임관은 공공 부문에서 국어의 오용과 잘못된 표현의 남용을 막고 올바른 국어 환경 조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또는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연혁

『국어기본법』 제정(2005. 1. 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05. 7. 27.)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뢰하였다. 이후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7〉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 5.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 7.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lofficer) 개설
2006. 8.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6. 9.	제1차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회의 개최
2007. 4.	54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 7.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7. 9.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 3.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 5.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안동)
2010. 11.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서울)
2010.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0. 4.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1. 3.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1.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서울)
2011. 7.	국어책임관 안내서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연도	주요 내용
2011. 11.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
2011.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 2.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2.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경주)
2012. 7.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2. 11.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2. 12.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 3.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3. 6.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부여)
2013. 7.	국어책임관 대상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3. 11.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2014. 3.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4. 6.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광주)
2014. 7.	국어책임관 대상 1차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4. 10.	국어책임관 대상 2차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 운영(국립국어원)
2014. 11.	각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다. 역대 주요 사업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 안내서를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였다(2006년과 2008년에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11년 『국어책임관 길잡이』 발간). 둘째, 2006년 5월, 2007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11월 등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조사한 주요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을 평가했는데, 2009년에는 경상남도, 충청북도, 2010년에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부산광역시, 2013년에는 국방부, 경기도,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전라남도 고흥군을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 가운데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의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 완전히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강원, 경기, 경북, 대전, 전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경기,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표 1-18〉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13년~'14년)

〈2013년〉

- 강원(바르고 고운 우리말 강좌 운영과 우리말 사용 안내책 발간)
- 경기(경기도 문화관광 홍보 매체물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 경북(공문서 바로 쓰기 책자 발간, 좋은 매체 언어 공모전)
- 대전(대전광역시 권역별 국어사용 환경 조사 및 개선)
- 전북(공공기관 언어 사용 개선 및 국어 능력 향상 교육)

〈2014년〉

- 경기(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의식 구조 조사 연구)
- 경북(청소년 언어 이렇게 바뀌 써요 책자 발간, 청소년과 함께 보는 문화재 안내문 공모전)
- 부산(공공언어 개선 및 순화 언어 사용 권장 캠페인)
- 울산(언어문화 경관 개선)
- 전남(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훈훈한 전남 공동체 실현)
- 충남(공공언어 홍보물 제작, 우리말 겨루기 대회)

7. 국어문화원

가. 개요 및 현황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려고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 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가 널리 퍼지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라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이듬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 1-19〉 전국 20개 국어문화원 현황 ('15. 6.)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남영신	'05. 10.	www.barunmal.org
2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재석	'05. 10.	knukorean.knu.ac.kr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임규홍	'05. 10.	ckc.gnu.ac.kr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영선	'05. 10.	korean.donga.ac.kr
5	상명대학교(천안) 국어문화원	김미형	'05. 10.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종학	'05. 10.	cckr.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최형용	'05. 10.	munjang.net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상준	'05. 10.	kor.chonnam.ac.kr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희숙	'05. 10.	www.koreanlab.or.kr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조항범	'05. 10.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임수민	'05. 10.	korean.kbs.co.kr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최홍열	'07. 1.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소강춘	'07. 1.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배영환	'07. 1.	malgeul.jejunu.ac.kr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안소진	'08. 12.	uoukorean.ulsan.ac.kr/home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영환	'08. 12.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안산) 국어문화원	이필영	'10. 5.	hkli.hanyang.ac.kr
18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박덕유	'11. 2.	www.inhakorean.or.kr
19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이기갑	'14. 5.	korean.mokpo.ac.kr
20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이건범	'14. 5.	www.urimal.org

나. 연혁

국어문화원의 전신인 국어상담소는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뒤,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되었다.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로 출발한 국어상담소(현 국어문화원)는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의 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4개소가 운영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전체 국어상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현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8년에는 울산과 대전 지역에 이어 2010년 경기 지역, 2011년 인천 지역, 2014년에 서울 및 전남 지역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여 현재는 전국에 20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의 주요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0〉 국어문화원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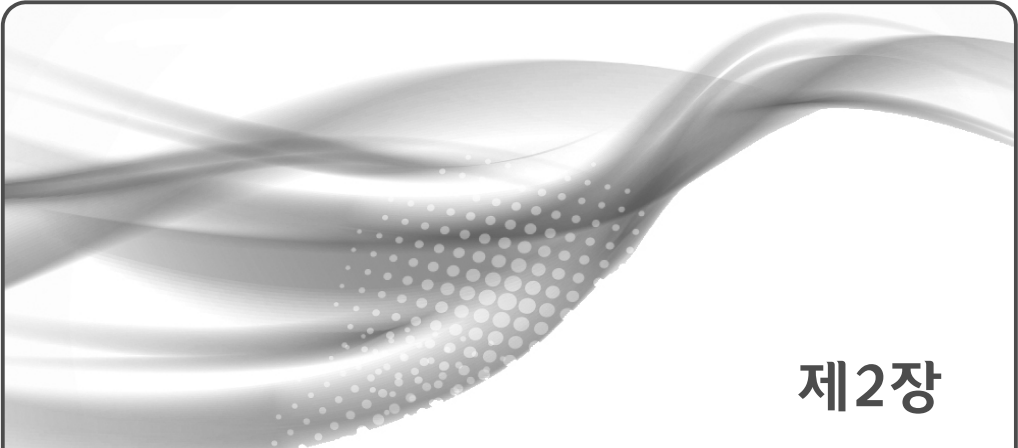
연도	주요 내용
2005. 7.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 8.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 9.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 10.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 4.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6. 6.	「국어상담」 창간호 발행
2007. 1.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 3.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 12.	울산,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 6.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1. 2.	인천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4. 5.	서울 및 전남 지역 각 1곳 추가 지정, 총 20곳 지정 운영

다. 주요 사업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학생,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문규범, 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용어 등에 대한 검토, 법령문, 안전 설명문, 제품 설명서, 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의 문구 등 실용문에 대한 검토,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지도, 독서 지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1-21〉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공통 사업	세부 사업
국어생활 상담 및 감수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지원
국어 관련 행사	한글날 행사 개최, 토론왕 선발대회, 글짓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사투리 말하기 대회 등
언어 환경 개선	관광지 안내문, 문화재 해설문, 간판·도로표지판 조사, 지역 방송·언론 등 공공기관 언어사용 모니터링, 지역 언어 실태 조사
찾아가는 문화학교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의 지원



제2장

국어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제2절 국외 현황

제2장 국어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1. 공공언어 사용 실태

가. 개요

공공언어는 좁게는 ‘공공기관의 언어’, 넓게는 ‘공공성을 지닌 언어’를 말하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성을 띠고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문서,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 포함), 민원 서식, 안내문, 게시문, 법령, 계약서, 약관 등에 쓰이는 언어,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나 교과용 도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민기관 행정 서식 용어 개선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얻게 되는 시간 비용 절감액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 국민의 시간 비용 약 118억 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시간 비용 5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정책 추진 완성도를 30%로 예측할 때, 약 3,43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3년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오류 유형 중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32%), 자막 표기 오류(26%), 은어 및 통신어(11%) 등의 순으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국립국어원)

〈표 2-1〉 매체언어 실태 조사 결과

유형	사례
인격 모독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은 짜글탱이만 되고 진 거야 (KBS, 1박 2일) 너 같은 버러지 새끼 (SBS, 돈의 화신)
은어 및 통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사생팬까지 (MBN, 아궁이) 정준하 씨 먹튀한대요 (MBC, 무한도전)
비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가 먼데 내 동생에게 고백질이야 (KBS, 안녕하세요) 쌍스런 양아치 같은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했잖아. 서프라이징 작전이었다고 (MBC, 백년의 유산) 손짓 하나로 울케어 서비스 (SBS, 정글의 법칙)
자막 표기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깨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여자 연애인이 만나주지 않았조 (MBC, 라디오 스타)

* 출처: 「매체언어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13),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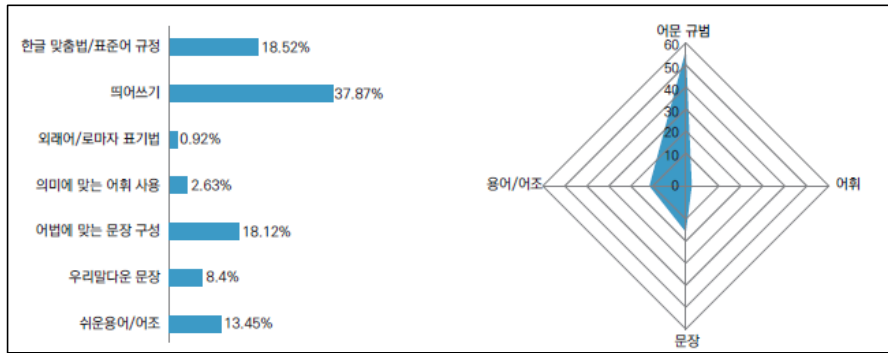
이러한 공공언어의 실태는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통해 더욱 자세히 드러났다. 2013년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2곳의 중앙행정기관과 17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기관별 각 10건의 보도 자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총 1,180건의 보도 자료 진단) 1차 진단 후 진단 결과를 각 기관에 알리고 2차 진단을 예고하였으며, 이후 2차 진단을 실시하여 1차 진단 결과와 2차 진단 결과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등급인 곳이 6곳, 2등급 25곳, 3등급이 11곳으로 1등급은 14.3%에 지나지 않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등급이 17.6%로 중앙행정기관보다 조금 높았다.

〈표 2-2〉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구분	등급	점수(700점 만점)
중앙행정기관	1등급(6곳)	총점 650점 이상
	2등급(25곳)	총점 620점 이상~650점 미만
	3등급(11곳)	총점 620점 미만
광역 지방자치단체	1등급(3곳)	총점 640점 이상
	2등급(11곳)	총점 610점 이상~640점 미만
	3등급(3곳)	총점 610점 미만

* 출처: 『2013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국립국어원, 2013)

또 2013년에 실시한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 어법에 맞는 문장 구성 > 쉬운 용어·어조의 순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출처: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국립국어원, 2013)

[그림 2-1]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및 오류 분포 결과

오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료 한 건당 띄어쓰기 오류가 3.114개, 한글 맞춤법 오류가 1.522개, 문장 어법 관련 오류가 1,490개,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 관련 오류가 1,106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어문규범 쪽에서의 오류가 가장 널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이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되새기면서 국어 의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나. 공공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현황

공공언어를 바르게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소통의 편의이다. 곧, 쉽고 분명한 언어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언어는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공공언어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3〉 공공언어의 종류

생산 주체	대상	종류	
		글말 형태의 공공언어	입말 형태의 공공언어
국가, 공공기관	국민	정부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기사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서의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	내부 문건, 보고서 등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 출처: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 2011)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공공언어는 국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민간기업, 공인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어와 구어로 구분된다. 문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언어 단위 측면과 정확성과 소통성이라는 질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언어 단위별 사용 실태와 개선안

(1) 단어를 바르지 않게 쓴 예

단어를 바르지 않게 쓴 경우로는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문규범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확한 용어는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 이해하기 쉬운 용어, 혼동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적은 용어, 어문규범에 맞는 용어를 의미한다.

- ① 정비 내역 → 정비 내용
- ② 신분증 패용 → 신분증 달기
- ③ 목표 년도 → 목표 연도

위 예들은 실제 공문서에 쓰인 사례들이다. ①에서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뜻하는 말이므로 문맥에 맞는 용어인 ‘내용’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

다. ②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은 경우이고 ③은 어문규범(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을 바르게 고친 경우이다.

다음으로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국어 순화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말,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쉽고 바르고 고운 말’로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어 순화는 국어의 소통 기능을 향상하여 국어 문화와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순화어는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용성이 있다.

- ① 문화예술 분야 R&D 추진: R&D → 연구 개발(R&D)
- ②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 → 기반
- ③ (통합 재단을) 모델로 설립 → 본보기로 하여 설립

①과 같이 국민은 외래어를 로마자를 이용한 ‘R&D’로 쓸 때보다는 순화어인 ‘연구 개발’을 쓰거나, ‘연구 개발(R&D)’처럼 순화어와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할 때에 이 말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의 경우도 더 쉬운 순화어로 바꾼 것이다. ③은 순화어로 바꾸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문맥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야 함을 보여 준다. ‘모델’을 순화어 ‘본보기’로 바꾸면서 서술어를 넣어 뜻을 분명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어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온 국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국어 표기를 위해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2) 문장을 바르지 않게 쓴 예

공공문서에서 문장을 바르게 쓰지 않은 경우는 크게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외국어 번역 투 표현을 그대로 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예들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 아닌 것을 바르게 다듬은 경우이다.

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되었다. (×)

대안 1: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을 선출하였다. (○)

대안 2: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명이 선출되었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위의 예처럼 능동과 피동 문장은 헛갈리기 쉽다.

다음 보기는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정보가 복잡하고 많을 때에는 대안 문장과 같이 각각의 정보에 따라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예)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통해 각종 응급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월 □일까지 ○○시 보건복지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안: 20○○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의료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 사진전은 각종 응급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월 □일까지 ○○시 보건복지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수식 어구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수식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예) 시장은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대안 1: 시장은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대안 2: 시장은 관계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누군가와) 논의하였다. (○)

예) 5킬로그램 상당의 금보관함 (×)

대안 1: 금 5킬로그램 상당을 담은 보관함 (○)

대안 2: 금을 담은 5킬로그램 상당의 보관함 (○)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표현은 경제 활동 등의 중요한 사회적 계약 문제와 연계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문장의 문법적 사용과 관계된 예들이다.

예)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대안: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예) 평화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 (×)
대안 1: 평화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
대안 2: 평화수호와 인권보장 (○)

첫 번째 보기는 조사, 어미, ‘-하다’ 등을 과도하게 생략해서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다. 두 번째 보기는 ‘-고/-며’, ‘와/과’ 등으로 접속되는 말에는 대등한 자격의 성분끼리 접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 사례들이다.

우리말다운 문장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며, 외국어 번역 투 표현은 어순이나 문체 등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국어 번역 투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 (×)
대안: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 (○)
- ②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안: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위의 ①은 영어 번역 투 문장을 다듬은 예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나 추상적 대상이 능동적 행위의 주어로 나오는 어색한 피동 표현(~에 의해 ~되다) 보다 다듬은 표현이 더 쉽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

②의 경우는 일본어 번역 투 문장을 다듬은 예이다. 일본어 번역 투인 '~에 있어(서)'는 '~에서'로 바꾸어 사용하면 표현이 더 간결하고 명확해진다.

(3) 단락 구성을 잘못된 예

공공언어를 단어나 문장 단위에서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단락이나 담화 단위에서 제대로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락을 구성할 때에는 여러 문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주제를 전달하도록 구성해야 하는데, 공문서에서도 단락 구성상의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

예) ○○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만 달러에 더해 ○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 보기는 인도적 지원의 추가 제공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즉,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절하다.

단락 쓰기는 여러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쓰는 것이므로 접속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단락이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지 못한다. 접속어를 잘못 써서 단락의 논리적 구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예) ○○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

여기서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말로서, 이 경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으므로 '그러나'를 쓸 수 없고 '그래서'와 같은 인과 관계의 접속어를 써야 한다.

2) 정확성과 소통성 측면의 공공언어 문제

국립국어원은 2010년에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표 2-4〉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 출처: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2010)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공공언어 진단은 기존의 어문규범이나 문법·어법 차원의 진단에서 더 나아가 공공언어의 질적 소통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확성’의 기준은 공공언어가 표기, 표현 등에서 언어 자체의 내적 질서를 잘 따랐는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라면, ‘소통성’의 기준은 공공언어가 언어 사용자 간의 성공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소통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공공언어의 효용 가치가 단순히 무엇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왜 전달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성찰하는 데에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외부에서 공공언어 진단 결과를 통보받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공공언어를 진단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하든지, 공공언어의 진단과 개선은 국민에게 정책이나 사업을 쉽게 이해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 구성원 간에도 소통이 잘되게 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서 2013년과 2014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관에서 낸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대상이 되는 기관의 수는 2013년에는 모두 59개(중앙행정기관 42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였으며, 2014년에는 모두 61개(중앙행정기관 44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였다. 이는 2011년의 56개, 2012년의 57개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공공언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공공언어를 개선하고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공공언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공공언어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공공언어 진단 자동화 도구는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2010년 국립국어원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확성(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과 소통성(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을 축으로 한 진단 항목을 적용한 것으로서 공공언어의 양적인 진단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공공언어를 진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형적으로 되풀이되는 공공언어의 문제점을 비롯한 공공언어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한결 수월한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양적인 진단 결과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전문가가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공공언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에 보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2014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정밀화)에서 나타난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상의 공공언어 실태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정확성 면에서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민 소통성 면에서 '기상청', '국세청',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 둘을 합산한 결과 '기상청', '국세청', '특허청'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순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를 2013년에 진단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평균이 2013년의 622.08점에서 2014년에는 629.76점으로 7.68점이 상승하여 비록 소폭이기는 하지만 보도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이제는 좀 더 수월하게 각 기관별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한결 수월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관별로 적절한 처방을 내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효과적인 맞춤형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2014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정밀화』(2014)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기관에서는 기관에서 낸 보도 자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각 기관에서 보도 자료 개선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정책 시행 기관에서 구체적이면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5〉 공공기관 보도 자료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

개선 대상 표현	개선한 표현	비고
TF	특별팀/전담팀/전략팀	어려운 용어 사용 및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
R&D	연구 개발(R&D)	어려운 용어 사용 및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
인프라	기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인큐베이팅 펀드	창업 보육자금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로드맵	(단계별) 이행안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동 기간에	이 기간에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
우리 부 소관	우리 부가 맡은	불필요한 한자어 사용
국내 증시, 상승하락 거듭하며 보험세(保壽勢)	국내 증시, 상승 하락 거듭하며 주춤세	어려운 용어 사용
발대식을 가진 후	발대식을 한 후	번역 투 표현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TF, R&D와 같은 외국어는 번역하거나 순화하여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써야 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외국 글자는 괄호 안에 표기해야 함.)

*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3) 행정분야 전문용어 사용 실태와 개선

행정분야 전문용어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시행하였다(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시행 2013. 3.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9호)).

〈표 2-6〉 행정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대상(총 312개 중 일부)

번호	대상 용어	원어 표기	순화어	적용 예문
1	~ 게이트	~ gate	~ 의혹사건	검찰이 ○○게이트(→○○의혹사건)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2	가건물	假建物	임시 건물	가건물(→임시 건물)을 짓다.
3	가건축	假建築	임시 건축	건본 주택은 가건축(→임시 건축) 허가 기간이 끝나는데로 곧바로 철거된다.
4	가검물	可檢物	검사물	새로 입원한 환자들의 가검물(→검사물)을 채취하였다.
5	가결의	假決議	임시 결의	법률안 가결의(→임시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
6	가계약	假契約	임시 계약	시공사를 선정하고 가계약(→임시 계약)을 맺었다.
7	가계정	假計定	임시 계정	자금을 가계정(→임시 계정) 형식으로 인출했던 횡령 사건이 적발되었다.
8	가도	假道	임시 도로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공사현장의 가도(→임시 도로)가 차단되었다.
9	가사용	假使用	임시 사용	구청은 신축 백화점의 가사용(→임시 사용)을 허가하였다.
10	가설무대	假設舞臺	임시 무대	야외 가설무대(→임시 무대)에서 열리는 여름 축제가 한창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의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일정 기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병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다. 공공언어 사용 개선 추진 방안

1) 자료 발간을 통한 개선(공공언어 바로 쓰기 외)

국립국어원은 2009년에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를 발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책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만 부씩 모두 2만 부를 발간하여 행정 현장의 공문서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2011년에는 자료 책자 제목을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로 고쳐 2011년 1만 부, 2012년 8천 부, 2014년에 3천 부를 찍어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원내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원 등에 보내 공문서의 어문규범 준수 및 쉬운 공공언어 사용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문으로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2010),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2011)는 중앙 및 지자체의 보도 자료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 부서, 대변인실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 보내 보도 자료에서 쉬운 용어,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쓰는 데 활용하게 하였고,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2011)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배포하여, 역시 보도 자료에서 쉬운 용어와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쓰고 어문규범을 준수하는 데 활용하게 하였다.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언어 바로 쓰기』(2011)는 주로 경력이 적은 초심 기자들이 활용토록 기획, 제작하였고,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 ‘출판 언론인 특별과정’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2011)는 방송국 연예 오락 담당 프로듀서, 출연진 등에게 배포하여 방송에서 비속어, 차별적 언어, 외국어 남용 등을 개선하여 바르고 품격 있고 쉬운 용어를 쓰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표 2-7〉 공공언어 바로잡기 관련 책자 및 주요 배포처

책자 이름	주요 배포처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2011, 2012, 2014)	중앙 및 지자체의 보도 자료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 부서, 대변인실 및 기타 공공기관 등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201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직원 전체와 소속기관에 몇십 권씩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포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언어 바로 쓰기 (2011)	중앙 및 지방의 언론사(수습기자나 경력이 비교적 적은 기자를 중심으로 배포하도록 안내함.)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2011)	방송국 연예·오락담당 프로듀서, 작가, 출연진 등

2) 교육을 통한 개선

교육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노력은 주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을 강의 개설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국립국어원 원내에서 진행되는 ‘국어문화학교’(정규과정, 특별과정), 둘째, 국립국어원이 신청 기관의 구성원과 교육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기획과정’, 셋째, 신청 기관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대개 2시간 1강좌를 강의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2013년에는 ‘국어문화학교’(국어전문교육과정)는 총 25회 3,141명(그중 정규과정(공무원반, 교사반)은 18회 2,329명, 특별과정(대학강사 과정, 공공언어 향상 과정 등)은 7회 812명)이, ‘기획 과정’은 총 100회 7,306명(국회 사무처 직원, 국립암센터 직원 등)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504회 25,264명이 수강하였다.

2014년에는 ‘국어문화학교’(국어전문교육과정)는 총 26회 3,071명이, ‘기획 과정’은 총 163회 9,952명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629회 34,252명이 수강하였다. 2014년에는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가 운영되었는데, 연간 4,120명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하였다.

〈표 2-8〉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10년~'14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35	29	36	25	26	151
	인원(명)	3,174	2,701	3,841	3,141	3,071	15,928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기획 과정	횟수(회)	15	81	75	100	163	434
	인원(명)	489	5,919	5,055	7,306	9,952	28,721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316	334	486	504	629	2,269
	인원(명)	27,804	28,689	34,347	25,264	34,252	150,356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인원(명)	-	-	-	948	4,120	5,068
총계 인원(명)		31,467	37,309	43,243	36,659	51,395	200,073

더불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문화학교 교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직무 연수 교재, 관공서와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그리고 국어문화학교 정규 과정 및 특별 과정(수요자 맞춤형 국어 교육 과정)의 대상과 특성에 따른 교재를 다수 개발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통한 교육도 확대되었다. 2012년 10월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는 2013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4년에는 일반 과정과 원내 교육 사전 연계 과정, 기관 맞춤형 과정 등을 통해 총 4,120명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스로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언어 의식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국어 강좌 콘텐츠(‘돋보기로 들여다본 나의 언어’(8차 시), ‘교과서와 함께하는 어문규정’(8차 시) 등)를 개발함으로써 공무원, 교사 등 공공언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는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교육도 강화하였다. 전국의 국어교육 희망 수요에 부응하여 각 지역 국어문화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인재개발원, 지방교육연수원 등의 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립국어원과 지방 협력 기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3)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개선

공공언어 개선은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과 의지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공공언어 개선은 민간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관련 단

체의 지원을 통해 공공언어를 개선하고 있다.

40개 대학 130명의 대학생을 ‘우리말 가꿈이’로, 3기에 걸쳐 고등학생 102명을 ‘쉬운 말 사랑패’로 조직하여 교육과 활동 참여를 진행하였다. ‘우리말 가꿈이’는 서울시 지하철에서 방송되는 ‘스크린 도어’라는 용어를 시민 대다수의 이해를 위해 ‘안전문’으로 고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쉬운 말 사랑패’는 서울시에 ‘쿨 비즈’라는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제안을 수용하여 ‘시원차림’으로 고쳤다.

아울러 2013년부터 쉬운 공공언어, 존경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확산하여 언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말 사랑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말 사랑 동아리는 방송 언어, 청소년 언어 등에서 개선해야 할 잘못되거나 어려운 언어 표현을 조사하여 개선 권고해 나가고 있다.

4) 온 국민이 참여하는 개선안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전략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인 말터(<http://malteo.korean.go.kr>)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누리꾼들이 순화어를 제안하고 국립국어원이 그 가운데 네댓 개를 추려서 올리면 다시 누리꾼들이 투표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말을 순화어로 뽑았다.

이 기간에 시행된 국민 결정 방식의 경우 국민 스스로 순화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다수결 투표 방식의 한계로 일반 국민에게 두루 인정받지 못하는 단어가 순화어로 선정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1월 문인, 언론인, 국어학자, 번역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말다듬기위원회가 출범하여 그해 12월부터는 국민들이 제안한 순화어를 말다듬기 위원들이 심의해서 순화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국어 순화(우리말 다듬기)에 성공하려면 먼저 순화 대상어 선정을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순화어를 선정하여야 하며, 끝으로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런데 성공적인 국어 순화 또는 바람직한 언어문화 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운동’ 등의 국

민 참여 운동으로 공공 언어의 순화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화 대상어의 원천, 즉 순화 대상어를 언론을 통해 처음 세상에 퍼지게 했거나 평상시 자주 쓰는 등 해당 용어와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감수 및 개선 권고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publang>)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언어 감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신청 기관의 자료를 소통성(쉬운 용어나 표현 사용), 정확성(문법·어문규범 준수 등) 등의 면에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195개 기관의 440건, 2014년에는 156개 기관의 363건의 문서를 감수하였고 2013년에는 5,900개, 2014년에는 1,259개의 용어에 대한 감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보도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례, 어려운 용어(어려운 외래어 포함)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3,704건, 2014년에는 총 4,000건의 보도 자료를 점검하여 각각 222건, 622건의 개선 권고 공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 표현을 '착용형 기기'와 같이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2. 국내외 국어교육

가. 국내 국어교육

국어교육은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이다. 곧 국어교육은 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국어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

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양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국문학 전공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국어교육은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다.

한편 2012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 설정하고, 선택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잡고 있다. 공통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 '국어'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다섯 가지 내용 체계(영역)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택교육과정(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초·중·고등학교의 일반 국어교육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의 비중은 국어 교과목의 수업 시수 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 12. 13.))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관련 수업 시수를 다른 외국어 강의 시수와 비교한 것이다.

〈표 2-9〉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학년 과목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총계 (단위: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어	448		408		408			442			255		1,961
영어	-		136		204			340			255		935
기타 외국어 및 한문	-		-		-			102*			136*		238

학년 과목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총계 (단위: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448		544		612		884			646			3,134
언어 교과 중 국어 비율	100%	75%	67%				50%			39%			63%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680		1,972		2,176		3,366			3,468			
전체 과목 중 국어 비율	27%	21%	19%				13%			7%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시행 2012. 12. 13.) 기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초등 1·2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 순차 적용.

- 중학교 선택 과목: 한문, 생활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이상 선택해야 함.
- 고등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서는 ‘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의 6개 교과로 구성됨. 그 외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술·가정, 한문Ⅰ·Ⅱ, 중국어Ⅰ·Ⅱ, 일본어Ⅰ·Ⅱ, 베트남어Ⅰ·Ⅱ, 아랍어Ⅰ·Ⅱ, 독일어Ⅰ·Ⅱ, 프랑스어Ⅰ·Ⅱ, 스페인어Ⅰ·Ⅱ, 러시아어Ⅰ·Ⅱ,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경제 등임.
- 고등학교에서 필수이수단위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고등학교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85시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17시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함. 단,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교양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즉,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경제 등)의 경우 3단위(51시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음.

위의 표를 보면 국어과는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로 보면 언어 교과 중 국어 교과 비율은 63%로 가장 높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국어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1·2학년 때는 100%이고 3·4학년 때는 75%, 5·6학년 때는 67%에 이른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뜻한다. 반면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언어 교과 중 국어 비율은 낮아져 세계화 시대의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면서 국어교육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함을 보여 준다.

전체 과목 중 국어의 비율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27%이고 단계적으로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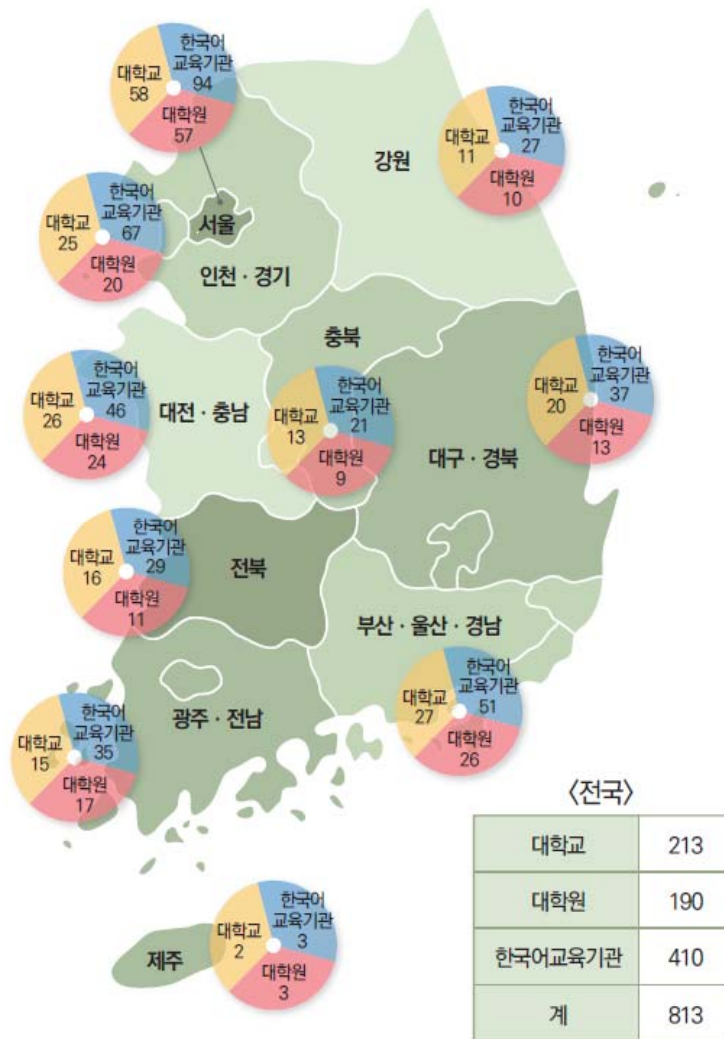
저 고등학교에서는 7%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교과 교육 가운데서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국어교육만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2) 전국 대학·대학원의 국어 관련 학과전공 수

전문 국어교육은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복수 전공 제도의 확대로 전문 국어교육을 받는 전공자 수가 더욱 늘었다. 관련 학과나 전공으로는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이 있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에서 가장 많이 개설된 국어 관련 학과 이름은 '국어국문학과'로 총 64개 대학의 학부 과정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어교육과 32개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의 경우 국어국문학과 및 전공은 68개, 국어교육학과 및 전공은 3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의 전공을 살펴보면, 기존 국어국문학의 수가 한국어교육학의 수보다 앞섰던 추세에서 한국어교육학이 75개, 국어국문학이 가장 많은 70개로 그 순위가 변동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어교육학 40개, 언어학 5개가 뒤를 잇는다. 학과나 전공을 개설한 학교 수로 볼 때 '한국어교육학'은 학부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대학원에서는 첫 번째이다. '대학원의 한국어교육학 전공 개설 수'는 '학부의 한국어교육학과 개설 수'의 두 배가량이 된다. 이에 비해 대학원의 국어교육학 전공 개설 수는 학부의 숫자와 큰 차이가 없고, 대학원의 언어학 전공 개설 수는 5개로 학부와 같다.



* 출처: 『국어 연감 2014』(국립국어원, 2014)

[그림 2-2] 전국 대학·대학원의 국어 관련 학과 현황('13년)

한편,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언어학과, 한국어(교육)과, 문예창작과 등으로 관련 학과의 외연을 최대한 넓혀 2013년도의 학과 개설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관련 학과들을 개설한 대학은 총 201개이고, 대학원은 총 194개이다.(<표 2-10> 함께 칸 참조)

〈표 2-10〉 국어·언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수('13년)

구분	학과명(전공명)	개설 대학 수
학부 대학교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10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1
	산업대학 국어·국문학	5
	국어교육과	32
	국어국문학과	64
	국어국문학전공	6
	국어국문창작학부	1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국제한국어교육과	1
	국제한국어교육전공	1
	극작가	1
	글로벌한국학과	1
	다문화한국어학과	2
	문예창작과	3
	문예창작전공	3
	문예창작학과	15
	문예창작학부	1
	문예창작비평학과	1
	미디어문학과	1
	미디어창작과	1
	미디어문예창작학과	2
	스토리텔링학과	1
	언어과학과	1
	언어인지과학과	2
	언어정보학과	1
	언어학과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
	한국문화정보학과	1
	한국어교원학과	2
	한국어교육과	1
	한국어교육학과	1
	한국어과	1
	한국어문학과	14
	한국어문학부	7
	한국어문화학과	1
	한국어다문화학과	1
	한국어학과	3
	한국어학부	3
	한국언어문학과	2
	한국언어문화학과	1
합 계	201	

구분	학과명(전공명)	개설 대학원 수
대학원	국어교육과	4
	국어교육학과	3
	국어교육전공	25
	국어국문학과	68
	국어국문학 전공	1
	국문학과	1
	다문화한국어교육전공	1
	글로벌한국학전공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1
	어문학전공	1
	언어인지과학과	1
	언어정보학과	1
	언어학과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3
	초등국어교육전공	6
	초등국어교육과정	1
	초등국어교육과	1
	한국어문화교육학전공	1
	한국언어문화전공	1
	한국어교육	7
	한국어교육전공	17
	한국어교육학	1
	한국어교육학과	7
	한국어교원학과	2
	한국어문학과	2
	한국어지도학과	1
	한국어학과	6
	한국학협동과정	1
	한국어교육협동과정	1
	한국학과	1
	합 계	194

* 출처: 『국어 연감 2014』(국립국어원, 2014)

위의 학과 개설 현황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설 대학 수 측면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여전히 전통적인 학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둘째, 유사한 학과 명칭이 많으며, 동일한 명칭의 학과라 하더라도 소속된 단과 대학 명칭이 다른 사례가 많다. 셋째, 사회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원 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부나 대학원의 학과 이름에 영향을 끼쳐 '한국어교원(학)과', '한국어교원학과, 한국어지도학과'라는 학과 이름까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나 전공으로는 학부와 대학원에 '한국어문화교육학전공, 한국어언어문화전공,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육학, 한국어문학과, 한국학협동과정, 한국어교육협동과정, 한국학과'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다.

3) 국어 교사 현황

국어교육의 실질적 주체는 국어 교사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총수는 2014년 현재 182,672명이다. 그 중 교장·교감의 수는 11,951명이며, 일반 교사의 수는 170,721명이다. 중학교 교사 총수는 113,349명이며 이 중에서 국어 교사는 13,663명(12.68%)이다.

〈표 2-11〉 중학교 교원현황('14년)

계	교원 현황		국어 교사	국어 교사 비율
	교장/교감	교사		
113,349	5,626	107,723	13,663	12.6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cesi.kedi.re.kr>), 『2014년 유초중등계 교육통계』

고등학교 교사 총수는 134,488명이며 이 중에서 국어 교사는 16,843명(12.96%)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일반 고등학교 13,018명, 특수목적 고등학교 594명, 특성화 고등학교 1,625명, 자율 고등학교 1,606명이다.

〈표 2-12〉 고등학교 교원현황('14년)

학교 구분	교원 현황			국어 교사	국어 교사 비율
	계	교장/교감	교사		
계	134,488	4,568	129,920	16,843	12.96%
1. 일반고	90,174	2,985	87,189	13,018	
2. 특수목적고	6,934	279	6,655	594	
3. 특성화고	26,498	943	25,555	1,625	
4. 자율고	10,442	323	10,119	1,60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cesi.kedi.re.kr/>), 『2014년 유초중등계 교육통계』

이렇게 볼 때 초등학교는 통합 교과이므로 182,672명이 국어 교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13,663명, 고등학교 16,843명, 합계 213,178명이 공교육에서의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어 담당 교사 수는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의 순서로 많으며, 전체 교사 중 국어 담당 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의 순서로 높다.

4) 평생교육 기관의 문해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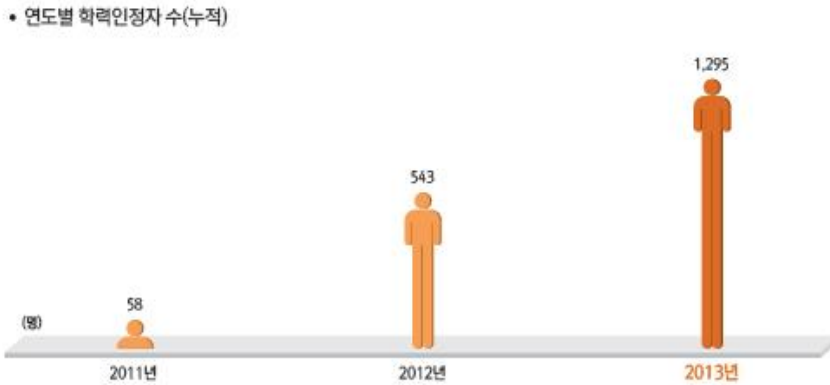
최근 성인 기초 교육과 문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 기초 교육과 문해 교육에 대한 제도적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평생교육 기관에서 문해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과 국내 문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림 2-3]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현황('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와 기관 수는 201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학습자는 3,411명이 늘고, 기관 수는 72개가 늘어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수혜자 및 이를 위한 기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2013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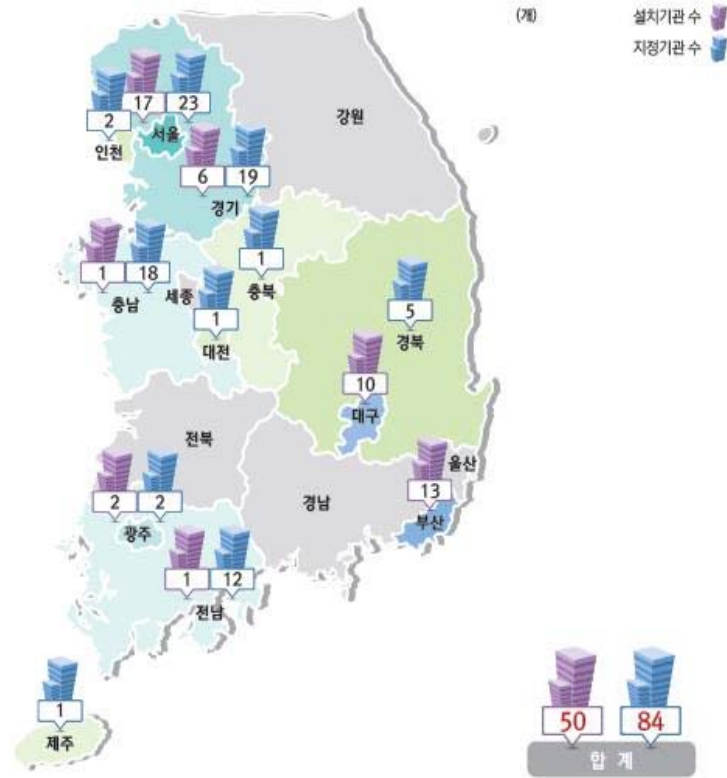


*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림 2-4]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인정 체제 현황('13년)

다양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생기면서, 이를 통하여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의 수는 2011년 58명에서 2013년에는 1,295명으로 2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기관



*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림 2-5]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 기관('13년)

2013년 전국의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기관 수를 보면 설치 기관은 50곳, 지정 기관은 84곳이다.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관도 광역시 단위 위주로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13년)

구분	문해 1단계	문해 2단계	문해 3단계	중학교 수준	합계
프로그램	494 (51.2)	233 (24.2)	150 (15.6)	87 (9.0)	964 (100.0)
학습자	9,438 (52.0)	4,214 (23.2)	2,773 (15.3)	1,729 (9.5)	18,154 (100.0)

*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편,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은 교육 수준별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문해 3단계, 중학교 수준 등으로 구분한다. 2013년 사업에 총 964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그중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이 494개(51.2%)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문해 1단계 교육이 전체 문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량(2011년 48.1%, 2012년 50.5%)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여전히 높음을 의미한다.

문해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국민 기초 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6장의 문자 해독 교육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자 해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3년은 이러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된 지 8년 차가 된 해이다. 2006년부터 추진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매년 18여억 원씩 지원되었으며, 연평균 16,000여 명의 학습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2006년에 61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78개 문해 교육 기관을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는 지역 선도 사례로 문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기관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국 권역별로 19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4〉 2012년~2013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원 금액 및 참여 현황

연도	지원 금액 (백만 원)	학습자 수 (명)	참여 지자체 (개)	문해 교육기관 (개)	지역 거점기관 (개)
2012년	1,500	16,334	107	189	39
2013년	1,950	19,745	130	261	19

*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 2-15〉 2012년~2013년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현황

연령대	남		여		합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대	77	132	677	635	754(5.0%)	767(4.4%)
30대	77	101	370	453	447(3.0%)	554(3.2%)
40대	74	98	536	565	610(4.1%)	663(3.8%)
50대	100	187	2,485	2,667	2,585(17.3%)	2,854(16.2%)
60대	96	145	4,655	5,245	4,751(31.7%)	5,390(30.6%)
70대	83	143	4,778	5,947	4,861(32.5%)	6,090(34.6%)
80대 이상	20	33	905	1,198	925(6.2%)	1,231(7.0%)
기타	16	20	14	21	30(0.2%)	41(0.2%)
합계	543	859	14,420	16,731	14,963 (100.0%)	17,590 (100.0)

* 출처: 『2013 평생교육백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6년에는 14,668명으로 학습자 수가 가장 적었지만, 2008년에는 25,579명으로 학습자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 추세였다가 2013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다. 성인 문해 교육의 개념도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 문해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문해 교육으로까지 발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문해 교육의 새로운 수요자층인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향후 국민의 문해 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특히 소외 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해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국외 국어교육

1) 해외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외 국어교육은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수가 701만(2013년 기준, 외교부)에 이르며, 주요 활동 세대가 3~4세가 되면서 거주국에 급속히 동화되는 추세이다. 재외 동포의 민족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재외 동포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한국어와 더불어 현 거주 국가의 언어도 잘해야 하는 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재외 동포에 대한 더욱 세심한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2) 해외 한글학교

재외 국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기관으로 '한글학교'가 있다. 한글학교는 재외 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 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한글학교의 교육생은 주로 동포 2~3세나 지·상사 직원의 자녀로 구성되며 일부 외국인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17개국 1,875개교의 한글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2015. 3. 31. 기준) 교원은 15,159명, 학생은 102,989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의 110개국 2,111개소의 한글학교 수, 14,870명의 교원, 128,046명의 학생 수 등에 비교해 볼 때, 2015년에는 한글학교의 분포 국가 수와 교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한글학교 수와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6년 동안 분포 국가 수 7.3% 증가, 교원 수 4.1% 증가, 한글학교 수 8.8% 감소, 학생 수 16.4% 감소).

〈표 2-16〉 2015년도 전 세계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

구분	국가	공관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아주	19	41	293	2,196	18,344
대양주	4	7	66	780	5,365
북미	2	16	1,051	9,637	56,260
중남미	21	21	90	717	5,780
구주	27	31	109	860	5,569
러.CS	9	12	219	620	9,705
아.중동	35	31	47	340	1,857
총계	117	159	1,875	15,159	102,880

* 출처: 재외동포재단 누리집, 2015. 3. 31. 기준

지역별로는 북미가 1,051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아시아, 유럽과 독립국가 연합 순이다.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이 있으며,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2~6시간 내외이다. 한글학교 지원 업무는 199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했으나 1998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산 지원은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며, 교재 보급 및 교원 연수는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하고 있다.

3. 국내 한국어교육

가.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

주요 한국어교육 기관으로는 1)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2)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3)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4) 국내 사설 한국어교육 기관, 5) 자원봉사 단체, 6) 정부 산하의 한국어교육 기관, 7) 기업체 내의 한국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학이다. 현재 대학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7〉 한국어교원 양성 기관 및 대학 내 한국어교육 기관 현황('14년)

교육 기관	대학원	학부	대학교 한국어교육 기관	학점은행 기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단기)	합계
기관 수(개)	96	35	69	23	162	385

* 출처: 국립국어원 내부 자료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현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근거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진흥과)이며, 2006년~2008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험을 주관했으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필기시험은 4개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총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교사로서의 태도 및 소양,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표 2-1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60문항, 90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20문항, 30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93문항, 150점) - 한국문화(20문항, 30점) ○ 1차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 능력 평가

2006년 첫 시험이 실시된 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6년 첫 시험의 응시자가 1,022명이었던 데 비해 2014년에는 3,167명이 응시하여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9〉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

(2013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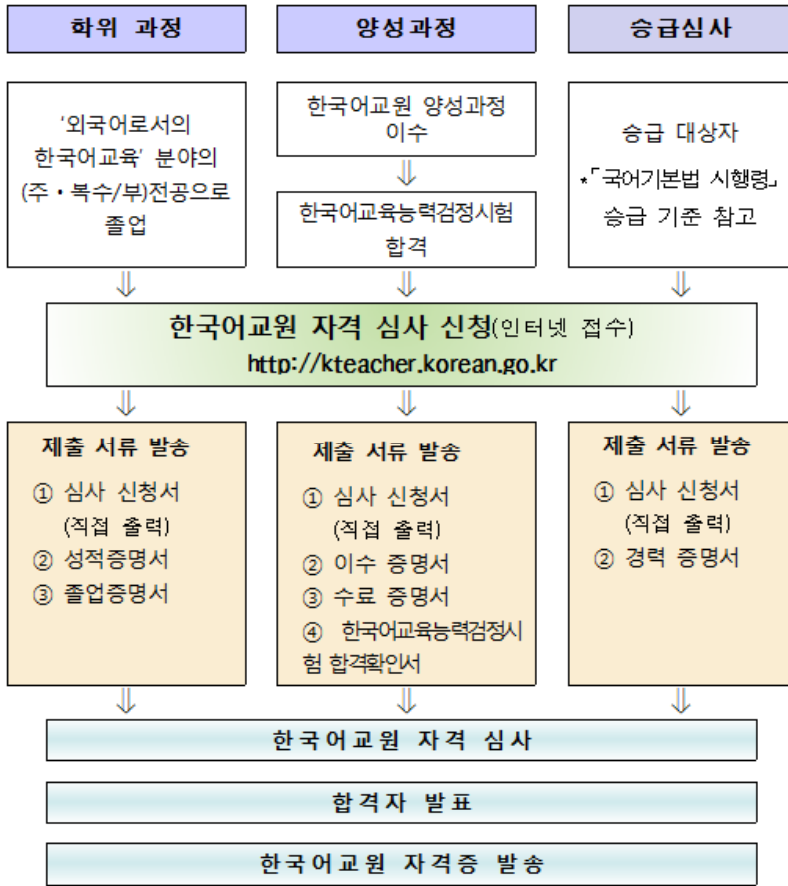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6(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2011(6회)	2,825	673	23.8%	684	594	86.8%	21.0%
2012(7회)	2,945	1,020	34.6%	1,067	844	79.1%	28.7%
2013(8회)	2,711	837	30.9%	999	794	82.5%	29.3%
2014(9회)	3,167	875	33%	979	775	81.8%	24.5%
계	20,920	6,481	32.2%	6,772	5,601	86.2%	26.8%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2%이며,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86%로 총합격률(면접 시험 합격자÷필기시험 응시자)×100은 26.8%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자 가운데에는 학부의 국어국문학과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국어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석사·박사 전공자가 적지 않으므로 비전공자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셈이다.

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현황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과했거나, 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6]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표 2-20>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4년)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자격증 취득자 수	1급					81명	55명	74명	101명	311명	
	2급	269명	185명	341명	613명	826명	1,155명	1,341명	2,239명	10,620명	
	3급	599명	454명	501명	424명	1,331명	574명	940명	826명	814명	6,463명
	합계	868명	639명	842명	1,037명	2,157명	1,810명	2,336명	3,139명	4,566명	17,394명
대학 (원) 전공학과	40개소	-	69개소	-	83개소	95개소	123개소	145개소	162개소	164개소	
					학부: 16개	학부: 1개	학부: 6개	학부: 7개	학부: 5개	35개	
					대학원: 54개	대학원: 11개	대학원: 15개	대학원: 8개	대학원: 8개	96개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사이버 대학원: 5개	사이버 대학원: 1개	사이버 대학원: 2개	사이버 대학원: 1개	사이버 대학원: 1개	10개
					학점 은행제: 8개	학점 은행제: 1개	학점 은행제: 5개	학점 은행제: 6개	학점 은행제: 3개	23개
단기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	115개소	130개소	153개소	159개소	178개소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는 2006년 869명에서 시작하여, 2009년 1,037명, 2010년 2,157명, 2011년 1,809명, 2012년 2,337명으로 누계가 9,690명에 이른다.

2009년에는 1,000명, 2010년에는 2,000명을 넘었고, 2011년에 1,800명대로 떨어졌다가 2012년 다시 2,300여 명에 이르렀으며 2014년 기준으로 17,394명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가 생겼는데, 이는 최근 불어온 한국어교육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2014년 12월 말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누계는 17,394명으로서, 2만 명에 근접하였다. 이제 한국어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시행에 힘쓸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제결혼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원의 적재적소 배치는 이러한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어교원들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국어 관련 민간단체

국어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활동 내용을 갖는 민간 차원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국어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국어정책을 민간을 통해 수행한다든지,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민간단체의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회, 연구소, 단체 등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어 관련 단체는 학술대회 개최나 학회지 발간 등 연구 목적의 학회가 72개, 국어 상담·국어문화 운동·한글문화 운동·한글 글꼴 개발·한글 이름 등 국어 관련 활동 중심의 단체가 22개, 사전 편찬이나 특정 주제를 심화 연구하는 연구소가 14개, 재단법인인 세종학당재단(구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를 비롯하여 사단법인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한국어언어학회 등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국어 관련 단체 7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21〉 국어 관련 단체 통계('15년 6월)

형 태	단체 수
학 회	72개
단 체	22개
연구소	14개
법인(재단, 사단)	7개
합 계	113개*

* 학회 겸 법인 2개

가. 국어 관련 단체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22〉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15년 6월)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1	국어단체연합	2006년 국어상담소를 인기받기 위하여 국어단체 몇몇 대표자가 모여 만든 임시 단체	‘국어단체 국어문화원’이 있음.	단체
2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 진흥과 국어 환경 개선, 국어 문화 발전,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노력	한국어 보급을 위한 대회 한국어 상담, 문장 교정 한국어 순화 사업 한글 정보화, 산업화 관련 사업 지역어 발굴과 사업 등	단체
3	국어순화추진회	한글 전용으로 글자 생활의 민주화와 민족 문화 향상	국어순화자료집 우리말 순화의 어제와 오늘 한글과 겨레 문화('96년)	단체
4	세종대왕생가터 복원준비위원회	최근 조직된 단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을 목적으로 함.	한글단체 대표들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건의문 전달	단체
5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 목적	‘우리말 바로 쓰기’ 강연회 개최	단체
6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말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매년 우리말 해침꾼을 선정하여 발표	단체
7	전국국어교사모임	올바른 국어교육을 위한 전국 현직 국어교사들의 연구 실천 연합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 발간 〈어린이와 함께 여는 국어교육〉 연 4회 발간	법인
8	전국국어운동 대학생동문회	전국 대학생 중심 국어운동 목적	강연회 개최 및 회지 발간 국어 정화 및 우리말 애호 운동	단체
9	젊은문학회	우리 문학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됨	문학 활동을 주로 하는 모임	단체
10	푸른솔겨레문화 연구소	우리 문화 보존 목적	강연회 개최 및 출간	단체
11	한겨레말글연구소	우리 민족 말글 연구 목적	학술 발표회 개최(연 1,2회)	단체
12	한국방송(KBS) 한국어연구소	방송 언어에서 축적한 음성 언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른 표준 한국어 사용을 위한 연구와 표준어 보급	한국어 연구 논문집 발간	단체
13	한국어문기자협회	신문과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연구를 통해 언어문화와 신문·방송 발전에 기여	〈말과 글〉 발행 신문·방송·어문교열기자·아나운서 대상 세미나	단체
14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문화 운동 목적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단체
15	한글문화연구회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나라말을 살려 내고 이를 다듬고 가꾸어 한글문화 증흥에 기여	국어사전 작업을 주로 하는 단체	단체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16	한글문화연대	우리 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단체	학술 운동 한글문화, 시민운동 전개 관련 단체와의 대외 협력 추진	단체
17	한글문화원	한글 기계화 운동	한글 자판 연구와 세벌식 자판 보급	단체
18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 글꼴이나 한글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신생 단체	한글문화 상품 개발 한글문화 상품 공모전 개최 한글 사랑 서각전 개최	단체
19	한류전략연구소	한류 전략 모색	한글 관련 디자인 사업	단체
20	한말글	바르고 쉽고 품격 있는 국어 사용 운동을 실천하여, 건전한 우리말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킴	국어의 쉬운말 쓰기 운동 생활국어 상담 및 한말글 일깨우기 국어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및 교육, 출판	법인
21	한말글문화협회	한글 전용 및 기계화를 위한 한글 학회 내의 운동 모임	‘한글새소식’ 창간, 한글큰잔치 준비 성명서 제출	단체
2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겨레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겨레의 말과 글의 통일과 모국어 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겨레말큰사전》 편찬 소식지 〈겨레말 소식〉 발간 웹진 ‘누리판’ 발간	법인
23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이를 보존·선양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체	세종실록 국역, 고전 국역 세종대왕 관련 서적 발간 한글 기계화 세종대왕기념관 관리·운영	법인
24	외솔회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단체	〈나라사랑〉 발행 매년 외솔상 시상	재단
25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국제화된 세계 시민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경희인의 국제화와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 외국어, 한국학에 대한 질 높은 연구와 교육 수행	〈국제교육소식〉 발간 한국어교육	연구소
26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	한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자기 주체성을 확고히 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	〈민족 문화연구〉, 〈민연소식〉 발간, 한국학 연구 성과 출판 정기 학술대회	연구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27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한국어 및 각종 외국어를 대상으로 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 및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추진	〈언어정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2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 연구소	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 교육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문교육〉 발간	연구소
29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국어 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위한 기초 적·실질적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정기 학 술 발표회 개최, 국어 교과서 및 한국어 교재 개발, 국어 능 력 측정 방안 연구, 전국 중·고 등학생 국어경시대회 개최, 국어질문방 운영	연구소
30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의해 각 지역에 설립된 국어 단체 (전국 18개소)	국어상담, 한국어교육, 국어 교육, 국어 관련 행사,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지역어 조사 사업 등	연구소
31	민족 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고려대)	실제 국어생활에 필요한 명시적이고 유용한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 하는 사전 제작	국어사전 편찬	연구소
32	어문학연구소 (국민대)	어문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 각종 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함.	〈어문학논총〉 발간	연구소
33	언어문화연구원	언어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함.	언어문화 연구지 발간	연구소
34	언어연구소 (한국외대)	개별 자연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 및 의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다양한 언어 간의 대조 연구를 수행	〈언어와 언어학〉 발간	연구소
35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국어학과 전산 기술의 접목, 사전 편찬학, 말뭉치 언어학 등 새로운 첨 단 학문 분야의 개척과 국어 정보화 사업에 주력 *1986년 ‘한국어사전편찬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사전 편찬 데이터베이스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세 한국어 대사전』 편찬	연구소
36	한국어문학연구소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교육과 연구의 바른 방향을 모색함.	〈어문논총〉 발행 전국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37	구결학회	차지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를 중점적으로 연구	〈구결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회 의 개최, 매월 월례강독회 개 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38	국어교과교육학회	국어교육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여, 올바른 국어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어 교육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학술대회 개최 〈국어교과교육연구〉 발간	학회
39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함.	〈국어교육학연구〉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40	국어교육학회 (경북대)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 관한 바른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의 이론과 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함께 추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41	국어교육학회 (수원대)	국어 교육을 성찰하고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학술대회와 논문집을 통해 연구 결과물 생산	〈국어교육학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42	국어국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고양하여 세계문화에 기여	〈국어국문학〉 발간(연 3회)	학회
43	국어정보학회/ 한국어정보학회	국어 정보 처리의 이론 체계 정립과 기술 향상을 통한 정보 산업 성장 지원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표준화	〈한국어정보학〉 발간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학회
44	국어학회	순수한 국어학의 연구와 보급 및 연구자 간 친목 도모	〈國語學〉발간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4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코리아학 연구 발전 및 연구자의 교류와 친목 도모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46	국제어문학회	국어학, 국문학, 국어 교육학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국제어문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
47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IAKLE)	국내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내 한국어교육 최대 학회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학술대회, 연수회 개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학회
48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INK)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국내외 학자와 교육자가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립과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발간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49	국제한국언어학회	북미한국언어학회 조직을 위한 특별 준비위원회 학회 결성 발표, 아시아연 구회와 연합 학술 교류 증진	정기 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50	담화인지언어학회	담화문법, 인지언어학, 화용론을 연구 하여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구 윤리규정의 제정 확보	학회
51	대한언어학회	어학, 국문학, 국어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 활용을 통하여 언어학 발전 에 공헌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산하 연구학회 운영	학회
52	돈암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하고, 그 학풍을 계 승, 발전시킴.	학술대회 개최 〈돈암어문학〉 발간	학회
53	배달말교육학회	외국어 교육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 에서 출발하여 국어 교육 개선에 이바지	〈배달말교육〉 발간	학회
54	배달말학회	배달말·글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배달겨레의 문화 창달 에 이바지함이 목적	〈배달말〉 발간 국내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55	어문연구학회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한문학을 연 구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고유성을 중 점 개발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	〈어문연구〉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56	영주어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연구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국어국문 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영주어문〉 간행 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학회
57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나라 안에서의 국어 교육과 나라 안밖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 문제를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58	우리말글교육학회	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국 어 교육에 대한 학술정보 교환	〈우리말글교육학회〉 발간 세미나 개최	학회
59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과 우리글(국어학, 국문학, 국 어교육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우 리 문화 창달에 이바지	〈우리말글〉 발간 전국학술발표대회 개최 매월 월례발표회 개최 우리말글 학술상 수여	학회
60	우리말학회	국어학 및 관련 학문을 연구하며 좁게 는 언어학 넓게는 타 학문과의 정보교 류를 목적으로 함.	〈우리말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1	우리어문학회	우리의 언어와 문학의 제반 문제를 연 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우리어문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62	이중언어학회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응용 사업 추진을 위해 1980년대 설립된 최초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학술대회 개최 외국어교육학의 연구와 교류	학회
63	이화어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를 통해 회원 간의 학문적 함양과 학계의 연구 풍토 조성에 이바지	〈이화어문논집〉 발간 정기 논문 발표회	학회
64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올바른 국어생활 실천	〈새국어교육〉 발간 교과서, 학습 지도 방법 연구 및 국어 교육 자료 제공	학회
65	한국문법교육학회	국어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문법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이를 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	〈문법교육〉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66	한국문학언어학회	국어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언어와 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	〈어문론총〉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7	한국방언학회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	〈방언학〉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
68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상황을 연구하는 목적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69	한국알타이학회	한국과 주변 알타이 제 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 민속 등 문화 전반에 대하여 연구	〈알타이학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70	한국어교육학회/ *구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국어 교육의 이론 및 실체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교육 향상에 이바지	학술대회 개최(연 2회) 〈국어교육〉 학회지 발간	학회
71	한국어문교육학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고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한국 어문 교육 발전에 기여함.	〈어문학연구〉 발간 학술답사 전국학술대회	학회
72	한국어문학교육학회	국어국문학과 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에 힘써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한어문교육〉 발간 학술 발표회 개최	학회
73	한국어문학연구회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어문학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4	한국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및 세계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국학술대회 개최 〈어문학〉 학회지 발간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75	한국어문화/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 학술연구와 한자 교육을 통한 국어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한자능력검정시험 개최 장학사업 및 한자교육 사업	학회
76	한국어의미학회	국어 의미론 연구에 뜻을 둔 회원 상호 간의 학술 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	〈한국어의미학〉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77	한국어학회	한국어학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학의 발전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함.	〈한국어학〉 발간 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78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어, 한국 문학을 연구하여 한국문학의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학문 증진을 도모	〈한국언어문학〉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9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꾀함.	〈언어와 문화〉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0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일반 이론 연구와 개별 언어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언어학〉 발간(연 2회) 학회 소식(계간)	학회
81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이 목적	〈언어〉 발간(계간) 소식지 발행	학회
82	한국음성학회	음성학, 음운론, 음성 공학, 음성 의학, 언어 치료, 인지 과학 등 음성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응용에 관련된 사업의 수행	〈말소리와 음성과학〉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3	한국지명학회	지명을 조사, 정리, 연구하여 지명과 관련된 학술 발전에 기여	〈지명학〉 발행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4	한국초등국어 교육학회	전국의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진과 대학원생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국 초등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	〈한국초등국어교육〉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85	한국화법학회	화법학,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화법론 발전과 화법 교육의 향상에 기여	〈화법연구〉 발간	학회
86	한글학회	한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학술단체 (*1908년 국어연구학회가 모체임)	한글만 쓰기 운동 국어의 순화운동 한글의 기계화운동 조선어사전 편찬 추진 교육 및 학술지 발간	학회 /법인
87	한말연구학회	한글 전용 운동을 지지하고 추진함과 아울러 한말(한국어)과 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한말연구〉 발간 국어학 도서의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88	한민족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민족어문학〉 발간	학회
89	훈민정음학회	훈민정음을 비롯한 세계 문자를 연구하며 무문자 언어 사용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함.	〈SCRIPTA〉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무문자 언어 사용 자에게 훈민정음 보급	학회
90	국어사학회	국어사에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국어사 자료의 강독과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 연구 제 분야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국어사연구〉 연 2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2회 개최	학회
91	국제언어인문학회	언어를 통한 인문학 연구를 표방하는 학회로 다양한 전공 분야에 공통의 수단인 '언어'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인문언어〉 연 2회 발간 (국제)언어인문학회 학술대회 개최	학회
92	동남어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와 이를 통한 학풍 수립을 목적으로 한 학회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등의 사업을 수행	〈동남어문논집〉 연 2회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
93	민족어문학회	한민족의 주체성을 살려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세계 문학과 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어문논집〉 연 2회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
94	반교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반교어문연구〉 연 2회 발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학회
95	(사)한국언어학회	한국 언어학계의 언어학 연구를 독려하고 우리나라 언어학 연구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언어학〉 연 3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법인
96	언어과학회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발달하고 변화하는 언어학 이론을 연구하고, 일반 언어 이론과 개별 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언어과학연구〉 연 4회 발간 전국학술발표대회 연 2회 개최	학회
97	인공지능연구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용량의 한국어 분석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 정보 처리 관련 연구 개발 활동	연구소
98	중앙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통해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어국문학 학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함.	〈어문논집〉 연 3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99	청람어문교육학회	국어교육학, 국어학, 현대 문학, 고전 문학, 한문 교육학의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과 확대를 목적으로 함.	〈청람어문교육학〉 연 2회 발간 관련 학술대회 개최	학회
100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의 수집과 자료 소개, 체계적 분류, 강독과 용어 풀이 등을 목적으로 함.	〈고문서연구〉 연 2회 발간 월례발표회 개최	학회
101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한글의 학문적 연구와 글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고품위의 글꼴 개발의 촉진과 건전한 유통 보급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글꼴개발보급센터’로 지정 한글글꼴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연구소
102	한국사전학회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사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전학과 사전편찬학을 정 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문으로 정립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사전학〉 연 2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103	한국어교육원 (서강대)	국내외 외국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 국어와 한국문화를 연구 교육하는 기관	〈서강 한국어 영어 문법 단어 참고서〉 출판, 미국무부 파견 청소년 한국어교육과정 수탁 운영	단체
1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의 학술 연구와 한자 교육을 통한 국어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어문연구〉 연 4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10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문학연구〉 연 2회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
106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학의 한국어와 한국문 화 교육 전문기관	정규과정 졸업생 논문집 연 4회 발간,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KFL) 강연안 연 4회 발간	단체
107	한국언어문화학회	우리말글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풍요롭게 하려는 모임으로 한국어문학과 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언어와 문화〉 연 3회 발간 국제학술대회 및 전국학술대 회 개최	학회
108	한국작문학회	작문과 연관되는 현상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작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한국작문학 발전을 목적으로 함.	〈작문연구〉 연 3회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109	한국중원언어학회	언어학, 언어 교육, 번역 및 언어 관련 분야의 통섭에 관한 학술 연구를 목 적으로 함.	〈언어학연구〉 연 3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 사업	비고
11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독일의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용하여 한국어 문학에 응용함으로써 한국의 텍스트 분석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텍스트언어학〉 연 2회 발간 집중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
111	한국현대언어학회	국어학,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일어학 등의 개별 언어학과 일반 언어학 연구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함.	〈언어 연구〉 연 4회 발간 학술대회 및 콜로키움 개최	학회
112	현대문법학회	현대 문법 및 언어학 이론의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언어학 및 문법 이론 연구를 목적으로 함.	〈현대문법연구〉 연 4회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113	형태론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개별 언어의 형태론 연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형태론〉 연 2회 발간 집담회 개최	단체

나.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결성

현재 국내에는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등 어문 관련 분야에 90여 개의 학회가 있다. 학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가 세분화, 전문화되었다는 뜻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의견이 분산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학회마다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사안이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계 공동의 견해를 발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0월에 43개의 학회가 뜻을 모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창립하였다. 국어 발전을 위한 소통의 창이 될 연합회는 창립을 기점으로 어문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국어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가 창립한 이후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3〉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활동 내용

구분	주제	주관 학회	날짜	장소
2013년 제1차 포럼	문학과 언어학의 통섭	한국언어학회	'13. 6. 20.	한남대(대전)
2013년 제2차 포럼	남북 언어통합의 문제	국어학회	'13. 8. 9.	춘향문화예술회관 (남원)
2013년 제3차 포럼	어문규범 정책의 방향성	한국어학회	'13. 9. 7.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
2013년 전국학술대회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의 방향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13. 10. 11.	이화여대
2014년 제1차 포럼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한국지명학회	'14. 6. 13.	전남대
2014년 제2차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정책과 한국어교육의 방향성	우리말학회	'14. 8. 21.	동아대학교 (부산)
2014년 제3차 포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한국국어교육학회	'14. 11. 7.	충북대
2014년 전국학술대회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개선 운동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14. 10. 10.	국립한글박물관

2014년 12월까지 어학 14개, 어문 12개, (한)국어·문학 교육 17개, 문학 1개 등 총 44개 어문 관련 단체가 가입을 신청했다. 다음 표는 회원 학회 목록이다.

〈표 2-24〉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회원 학회 명단(가나다순 배열)

연번	학회명	설립일	비고
1	겨레어학회	1960. 3.	어문
2	구결학회	1988. 2.	어학
3	국어교육학회	1969. 12.	교육
4	국어교육학회	1990. 11.	교육
5	국어국문학회	1952. 11.	어문
6	국어학회	1965. 3.	어문
7	국어사학회	1997. 5.	어학
8	국어학회	1959. 11.	어학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85. 7.	교육
10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2001. 9.	교육
11	반교어문학회	1981. 12.	어문

연번	학회명	설립일	비고
12	배달말학회	1973. 3.	어문
13	영주어문학회	2001. 3.	어문
14	우리말글학회	1982. 3.	어문
15	우리어문학회	1975. 3.	어문
16	이중언어학회	1981. 9.	교육
17	청람어문교육학회	1987. 3.	교육
1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989. 2.	교육
19	한국국어교육학회	1963. 9.	교육
20	한국독서학회	1995. 8.	교육
21	한국문법교육학회	2004. 3.	교육
22	한국문학언어학회	1970. 1.	어문
23	한국방언학회	2004. 9.	어학
24	한국문학교육학회	1996. 8.	교육
25	한국사전학회	2002. 2.	어학
26	한국사회언어학회	1990. 12.	어학
27	한국알타이학회	1985. 10.	어학
28	한국어교육학회	1955. 2.	교육
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69.7.	교육
3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64. 3.	어문
31	한국어문학회	1956. 11.	어문
32	한국어학회	1985. 7.	어학
33	한국언어문학회	1963. 2.	어문
3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3. 11.	교육
35	한국언어학회	1956. 10.	어학
36	한국작문학회	2005. 6.	교육
37	한국중원언어학회	1994. 10.	어학
38	한국지명학회	1997. 9.	어학
3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83. 12.	교육
4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1. 12.	어학
41	한국현대소설학회	1992. 11.	문학
42	한국화법학회	1998. 8.	교육
43	한글학회	1908. 8.	어학
44	한말연구학회	1986. 4.	어학

제2절

국외 현황

1. 한국어의 위상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과 지속적인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사 이래 겪어 보지 못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져야 함은 물론이고 한국어의 위상도 점점 높아져야 하겠다.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려면 현재의 위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전 세계의 한국어 사용 인구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외국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과목 채택 현황, 외국 대학의 한국학 개설 현황 등을 알아보겠다.

1.1. 한국어 사용자 수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남한)과 북한뿐이지만, 재일 동포, 재중 동포, 구소련 지역(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동포, 북미·유럽·남미 등의 동포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동포 사회가 한국어 사용 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어 또는 제2외국어로 배워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부 외국인들도 넓은 의미의 한국어 사용 인구에 포함할 수 있다. 세계에는 7,479개의 언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7,700만 명~7,880만 명으로 추산된다(2013년 에스놀로그(Ethnologue)³⁾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로 세계 13위임.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의 시차 및 산출 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통계 수치상 차이가 있음.).

3) 에스놀로그(Ethnologue): 화자들에게 본토어로 성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들 연구하는 기독교의 언어학 봉사 단체인 '에스아이엘(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하계 언어학연구소])에서 펴내는 웹 및 인쇄 출판물의 이름. 에스놀로그는 '민족어'라는 뜻. <위키백과> 참조.

〈표 2-25〉 모어 사용자 수에 따른 상위 20개 언어

(단위: 백만 명)

순위	언어	사용자 수	순위	언어	사용자 수
1	중국어	1,197	11	자바어	84.3
2	스페인어	399	12	표준 독일어	78.1
3	영어	335	13	한국어	77.2
4	힌디어	260	14	프랑스어	75.9
5	아랍어	242	15	텔루구어	74.0
6	포르투갈어	203	16	마라티어	71.8
7	벥골어	189	17	터키어	70.9
8	러시아어	166	18	타밀어	68.8
9	일본어	128	19	베트남어	67.8
10	란다어(핀자브어 등)	88.7	20	우르두어	64.0

* 출처: 에스놀로그 Ethnologue(<http://www.ethnologue.com/statistics/size>)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2009년부터는 한국어로 국제특허 출원을 할 때 이제는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 공개어는 특허 출원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 사회에 알릴 때 쓰는 특허계의 공용어로 현재 10개 언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 사용자의 절대다수가 한반도에 국한하여 거주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언어 생태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상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외국의 한국어 과목 채택 및 개설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래는 2013년 기준 외국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통계이다.

〈표 2-26〉 외국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13년)

지역	국가별	2013년도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정규	방과 후	계	정규	방과 후	계
아시아	중국	6	0	6	270	0	270
	일본	276	36	312	10,873	1,450	12,323
	대만	58	0	58	3,186	0	3,186
	태국	69	0	69	22,153	0	22,153
	인도네시아	0	31	31	0	3,316	3,316
	필리핀	m	m	m	m	m	m
아메리카	미국	103	19	122	10,007	581	10,588
	캐나다	0	38	38	0	2,505	2,505
중남미	파라과이	12	2	14	1,598	76	1,674
	아르헨티나	0	4	4	0	315	315
	브라질	0	4	4	0	143	143
CIS	키르기스스탄	1	27	28	40	2,557	2,597
	카자흐스탄	0	18	18	0	677	677
	우즈베키스탄	20	0	20	7,102	0	7,102
	타지키스탄	2	0	2	469	0	469
	러시아	26	12	38	3,981	207	4,188
	이르쿠츠크(총)						
	우크라이나	4	0	4	441	0	441
	벨라루스	2	0	2	26	0	26
유럽	프랑스	10	14	24	893	1,897	2,790
	독일	1	11	12	63	144	207
	노르웨이	1	0	1	35	0	35
	불가리아	2	0	2	99	0	99
	영국	0	6	6	0	88	88
오세아니아	호주	57	0	57	6,992	0	6,992
	뉴질랜드	10	0	10	702	0	702
아프리카	케냐	m	m	m	m	m	m
	카메룬	m	m	m	m	m	m
계		660	222	882	68,930	13,956	82,886
		24개국					
		23개국 지원					

* 출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내부 자료

※ 'm'은 매년의 통계자료가 없음(그 외 한국어 채택 국가 중 자료 미제출국은 제외함).

초·중·고교 외에 대학에 한국학과 또는 한국어과를 개설하거나 한국어 강좌(프로그램)를 개설한 국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7〉 외국의 한국학(대학 및 한국어프로그램, 한국학연구소, 학회) 현황

(2010년 1월)

대륙별	국 가	한국학 대학 및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소	학회
아시아	일본	347	6	7
	중국(홍콩 포함)	42	27	1
	몽골	13	4	
	베트남	13	4	1
	대만	9	1	3
	태국	9	3	1
	말레이시아	7		
	캄보디아	6		
	인도	4		1
	인도네시아	2	1	
	싱가포르	2		
	터키	2		
	필리핀	1	1	1
	방글라데시	1	1	
	미얀마	1		
	브루나이	1		
	스리랑카	1		
소계(17개국)	461	48	15	
북미	미국	92	14	11
	캐나다	6	1	
	소계(2개국)	98	15	11
독립국가 연합(CIS) 및 동유럽	러시아	27	6	2
	카자흐스탄	6		
	우즈베키스탄	5		
	폴란드	3		
	체코	2	1	1
	루마니아	2		
	리투아니아	2		
	벨라루스	2		
아제르바이잔	2			

대륙별	국 가	한국학 대학 및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소	학회
	헝가리	2		
	마케도니아	1		
	불가리아	1		
	에스토니아	1		
	키르기스스탄	1		
	소계(14개국)	57	7	3
유럽 (서·북·남)	독일	13	1	1
	프랑스	10	1	4
	이탈리아	5		
	영국	4	1	1
	스페인	3	1	
	핀란드	2		1
	네덜란드	1	2	
	스웨덴	1	1	
	노르웨이	1		
	덴마크	1		
	벨기에	1		
	오스트리아	1		
	소계(12개국)	43	7	7
중동 및 아프리카	튀니지	5		
	이스라엘	2		
	요르단	1	1	
	모로코	1		
	알제리	1		
	이집트	1		
소계(6개국)	11	1	0	
중남미	아르헨티나	4	2	3
	멕시코	2	1	1
	칠레	2	1	
	브라질	2		
소계(4개국)	10	4	4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6	2	1
	뉴질랜드	2	1	1
	소계(2개국)	8	3	2
총계		57개국 688개 기관	25개국 85개 기관	18개국 42개 학회

2. 한국어 국외 보급

한국어 국외 보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국어 보급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현황 등을 수 치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국어 보급 기관

한류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한국어 보급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은 2014년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약 4,000개(세종학당 130개, 한글학교 1,918개, 한국학교 31개, 국외 대학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어강좌 개설 845개, 초중등학교 중 한국어 과목 채택 학교 882개)가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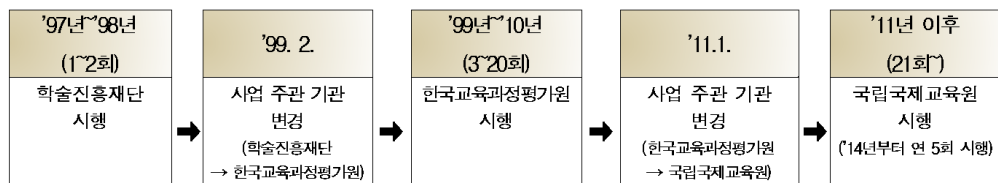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01년 7만여 명이었던 국외 한국어교육 기관의 한국어 수강생은 2013년에는 326,222명으로 4.6배 정도 늘었다(세종학당 수강생 37,177명, 한글학교 학생 106,397명, 한국학교 학생 12,322명,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수강생 82,886명, 국외 대학 한국어 강좌 수강생 57,440명 등 합계 326,222명).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국어에 대한 호감은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보급 기관과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국력 증진에 힘입은 결과이지만 거꾸로 국력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2.2.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공인시험 2개와 민간인증시험 10여 개가 있다. 공인시험으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험을 주관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하였고,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그림 2-7]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혁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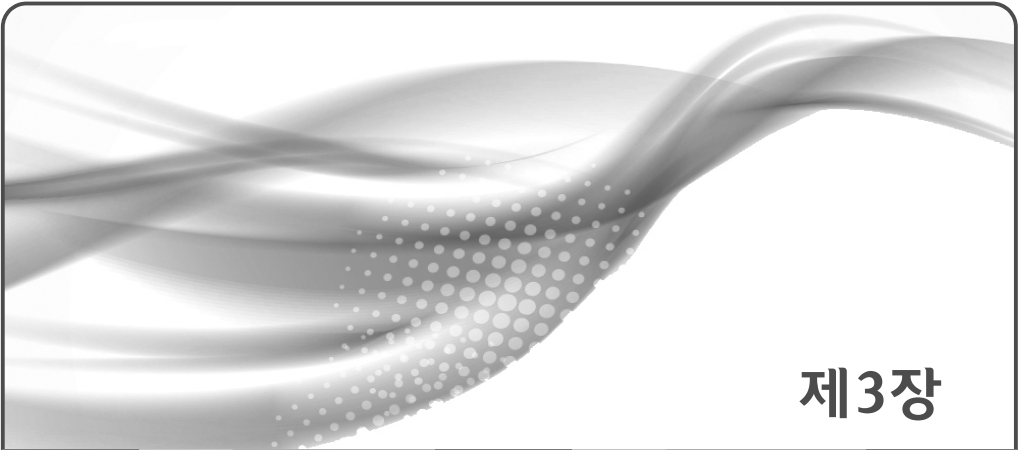
〈표 2-28〉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2,692	2,274	711
1998	제2회	3,227	2,663	1,011
1999	제3회	3,926	3,445	2,513
2000	제4회	5,976	4,850	2,920
2001	제5회	7,475	6,049	3,364
2002	제6회	8,788	7,306	4,534
2003	제7회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34,028	30,270	16,456

4) 2006년 12월 재외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구분하였으나 2011년부터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폐지되었다. 편의상 표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인원만을 보였다.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2007	제11회	13,247	12,030	7,655
	제12회	36,886	31,783	19,112
2008	제13회	31,796	26,864	17,449
	제14회	42,497	36,596	18,881
2009	제15회	39,658	34,598	21,216
	제16회	46,262	40,543	21,525
2010	제17회(국내)	3,552	3,211	1,840
	제18회	41,865	36,183	18,558
	제19회	47,572	41,418	18,368
	제20회(국내)	13,964	11,795	5,711
2011	제21회(국내)	8,233	7,118	4,417
	제22회	46,797	40,016	24,065
	제23회(국내)	14,710	13,057	7,598
	제24회	51,810	43,718	24,972
2012	제25회(국내)	15,983	14,072	7,018
	제26회	53,613	45,169	26,587
	제27회	19,344	17,305	10,432
	제28회	62,226	51,591	27,964
2013	제29회(국내)	18,702	16,677	11,578
	제30회	58,637	48,750	30,418
	제31회(국내)	22,919	20,542	12,108
	제32회	67,595	56,099	31,766
2014	제33회(국내)	23,224	20,572	12,287
	제34회	72,082	60,361	40,421
	제35회(국내)	22,629	20,341	15,577
	제36회	69,208	59,176	38,694
	제37회(국내)	21,305	18,481	12,946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제2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 수립
배경 및 추진 성과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1.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기반 조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가 품격을 갖춘 훌륭한 소통 도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승하고 보전할 만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춘 국어를 후세에 전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바른 언어문화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범국민연합)의 협업을 통하여 국민이 모두 바른 언어 사용에 공감하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가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3개 분야(공공, 방송·인터넷, 청소년)에서 2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글·국어 단체, 방송·인터넷, 학계·청소년, 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범국민연합의 주요 단체가 주축이 되는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언어 개선이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개선에 솔선수범하여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매달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도 자료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

하며, 전문용어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부하고자 한다.

셋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이다. 이는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매체의 책임 의식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별 청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건전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 '선플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자 한다.

넷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 언어 환경 개선이다. 청소년은 앞으로 국어를 이끌고 나갈 주역이라는 면에서 청소년 언어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이들에게 보람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교훈을 주면서도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바른 언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다섯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의 활성화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어문화원의 국어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어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자 하며,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를 개최함으로써 역할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할 것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으로 전환

그동안 국가가 추진했던 언어정책은 국가가 중심이 된 표준어 중심의 언어정책이었다.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중의 동의와 공감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적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자연언어가 표준어보다 훨씬 더 널리 쓰인다. 이에 국가의

언어정책도 국가 중심의 노선을 지양하고 언중의 수요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언중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을 구축하고 정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신규 자료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이미 구축된 자료를 교정·교열·정비를 통해 사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한국어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한국어기초사전”을 번역하여 “다국어사전”을 확대·구축하도록 한다.

둘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언어 소외 계층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는 언어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및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어 환경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데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아동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시대를 여는 생활 필수 어휘』를 출판하며, 한국수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어 홍보 책자를 발간하며, 시각 장애인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한다.

셋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어문규범 현실화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어를 추가로 사정하여 규범과 현실 언어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성명의 로마자 표기 권장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일을 수행한다.

넷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용어 번역의 표준화이다. 우리 주변의 문화·도로·관광 용어나 공공 명칭을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혼란을 일으키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하여, 국민 및 세계와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글 전시 용어 및 문화 용어의 번역 표준화, 도로·관광 안내 용어의 번역 통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

3. 한글·한국어의 대내외 위상 강화

우리의 국력이 신장한 것과 함께 한글과 한국어의 대내외의 위상도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때에 한글과 한국어의 대내외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굳건하게 함으로써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세종학당의 지정 확대이다. 이는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학당을 확대하여 한국어·한국문화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곳에 세종학당을 신규로 설립하고, 전문 한국어교원을 이곳에 파견하여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새로 건립된 국립한글박물관의 성공적인 운영이다. 다양한 전시 기획과 각종 강좌 개설을 통하여 형식에 걸맞은 내용을 담고자 한다. 단순히 한글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문화'를 보급하고 나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여 한글의 소통 정신을 알린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한글문화유산을 언제든지 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디지털 한글박물관을 개편하여 재개관한다. 이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한글문화를 접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한글날 행사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한글의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한글날 행사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글날, 한글문화큰잔치' 행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전시회, 공연, 학술 행사, 시민 참여 행사 등을 마련한다. 또한 한글날 경축식, 전야제, 한글문화 예술 행사, 전국 국어문화원 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 세종학당 행사, 한글발전유공자 초청 행사 등 한글을 매개로 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것이다.

제2절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1. 근거 및 목적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시행 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되며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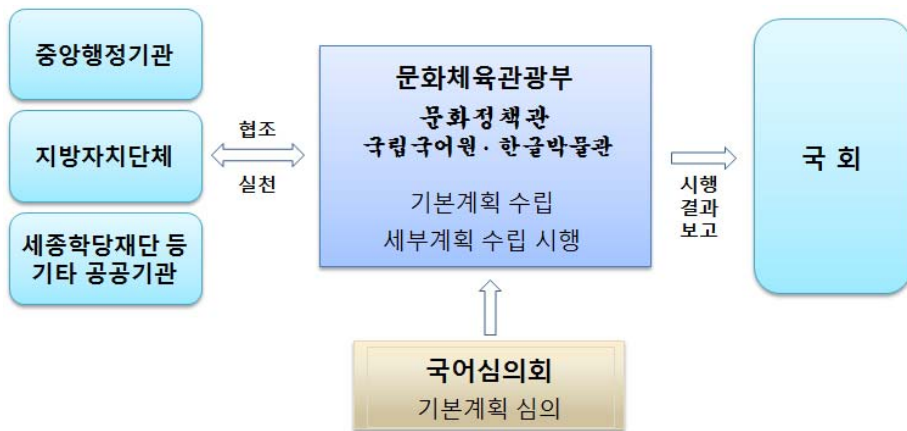
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은 국민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의 변화하고 있는 국어 환경에 부합

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의 발전에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운 계획을 수집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2년마다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제1차 ~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가.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07년~'11년)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이다. 3대 중점 추진 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3-1〉 3대 중점 추진 과제

<p>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교육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
<p>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차('07년~'08년):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09년~'11년):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12년~'16년):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언어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 ▶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국어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교육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교육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체계 구축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
-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
- ▶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는 『국어기본법』 및 정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국어 정책으로, 10대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3-2〉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망 구축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교육 확대 3-2 새터민 ⁵⁾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사용 실태 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 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 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8-1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10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 10-3 국어생활 기획 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나.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는 한국어 세계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종학당 60개소를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 초급, 중급 1·2 및 교원용 지침서를 개발하고 국내외 세종학당 및 주요 기관에 보급하였다. 특히 초급·중급 교재를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현지화하여 발간함으로써 한국어 학습 기초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외 한국어 학습자들의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세종학당인 누리-세종학당을 2009년에 개통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으로 된 누리집을 8개 언어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과 2011년 각 1회씩 온라인 75시간, 현장 교육 45시간으로 구성된 세종학당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 교수법 등 한국어교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세계 한국어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매년 20개국 내외에서 300여 명 정도의 한국어교육자 참석) 한국어교원들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공공언어 개선 분야에서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국어문화학교 특별반을 연 2회씩 운영하였고 한글사랑지원단('09년), 우리말 가꿈이('10년~'11년) 등 민간 단체를 지원하였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 토론회는 물론이고 방송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사 공동 토론회를 연 1회씩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5)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 동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임. 본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해 기술함.

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감수 지원(연평균 1,500건),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지원(연평균 66건) 등 공공 부문의 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무원 국어사용 지침서, 차별적 표현 개선 안내서, 방송 언어 안내 지침, 신문 언어 안내 지침, 통신 언어 교육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부처별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편리한 국어사용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2011년에 복수 표준어 및 표기 관련 심의를 통하여 39개의 복수 표준어 및 표기를 추가·확정하였다. 2010년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영향 평가, 외래어 표기법 영향 평가, 문장 부호 규정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에 표준어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문 정책 수립을 위한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2010년 월드컵 선수명 한글 표기 표준안 920여 개를 발표하는 등 시사·시의적 외래어 표기를 즉시 확정·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외래어 표기 용례 48,220건, 로마자 표기 용례 12,803건, 주요 어휘 용례 8,666건을 탑재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연평균 45,000여 건의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하였다.

국민의 언어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인 국어사전 편찬 분야에서는 2008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개정하고 인터넷판을 개통하여 상시 현행화 환경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쉽고 체계적인 풀이와 현실 언어를 반영한 사용자 참여형 100만 항목의 “(가칭)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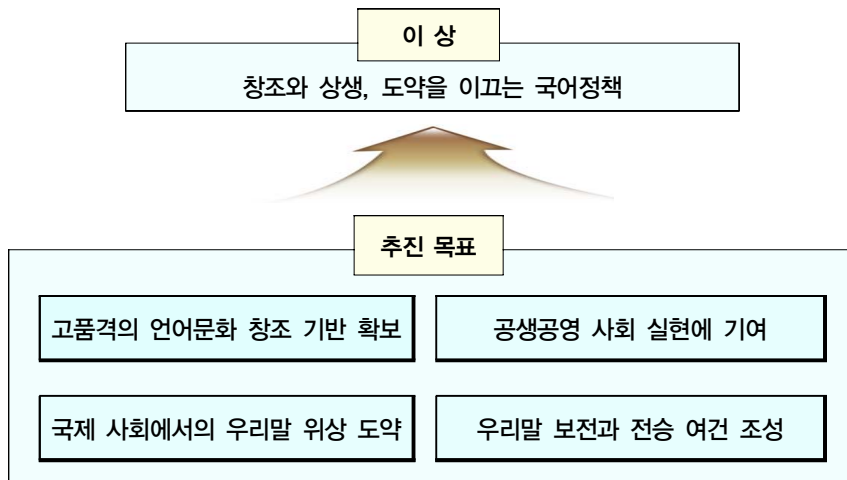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 2010년 5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서 착공에 들어간 한글박물관 건립을 빼놓을 수 없으며, 『국어기본법』 등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법·제도를 제정 및 보완했으며, 2011년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걸맞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어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다가가는 정책 시행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다.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환경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우리 사회의 국어사용 환경을 살펴보면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여러 효과가 있었지만, 직장인들의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 능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청소년층의 비속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공공언어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오·남용,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비규범적 언어 사용 증가로 우리말 체계가 왜곡되는 등 국어사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소외 계층이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다언어·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국어사용 환경 변화를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라.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개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은 창조와 상생, 도약을 이끄는 국어 정책을 지향한 것으로, 고품격의 언어문화 창조 기반을 확보, 공생공영 사회 실현에 기여,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 우리말 보전과 전승 여건 조성 등을 추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2]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5대 추진 과제와 각 추진 과제별로 3개씩의 세부과제가 설계되어 '15대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3-3〉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추진 과제	
5대 추진 과제	15대 세부 과제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사용 환경 조성 1-2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2-1 언어소외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세종학당」 확대·운영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3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5-1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2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위의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5대 추진 과제 및 15대 세부과제별로 2013년~2014년의 기간 동안의 추진 결과를 다음의 제3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3절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 수립 배경 및 추진 성과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1.1. 수립 배경

가.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최근 들어 언어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게 기존의 언어 사용 지침을 보완한 국어생활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국어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수집·제공함으로써, 국어생활 전반에 관한 국민의 의문과 불편을 없애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크게 증가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국어생활과 관련된 상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어 전문 상담 인원 및 체제를 보강하여 국민의 상담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나.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국립국어원은 일반인 및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국어 전문 교육 기관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체제가 아직 미흡하다. 지금까지의 국어문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더욱 섬세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이미 '학습 관리 정보화 시스템(LMS)'을 구축한 바 있는데 하루

빨리 다양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어 강좌를 개발하여 상시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이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원 등에 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연계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해서도 지방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강좌와 맞춤형 교재를 개발·제공해야 한다.

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청소년의 언어생활에서 욕설이 일상화된 지 오래되었다.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며, 욕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5.4%에 불과하다(『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2011년). 그러나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아직 청소년 및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 자료도 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언론 등으로부터 청소년 언어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의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언어 환경 조성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는 학교나 학생 단체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1.2. 추진 성과

가.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2014년 12월 '문장 부호'를 개정하고, 새로이 복

수 표준어를 추가 사정하여 발표하는 등 어문규범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또한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외래어 표기 용례(57,701개), 로마자 표기 용례(13,567개) 등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개선·확정된 각종 국어생활의 내용을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연 12회),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매주 5회)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올바른 언어생활을 보급하기 위해서 ‘표준 언어 예절’ 관련 동영상(‘경어법 혼란 개선을 위한 동영상’ 2편)을 제작·보급하여 각종 어문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바르고 편리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통해서 국어생활 상담과 어문규범 안내 및 보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어생활 관련 상담량이 크게 증가하고 그 상담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소통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국어생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나다 전화’, ‘온라인 가나다’, ‘트위터’, ‘카카오톡’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소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국어생활 상담의 상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가나다 전화’로 110,700건, ‘온라인 가나다’로 21,333건, ‘트위터’로 14,379건, ‘카카오톡’으로 7,443건의 국어생활 관련 상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 불편을 크게 덜어 주었다.

나.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국립국어원은 공무원 및 일반 성인 대상의 국어 교수 학습 연수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를 2년간 총 1,133회 운영하였다.

국어문화학교는 주로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내 국어문화학교(정규 과정과 특별 과정), 외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획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등으로 나뉘는데, 2013년의 경우, ‘원내 국어문화학교’(국어전문교육과정)는 총 25회 3,141명(정규 과정(공무원반, 교사반) 18회 2,329명, 특별 과정(대학강사 과정, 공공언어 향상 과정 등) 7회 812명)이, ‘기획 과정’은 총 100회 7,306명(국회 사무처 직원, 국립암센터 직원 등)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총 504회

25,264명이 수강하였다. 2014년의 경우, '원내 국어문화학교'(국어전문교육과정)는 총 26회 3,071명이, '기획 과정'은 총 163회 9,952명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총 629회 34,252명이 수강하였다.

원내 국어문화학교는 2013~2014년 2년간 51회 교육에 6,212명이 수강하였고, 기획 과정은 2년간 263회 교육에 17,258명이 수강하였으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년간 1,133회 교육에 59,516명이 수강하였다. 국어문화학교 강의 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가 90%로 높았으므로 국어문화학교가 국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에서 교사,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대학 교양 국어 담당 강사 등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도모한 것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특성에 맞추어 교육하는 '기획과정'은 2010년에는 15회 489명이 수강했으나 2014년에는 163회 9,952명이 수강하여 기획 과정이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2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국립국어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 지역민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013년에 504회 25,264명이 수강하였고, 2014년에 629회 34,252명이 수강하여 35.5% 증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에서 기초 국어 능력이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것은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과 우리 국어 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내 국어문화학교 교재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직무 연수 교재, 관공서와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그리고 국어문화학교 정규 과정 및 특별 과정(수요자 맞춤형 국어교육 과정)의 맞춤형 교재 총 25종을 개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그리고 2012년 처음으로 개통하여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교과서와 함께하는 어문규정(8차시)', '돋보기로 들여다본 나의 언어(8차시)' 등의 온라인 국어 강의 콘텐츠 2종을 개발하였는데,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2013년 948명에서 2014년 4,120명으로 크게 늘었다.

〈표 3-4〉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10년~'14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35	29	36	25	26	151
	인원(명)	3,174	2,701	3,841	3,141	3,071	15,928
기획 과정	횟수(회)	15	81	75	100	163	434
	인원(명)	489	5,919	5,055	7,306	9,952	28,721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횟수(회)	316	334	486	504	629	2,269
	인원(명)	27,804	28,689	34,347	25,264	34,252	150,356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인원(명)	-	-	-	948	4,120	5,068
총계 인원(명)		31,467	37,309	43,243	36,659	51,395	200,073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는 지방 협력 기관과의 연계 교육도 강화하였다.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인재개발원, 지방교육연수원 등에 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경기도올곡연수원, 대전교육연수원, 충청북도단재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지방 교육 기관과 외부 기관에 국어 전문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국어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였다('13년 20건, '14년 36건 등 총 56건).

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청소년 언어문화의 저속화로 국가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른 언어생활 교재를 발간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첫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교 교사의 현장 지도 자료인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수련 시설 등에 보급하고, 방송 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방송(KBS)과 함께 '쉴! 욕 없는 교실 만들기'(한글날 특집 방송)를 제작·방영(방송 후 DVD 제작·배포)함으로써 교사, 언론 등 다양한 수용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 언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1회)’을 개최하고, ‘청소년 언어 실태와 청소년 언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5회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의 경우, 공모전 수상작을 모아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욕설 남용에 대한 청소년의 언어 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유관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언어문화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청중(청소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당사자로부터 청소년 언어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책자 6건)를 개발·보급하였다. 더불어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직접 자체 인쇄·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2.1. 수립 배경

가.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그에 따른 능동적인 언어정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시각·청각 장애인,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이 절실한데, 아직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이며 한층 내실 있는 국어교육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 발음을 교정하거나 훈련을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수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의 문화적 차이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

에게 언어 학습 장애 및 이로 인한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 교수 자료의 개발도 시급하다.

다음으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언어 사용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언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남북 관계는 정치 변화에 따라 경색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남북 언어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남북 언어 교류의 활성화는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언어 교류는 남북 언어 사전 편찬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학술대회 개최 등의 간접 교류라 할지라도 언어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 언어 통합 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고착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남북 언어의 통합 및 남북 언어 소통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국외 국어교육은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수가 701만 명(13년 기준, 외교부)에 이르며, 주요 활동 세대가 3~4세가 내려오면서 거주국에 급속히 동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재외 동포의 민족 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재외 동포가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한국어와 더불어 현 거주 국가의 언어도 잘해야 하는 언어적 상황에 놓여 있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외 동포에 대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와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동포 사회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재외 동포 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2.2. 추진 성과

가.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약 2만 4천여 명이 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범죄 등,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했다.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 등 8개 기관에 74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교사들에게 국어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2회 81명 교육)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휘 학습용 국어 교재인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총 3권, 1권 공공생활, 2권 문화생활, 3권 개인생활)와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를 출판·보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서인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교사의 국어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어 어휘와 표준 발음·억양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교재를 출판·보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언어 적응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화 표준화, 농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점자 개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동안 복지적 차원으로만 접근해 왔던 장애인의 특수 언어에 대하여 언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표준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사전을 확충·보완(한국수어 동영상 웹사전 증보 3,057건)하였고, 점자 학습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폰용 수어 사전 등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농인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1건)를 발간하여 농인의 문해력 향상을 꾀했고, 점자 관련 기초 연구 보고서(1건)를 발간하여 점자 연구의 기반을 닦았다.

그리고 특수 언어의 기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한국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및 농문화(농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수어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제정을 추진했다(이예리사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22., 상정 2013. 12. 9.).

나.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남북의 직접 교류를 통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문헌 중심의 연구로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향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합 계획(북한어 실태 조사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 언어 소통 기반 조성)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언어 동질성 회복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남북한 관계의 경색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헌 중심의 북한어 연구 조사(북한어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북한어 문어·구어 균형 말뭉치를 구축하고, 북한어 및 북한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북측이 불참한 상태에서이지만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남북 공동 국제 학술대회(연 1회)도 개최했다.

또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남북 공동회의는 2회(목표 8회) 개최에 그치고 말았으나, 남측의 편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표제어 14만 3천 개 집필)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북한어, 북한 문화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다. 케이티브이(KTV)와 공동으로 남북 생활 용어, 방송 용어, 언어문화 등의 차이를 소개하는 ‘우리말 하나 되기’(KTV, 5분 동영상)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13회 제작·방영하였다.

다.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와 변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 한국어 변종의 발생으로 의사소통의 장애가 발생한 지역인

독립국가연합 동포('13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및 재미 동포('14년,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카고, 호놀룰루 지역)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독립국가연합 동포 및 재미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을 조사하고, 발생 유형과 발생 원인을 항목별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재외 동포 사회의 한국어 변종과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세종 한국어』 및 『세종 한국어교원용 지침서』 등 총 12권('13년 『세종 한국어 5-8』, 『세종 한국어 1-4 교원용 지침서』 등 8권, '14년 『세종 한국어 5-8 교원용 지침서』 4권)의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국외의 재외 공관에 보급하였다. 이렇듯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재외 동포의 언어 소통 능력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3.1. 수립 배경

가.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공공기관의 공문서, 보도 자료 등에 나타나는 행정 용어,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들은 끊임없이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언어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 개선에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도로·관광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어의 번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여 외국인들과의 소통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용어의 번역 기준과 표준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언어의 대국민 및 외국인과의 소통성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전국의 국어문화원 등과 공공기관(국어책임관) 간에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의 언어 또한 국민의 국어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중매체의 언어가 인격을 비하하는 말이나 비속어의 남용, 외국어 남용, 언어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대중매체 스스로의 정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의지 및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국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어기본법」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지정이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및 성과 또한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공공언어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급속한 시대 변화는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용어는 이제 특정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그 활용 가치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전문용어 정비를 산발적, 비연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 의사소통 원활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전문용어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언어 사용 문화 개선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빈번한 비속어 사용, 정부의 법적인 권한 미약, 사후약방문식의 감시 행정 등으로 쉽고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의 확산은 그 한계에 부딪혔다. 따라서 정부, 한글단체, 대중매체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언어문화 시민운동을 조직·운영할 필요가 있다.

3.2. 추진 성과

가.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공공기관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국민 언어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쉬운 공공언어 쓰기' 사업을 전개했다.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쉬운 말과 명료한 문장으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공언어 사용 지침'(5대 원칙: 국민의 처지에서, 쉬운 말, 명료한 말로 쓰기, 시각적 효과와 가독성 고려, 문서 작성지를 고려한 표현, 국민 언어생활의 모범 제시)을 마련하였고, 공공언어의 개선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언어 감수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 감수 요원을 해당 기관에 직접 파견하기도 하였다.

공공언어 감수 요청의 증가에 따라 '공공언어 감수단'을 증가(3명 → 11명)시켜 행정 용어, 정책(제도)명, 신설 기관(부서)명, 구호, 대외 공문, 보도 자료, 안내문, 공고문, 법령 및 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 등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13년 195개 기관 444건, '14년 156개 기관 36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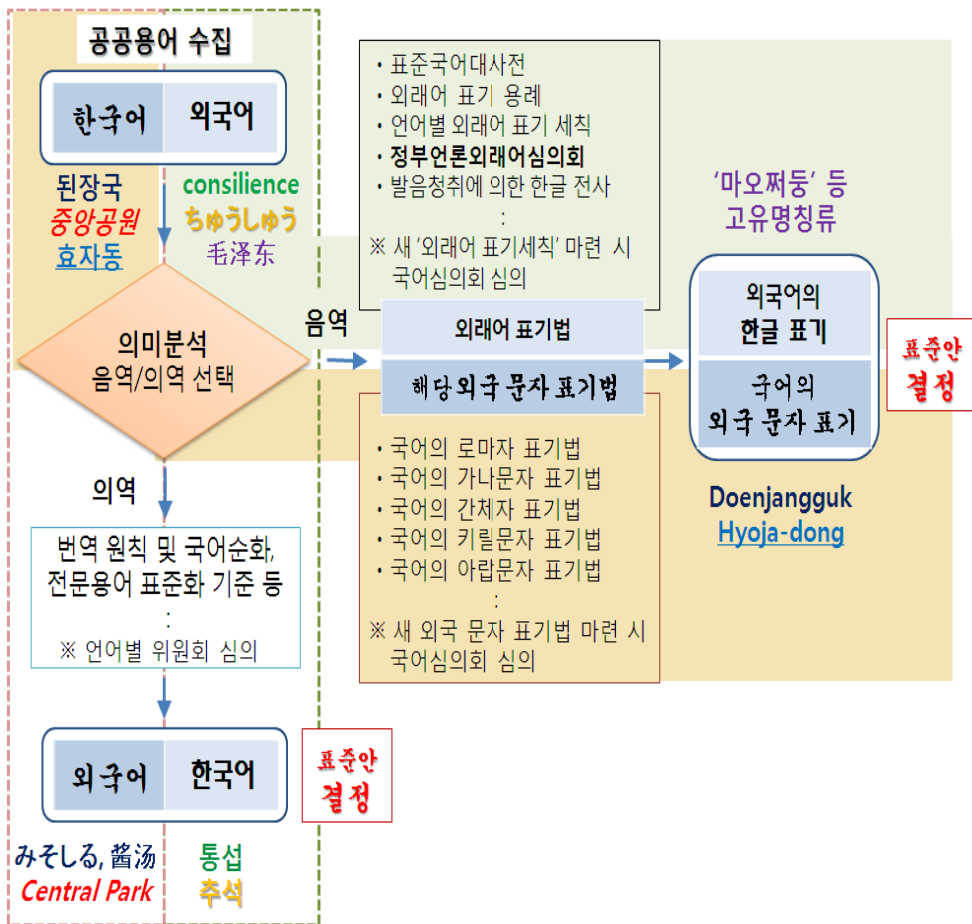
〈표 3-5〉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요청 및 지원('10년~'14년)

구분	'13년(195개 기관)				'14년(156개 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단체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단체	기타	합계
용어(순화, 정책명, 기관명, 구호)	40	31	28	99	22	23	9	6	60
보도 자료 안내문, 공고문	111	105	37	253	118	78	26	7	229
법령·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	47	22	23	92	16	42	10	0	68
기타	0	0	0	0	6	0	0	0	6
계	198	158	88	444	162	143	45	13	363

그리고 도로·관광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공공용어에 대한 외국어 번역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어 표준어 절차를 마련하고, 2013년과

2014년 농식품부(한식재단)와 함께 주요 한식명(200개)의 번역을 표준화하여 국내 외 식당 등에 보급하고(한·로마자·영/중/일) 2014년 한식, 한글 전시, 문화재 등의 용어(한식 용어 50개, 한글 전시 용어 150개, 문화(재) 용어 100개 등 총 300개)의 번역을 표준화함으로써, 공공언어를 통한 외국인들과의 소통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 밖에도 2014년 서울시, 관광공사 등과 함께 번역 실무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용어의 외국어 표기 및 번역 지침안(한식, 문화, 도로, 관광 안내 등 공공용어)’을 마련하였다.

〈표 3-6〉 공공용어 (한국어 ↔ 외국어) 번역 표준화 절차 가상도



* 음역(문자 표기 변환) 및 의역(의미 번역)

한편, 각 행정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해 전면적인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순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59개 기관(42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을, 2014년에는 61개 기관(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언어를 상시 점검하여 부적격 표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그 개선을 권고('13년 3,704건 점검 및 222건 개선 권고, '14년 4,000건 점검 및 622건 개선 권고)하고, 법령 용어의 검토 및 개선도 지원('13년 583건, '14년 228건)하였다. 또한, 교과서, 법령, 정책 제도명 등 공공언어의 사용 지침이 되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를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자책으로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개선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언어 전용 누리집'을 확대·개편하였다.

〈표 3-7〉 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한 전면적 진단 평가 결과('13년~'14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공공언어 진단 정책 연구용역 시행('13. 4.) ◦ 우수 기관 표창('13. 12.) ◦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공공언어 진단 정책 연구용역 시행('14. 4.) ◦ 우수 기관 선정('14. 12.)
공공언어 상시 점검 및 개선 권고(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언어 상시 점검 및 부적격 표현에 대한 개선 권고(연중) ◦ 2013년 3,704건 점검, 222건 개선 권고 ◦ 2014년 4,000건 점검, 622건 개선 권고
공공언어의 사용 길잡이 마련·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작성·배포(전자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해 대중매체 언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신문·방송인(기자, 피디, 작가 등) 및 매체 관계자를 교육하고(총 7회, '13년 5회, '14년 2회), 방송 인

어 사용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하고「바른 방송언어상」(14. 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방송 언어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저속한 표현, 어문규범에 위배되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에 그 결과를 알려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8개 방송사에 총 59건), 『방송 언어 개선 지침서』(사례 조사집)와 올바른 방송 언어 정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방송 관계자와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연예·오락 방송언어의 청정 지수도 개발하였다.(14. 12.) 전국 국어문화원을 활용하여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조사 항목별 100분당 오류의 개수를 수치화하여 이를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렇듯 수치화·객관화하여 개발한 연예·오락 방송언어의 청정 지수는 향후 연예·오락 방송언어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의 건전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 ‘선플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켰다.

〈표 3-8〉 대중매체의 언어 개선 주요 실적('13년~'14년)

대중매체 관계자 교육	◦ 신문·방송인(기자, 피디, 작가 등) 및 매체 관계자 교육(총 7회)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 시상	◦ ‘바른 방송언어상’ 시상(14. 6.)
방송 언어 개선 활동(연중)	◦ 조사 대상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 결과 알림 및 개선 권고(8개 방송사에 총 59건) ◦ 방송 언어 개선 지침서(사례 조사집) 100부 제작 및 배포('13. 11.) ◦ 올바른 방송 언어 정착을 위한 포스터 100부 제작 및 배포('13. 11.) ◦ 연예·오락 방송언어의 청정 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14. 12.)

2015년 6월 현재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에 45명,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371명,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7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26명 등, 총 659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들 국어책임관은 공공 부문에서 국어의 오용과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고, 올바른 국어 환경을 조성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또는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국어책임관 안내서를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에게 배포하였다.

둘째,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조사한 주요 공공기관의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을 평가하고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을 선정하였다. 2013년에는 국방부와 경기도가,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전라남도 고흥군이 국어책임관 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넷째,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상호 간 지역의 국어 발전 및 진흥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언어 사용 조례' 제정 추진을 유도·확산시켰다.

다섯째,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그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하였다. 2013년에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시, 전라북도 등 5개의 지방자치단체, 2014년에는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시, 울산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나.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전문용어 정비를 위한 기반 콘텐츠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과 전문용어 정비와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지원(감수, 회의 참석)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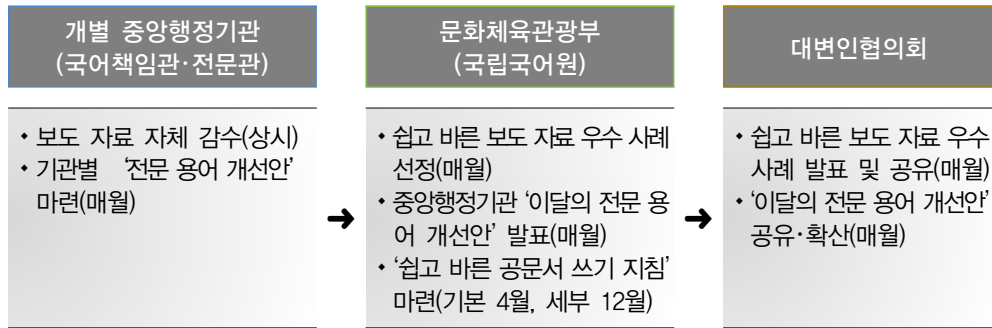
사회 각 방면의 전문용어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3개 이상의 기관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였다(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 용어 446개,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 용어 2,500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 용어 61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전문용어 목록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잘못된 전문용어의 유통으로 인한 소통의 효율성 저하를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용어 개선안 및 표준화 심의 결과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탑재하거나('14년 9월~12월에

총 1,154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287개, 국어심의회 순화분과위원회의 심의 용어 867개)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전문용어 6만 건을 탑재시킴으로써 표준화된 전문용어가 국민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분야의 전문용어(행정용어)를 표준화하여 전문용어의 소통성을 강화하였다. 312개의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고시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문서 결재 시스템에 표준화하거나 순화한 행정용어를 탑재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운동’의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개선 지침’, ‘순화어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개선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4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용어 개선안을 수집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심의하게 하여 표준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4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안한 전문용어 개선안 497건을 평가하여 표준안을 확정하였다.

〈표 3-9〉 전문용어 개선 상시 지원 체제



그리고 전문용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용어 표준화(ISO TC37)의 전문용어 정비 기준을 활용하여 전문용어를 정비하고, 국제표준화기구 한자특별위원회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다.(매년 2회씩)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는 한국 표준 규격(KS)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신규 표준 기술 규격 및 개정 표준 기술 규격에 포함되는 기술 용어를 검토해 줌으로써 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 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다. 언어 사용 문화 개선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대국민 홍보 행사를 기획하여 행정안전부에 한글날 공휴일 지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한글날 공휴일 바람 떡 돌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0월 9일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청소년 언어문화의 수준이 저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생 중심의 '우리말 가끔이단' 구성, 고등학생 대상의 '쉬운말 사랑패' 조직, '쉬운말 운동 누리집 (www.swiunmal.org)' 운영 등의 대학생과 청소년의 자발적인 언어 사용 문화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4.1. 수립 배경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류의 확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자녀 등 국내 외국인 주민('14년 1월 기준 약 157만 명, 행정자치부 『2014년도 외국인 주민 현황』)이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립국어원, 국외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3~'14년 한국어 보급을 통해 우리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국외 다양한 지역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확대하여 운영하며, 국내의

외국인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각 과제별 추진 배경과 사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종학당' 확대·운영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류의 확산,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고용 허가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상승 작용을 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취업, 한국 대학 및 대학원 유학, 한국 사회 정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에서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지역적 분포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지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나 대학 내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국외 현지의 일반인들도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의 수요층이 다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외 현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를 국외에 널리 확산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②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세종학당') 개발 운영
- ③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보급
- ④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⑤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 한국어 교육의 통합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국어 보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종학당 확대·운영을 위하여 과제의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단계적으로 증설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세종학당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표준 교육과정의 정착, 표준 교재 사용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세종학당에서는 이미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교육 모형의 변이형으로 세종학당 교육과정을 구축한 바 있으나 국외 현지의 일반인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세종학당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종학당 맞춤형 교육과정,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가 있다고 해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우므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우수 교원 파견, 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외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세종학당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어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 설립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세종학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종학당 운영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추진하였다.

나.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내외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현저히 증가되어 그 외연이 넓어진 데 비하여 기존의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아직 다양성이 부족하기에 학습자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 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즉,

국내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 요구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증가해 온 국내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지만, 학력 수준이 다양하고 지역 분포가 넓으며 한국어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국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한국어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과제의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 언어 요소인 어휘·문법·표현 항목 등을 조사, 수집하며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일이 이와 관련된다.

둘째,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원활하게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누리-세종학당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이 이와 관련된다.

셋째,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이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외 한국어교원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 오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교원 간의 교류가 부족하고 보수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변화·발전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고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어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가 마련된다면 이후 교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하여 국외 한국어교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외 현지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견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국외 교원들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교원들이 한국어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변화하는 한국어교육 소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생활종합상담실,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통해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빈도 주요 상담 내용·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국내외 여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누리·세종학당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 간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참석자 선정, 교육 내용 구성 면에서 체계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4.2. 추진 성과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의 주요 추진 사업은 '세종학당 확대·운영',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종학당 확대·운영

1) 세종학당 확대 지정·운영

세종학당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 세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관이다. 세계 한국어교육의 대표 기관으로서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에 의해 2012년 10월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따라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에 한국어교육 수요는 높으나 교육 시설이 취약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국외 여러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해 왔다. 신규 세종학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지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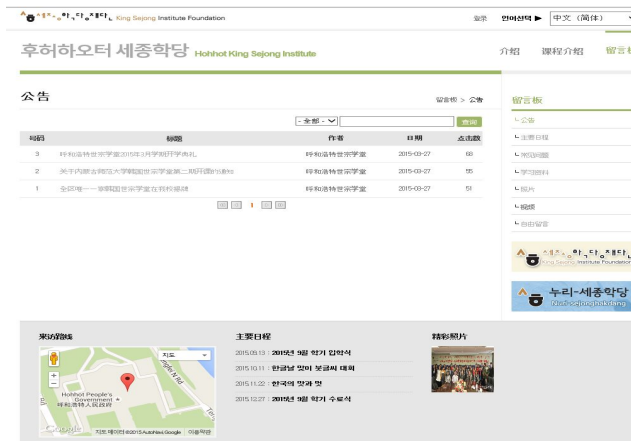
〈표 3-10〉 세종학당 지정 절차

①	지정심사 안내, 공고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재외공관을 통해 공고
②	지원 신청서 접수	◦ 재단 공식 이메일 접수
③	공관 의견 조회	◦ 신청 기관 지역 재외공관으로 의견 조사 협조 요청
④	1차 서류 심사 및 예비 후보 선정	◦ 공관 의견 및 1차 서류 심사를 통한 예비 후보 선정
⑤	현지 실사	◦ 예비 후보 기관 대상 현지 실사 실시
⑥	최종 심사 및 발표	◦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심사 및 선정
⑦	신규 운영자 교육	◦ 신규 학당 운영자 대상 세종학당 운영 교육
⑧	업무 위탁 체결	◦ 재단과 신규 지정 기관 간의 업무 위탁 체결

국내외 한국어 보급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예산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설립 방식 외에 기존의 한국문화원과 같은 한국어교육 기관도 '세종학당'으로 지정하여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를 활성화해 왔다. '13~'14년에는 외국 인력 교육(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 관광 및 한류 콘텐츠 홍보(한국관광공사), 정보 기술 교육 및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과 세종학당이 융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지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기존의 중국·동남아 중심에서 유럽, 미주, 중동 등의 지역으로 세종학당의 지정을 확대하였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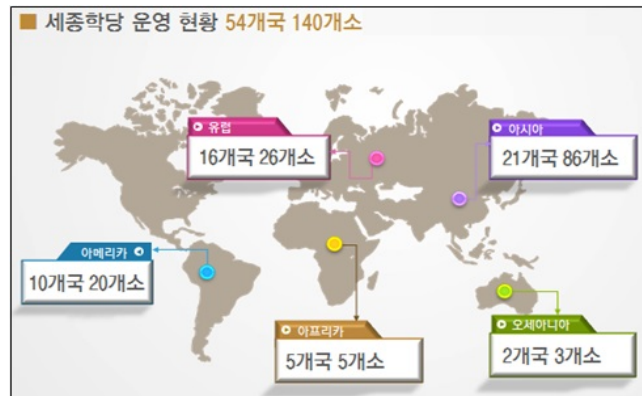
중국 후허하오터 세종학당 누리집

[그림 3-3] 2014년 신규 세종학당 누리집

이와 같은 세종학당의 단계적 설립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세종학당은 2012년 기준 43개국 90개소에서 2013년 52개국 120개소, 2014년 54개국 총 130개소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학습자 수도 2012년 28,793명에서 2013년 27,339명, 2014년 44,14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종학당의 지정 확대로 국외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5월 기준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은 <표 3-11>, [그림 3-4]와 같다.

<표 3-11> 대륙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15년 5월 기준)

대륙	일반 세종학당(수)	소개 (113개)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개 (27개)	합계 (140개)
아시아	네팔(1), 말레이시아(1), 몽골(3), 방글라데시(1), 베트남(8), 스리랑카(1), 아랍에미리트 연합(1), 우즈베키스탄(1), 이란(1), 인도(2), 인도네시아(2), 일본(2), 중국(26), 타이완(2), 카자흐스탄(3), 캄보디아(3), 키르기스스탄(2), 타지키스탄(2), 태국(3), 터키(5), 파키스탄(1), 필리핀(4)	75	베트남(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2), 카자흐스탄(1), 태국(1), 터키(1), 필리핀(1)	11	86개소 (21개국)
유럽	독일(2), 러시아(3), 리투아니아(1), 벨라루스(1), 불가리아(1), 스페인(1), 영국(1), 에스토니아(1), 우크라이나(1), 이탈리아(1), 체코(1), 포르투갈(1), 폴란드(1), 프랑스(2)	18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페인(1), 영국(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8	26개소 (16개국)
아메리카	과테말라(1), 멕시코(2), 미국(4), 브라질(2),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코스타리카(1), 콜롬비아(1)	15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5	20개소 (10개국)
아프리카	알제리(1), 짐바브웨(1), 케냐(1)	3	나이지리아(1), 이집트(1)	2	5개소 (5개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1), 호주(1)	2	호주(1)	1	3개소 (2개국)



[그림 3-4] 국가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15년 5월 기준)

2015년 5월 기준 113개소에 이르는 일반 세종학당(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제외)의 설립 현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국가별 일반 세종학당 설치 운영 현황('15년 5월)

연번	대륙	국가	세종학당명(설립기관)	소계	
1	아메리카	멕시코	테픽 세종학당(나야리트자치대학교)	2	
2			몬테레이 세종학당(누에보레온자치대학교-주멕시코한국문화원)		
3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종학당(코리안센터)	4	
4			오번 세종학당(오번대학교-계명대학교)		
5			아이오와시티 세종학당(아이오와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6			호놀룰루 세종학당(하와이주립대학교)		
7		브라질	상레오포우두 세종학당(유니시노스대학교-배재대학교)	2	
8			캄피나스 세종학당(캄피나스주립대학-울산대학교)		
9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세종학당(오르트대학교-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1	
10		칠레	산티아고 세종학당(디에고 포르탈레스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	1	
11		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2	
12			워털루 세종학당(워털루대학교 레니슨칼리지)		
13		코스타리카	산호세 세종학당(한국정보화진흥원 코스타리카국립기술대학 정보접근센터)	1	
14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아시아-이베로 문화재단·콜롬비아 국립경찰어학문화센터)	1	
15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세종학당(산카를로스국립대학교)	1	
16		아시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학당(세종한국언어교육원-한국산업인력공단)	1
17			몽골	울란바토르1 세종학당(울란바토르대학교)	3

연번	대륙	국가	세종학당명(설립기관)	소계
18			울진바토르2 세종학당(몽골국립대학교-공주대학교)	
19			울진바토르4 세종학당(후레정보통신대학교)	
20		방글라데시	다카 세종학당(방글라데시·한국기술훈련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1
21		베트남	달랏 세종학당(달랏대학교)	8
22			타이응우옌 세종학당(타이응우옌대학교-계명대학교)	
23			하노이1 세종학당(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24			하노이2 세종학당(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25			호찌민2 세종학당(호찌민사범교육대학교-주호찌민총영사관)	
26			호찌민3 세종학당(호찌민산업대학교-경운대학교)	
27			껀터 세종학당(껀터국립대학교-주호찌민대한민국총영사관)	
28			후에 세종학당(후에대학교-(사)비비비코리아)	
29		스리랑카	콜롬보1 세종학당(한글사랑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1
30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세종학당(자이드대학교)	1
3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타슈켄트세종한글학교-한국산업인력공단)	1
32		이란	테헤란 세종학당(테헤란세종학당운영위원회-주이란한국대사관)	1
33		인도	첸나이 세종학당(인코센타-상명대학교)	2
34			파트나 세종학당(인도국립공과대학교파트나-주인도한국문화원)	
35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세종학당(하사누딘대학교-배재대학교)	2
36			수라바야 세종학당(페트라크리스천대학교-동서대학교)	
37		일본	나고야 세종학당(한국관광공사 나고야지사 코리아플라자)	1
38		중국	다롄 세종학당(다롄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26
39			베이징1 세종학당(북경외국어대학교 사이버와 평생교육원)	
40			베이징2 세종학당(베이징어언대학-부산외국어대학교)	
41			상하이 세종학당(푸단대학교)	
42			선양 세종학당(선양항공항천대학교-송실대학교)	
43			시안 세종학당(서안외국어대학교 신서북배훈학원)	
44			연변1 세종학당(연변과학기술대학교)	
45			연변2 세종학당(연변대학교)	
46			옌타이 세종학당(루동대학교-남부대학교)	
47			우한 세종학당(화중과학기술대학교)	
48			웨이하이 세종학당(산둥대학교 위해분교)	
49			충칭 세종학당(사천외국어대학교-우송대학교)	
50			치치하얼 세종학당(치치하얼대학교-동신대학교)	
51			칭다오 세종학당(중국해양대학교)	
52			쿤밍 세종학당(윈난사범대학상학원-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53			톈진1 세종학당(톈진외국어대학교)	

연번	대륙	국가	세종학당명(설립기관)	소계
54			텐진2 세종학당(텐진공업대학-배재대학교)	
55			창사 세종학당(후난사범대학교-세명대학교)	
56			린이 세종학당(린이대학교-강남대학교)	
57			광저우 세종학당(광둥영남직업기술대학-울산대학교)	
58			스지장 세종학당(허베이과기대학-성신여자대학교)	
59			창춘 세종학당(지린화교외국어대학)	
60			청두 세종학당(쓰촨사범대학-연세대학교)	
61			하얼빈 세종학당(하얼빈사범대학교 대진한국센터)	
62			항저우 세종학당(저장관광대학교-호남대학교)	
63			후허하오터 세종학당(내몽고사범대학교 교류학원)	
64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세종학당(유라시아국립대학-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	3
65			탈디쿠르간 세종학당(제티수국립대학-알마티한국교육원)	
66			악토베 세종학당(악토베 바이쉴바대학-알마티한국교육원)	
67		김보디아	프놈펜1 세종학당(김보디아국립기술대학-한국산업인력공단)	3
68			프놈펜2 세종학당(김보디아 판나사스트라대학-한국산업기술대학)	
69			시엠레아프 세종학당(앙코르대학-대구대학교)	
70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세종학당(국립아리비예바대학-한국산업인력공단)	2
71			오쉬 세종학당(오쉬공과대학-비슈케크한국교육원)	
72		타이완	가오슝 세종학당(고웅시 한인회)	2
73			타이베이 세종학당(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코리아플라자)	
74		타지키스탄	두산베1 세종학당(타지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계명대학교)	2
75			두산베2 세종학당(타지키스탄국립중앙도서관-계명대학교)	
76		태국	방콕 세종학당(탐마삿대학-한국외국어대학)	3
77			마하사라캄 세종학당(마하사라캄대학-상명대학교)	
78			치앙마이 세종학당(치앙마이대학)	
79		터키	부르사 세종학당(앙카라대학 부르사 토메르-주터키 한국문화원)	5
80			앙카라 세종학당(앙카라대학 예셰히르 토메르-주터키 한국문화원)	
81			이stanbul 세종학당(앙카라대학 탁심 토메르-주터키 한국문화원)	
82			이즈미르 세종학당(앙카라대학 이즈미르 토메르-주터키 한국문화원)	
83			트라브존 세종학당(흑해공과대학-주터키 한국문화원)	
84		파키스탄	이슬라미바드 세종학당(국립외국어대학이슬라미바드-한국산업인력공단)	1
85		필리핀	카인타 세종학당(한국쉴마지도자훈련원)	4
86			세부 세종학당(원광글로벌교육센터)	

연번	대륙	국가	세종학당명(설립기관)	소계	
87			케손 세종학당(베네딕탄국제학교 국제어학센터)	1	
88			파사이 세종학당(장안한국어재단-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89			일본		마치다 세종학당(오비린대학교)
9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종학당(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코리아 플라자)	1	
91	아프리카	알제리	알제 세종학당(알제2대학교-배재대학교)	1	
92		짐바브웨	무타레 세종학당(아프리카대학교-배재대학교)	1	
93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아프리카사랑모임)	1	
94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종학당(에덴즈대학교)	1	
95		호주	시드니세종학당(매쿼리대학교-주시드니한국문화원)	1	
96	유럽	독일	본 세종학당(라이니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대학교 동양학 및 아시아 학 연구소)	2	
97			튀빙겐 세종학당(튀빙겐 에버하르트 카를스대학교)		
98		러시아	나훗카 세종학당(극동취업지원대학교-경동대학교)	3	
99			모스크바 세종학당(모스크바 원광교육센터-원광디지털대학교)		
100			울란우데 세종학당(부랴트국립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101		벨라루스	민스크 세종학당(벨라루스국립대학교)	1	
102		불가리아	소피아 세종학당(소피아대학교-주불가리아대사관)	1	
103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종학당(라스팔마스대학교)	1	
104		에스토니아	탈린 세종학당(탈린공과대학교)	1	
105		영국	런던 세종학당(런던대학교 SOAS)	1	
106		우크라이나	미콜리우 세종학당(페트로마힐라흐해주립대학교-경동대학교)	1	
107		이탈리아	베네치아 세종학당(베네치아 카 포스카리대학교)	1	
108		체코	프라하 세종학당(찰스대학교 철학대학)	1	
109		포르투갈	리스본 세종학당(신리스본대학교동양연구소)	1	
110		폴란드	포즈난 세종학당(이담미츠키에비치대학교 신언어학연구소)	1	
111		프랑스	파리 세종학당(한불언어문화연구소)	2	
112			라로셀 세종학당(라로셀대학교-경희대학교)		
113		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학당(미콜라스로메리스대학교-동서대학교)	1	
		5대륙	51개국		112

세종학당 신청 기관의 교육 시설, 교원, 교육과정 등 필수 자격 요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학당 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세종학당 확대라는 양적 목표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교원 확보, 전용 공간 및 시설 확충, 교수 학습 자료 지원

등 질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세종학당 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 제고

전 세계 세종학당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학당의 교육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따라 교재 및 교원용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한국어교원의 해외 파견, 세종학당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운영,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통한 교원 협력망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과정, 표준 교재 개발·보급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학당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12년), 이에 근거하여 2013년까지 세종학당의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 1~8』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교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13년, 2014년에는 『교원 지침서 1~8』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학당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당별 학습자 및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표준 교재 운영과 현지 특화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종학당은 『세종한국어 1~8』, 『세종한국어교원용 지침서 1~8』의 개발 완료를 통해 표준화된 교재를 바탕으로 세종학당 기본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13〉 세종학당 교육과정별 교재 현황

		세종학당 기본과정				세종학당 심화과정			
교육과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표준교재		세종1	세종2	세종3	세종4	세종5	세종6	세종7	세종8
								기관 선택	

세종학당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는 1~8권까지 출판을 완료하여 2013년 44개국 90개소 5,520부, 2014년 39개국 66개소 7,002부를 보급했다. 또한 『세종한국어』의 번역본(14년 영어, 중국어)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였다. 『세종한국어 1~8』과 『세종한국어교원용 지침서 1~8』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로서 현지 특성을 반영한 익힘책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역 내 학당 간 연계를 통해 2013년에는 영어권, 스페인어권, 2014년에는 몽골어권·베트남어권 익힘책을 개발하였다. 익힘책의 표준 교재는 현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연습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준교재 (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교원용 지침서

[그림 3-5] 세종학당 표준 교재 및 교원용 지침서

한편,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세종학당 중에는 전문 교원이 부족하여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종학당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수 한국어교원 파견은 2012년 11개국 14개소 20명에서 2013년 15개국 22개소 24명, 2014년 18개국 33개소 39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사업은 국내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세종학당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 교원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외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갖춘 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세종학당에서는 경력은 있으나 한국어교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국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 기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온라인 과정과 국내 초청 집합 교육을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2013년에 57명, 2014년에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세종학당의 교원이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교원의 유자격화를 위한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 또는 기관별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원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매년 7월에 세종학당 운영자, 교원 등 세계 한국어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협력망 구축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자들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이다. 2013년에는 41개국 285명, 2014년에는 47개국 230명이 참가하여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세종학당 관련자들이 학당 운영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공유하고, 교육기관 및 교육자 간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이 행사는, 세종학당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세종학당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세종학당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세종학당 구성원들이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하려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14년)

또한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우수 학습자 초청 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10월에 43개국 172명, 2014년 10월에 47개국 119명의 우수 학습자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문화 연수를 지원하되, 학습형 문화 연수와 체험형 문화 연수를 실시하여 문화 연수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문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세종학당 교육에 대한 국외 현지 학습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운영 평가 및 관리 체계 정비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 개정(12. 5. 23. 공포)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중국의 '공자학원 총부'와 같이 전 세계 세종학당의 본부로서 교육과정, 표준 교재 지원, 교원 파견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대표 교육 기관으로서 '세종학당'의 브랜드를 강화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 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세종학당을 '한국어 세계화, 한국문화 소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종학당의 운영 평가 및 관리 체계 정비는 총괄 지원 기구인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의 전문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

이다. 재단은 세종학당 운영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에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를 개정하여 세종학당 교육과 일반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세종학당 운영의 위탁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정산 위탁·교육을 통해 세종학당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세종학당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당 교육 시설 표준 모형 개발 설계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학당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지역적 파급 효과가 큰 학당을 선정하여 교육 환경 시설의 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세종학당 지원 사업의 신청, 검토, 교부, 월별 운영보고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문화원, 재외공관과 협조 체계를 갖추어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탄력적으로 연계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 간 협업 추진 사례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특수형 세종학당'을 비롯하여 '13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업형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지정·운영하였으며, '구글 코리아'와의 한국어교육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협약('12. 10. 24.)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국기원, 한국방송공사(KBS), 아리랑 티브이(TV) 등 국내 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국내 문화 자원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외 세종학당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에는 세종학당재단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상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재단에서는 기업의 후원을 통해 세종학당에 대한 교재와 교육 자료 지원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외 홍보뿐만 아니라 국내 홍보를 통해 세종학당재단의 공익성을 널리 알리고 일반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세종학당 재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 대상자의 교수 학습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언어권별, 수준별로 높아지는 맞춤형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교육과정을 내실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언어 요소인 어휘·문법·표현 교육 항목의 등급별 내용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2013~2014년에는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2~3단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2~3단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초급에 이어 중·고급에 이르기까지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언어 요소의 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연구로 판단된다.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자료로서 세종학당의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 5~8』, 『교원용 지침서 1~8』의 개발을 완료한 것은 세종학당 한국어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이를 통해 세종학당의 한국어 기본과정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올바른 발음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 방송을 개발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방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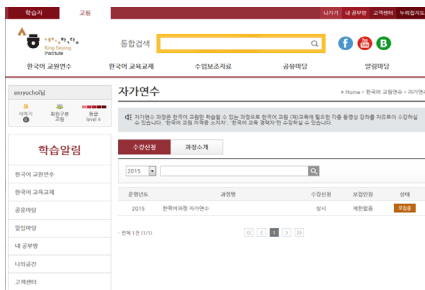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변화된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범용 교재 중심의 교육자료 개발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한국어교육과정과 학습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어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교재,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한국어교육 상황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개발 이후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교육 자료를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처별 유사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

만, 앞으로 한국어교육이 전 세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가 부족한 지역까지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발된 교재들의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한국어』와 같은 표준(범용)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현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 어휘·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와 같이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원 및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콘텐츠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은 세종학당 구성원은 물론이고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어디에서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이다. 따라서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콘텐츠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누리-세종학당에서 추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콘텐츠의 확충이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관리 및 연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75차 시의 온라인 자가 연수 과정의 연중 운영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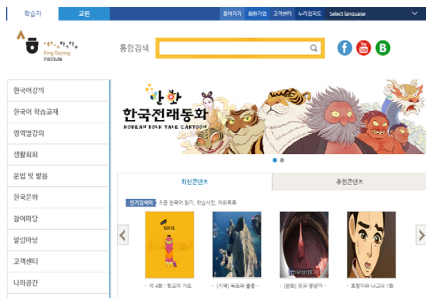
한국어교원 자가 연수 화면



75차 시 제공

[그림 3-7] 세종학당 한국어교원 자가 연수 과정 화면

또한, 세종학당의 온라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를 확대하고 이를 언어권별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리-세종학당의 이용도를 높였다.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 사용자가 급증하고 모바일 환경 접속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누리-세종학당’ 화면



모바일 학습체계 화면(한국어강좌)

[그림 3-8] 온라인·모바일 ‘누리-세종학당’ 화면

누리 세종학당을 통해 공급된 온라인 콘텐츠로서 대표적인 것은 세종학당의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강좌이다. 이 콘텐츠는 5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학습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표 3-14>는 지금까지 개발된 『세종한국어』, 『세종한국문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현황이다.

<표 3-14> 『세종한국어』, 『세종한국문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 현황6)

연도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강좌	언어
2011	- 세종한국어 1, 2 예복습용 콘텐츠 개발 - 세종한국문화 1 개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2012	- 세종한국어 3, 4 자가 학습용 콘텐츠 개발 - 세종한국문화 2 개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2013	- 세종한국어 5, 6 자가 학습용 콘텐츠 개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2014	- 세종한국어 7, 8 자가 학습용 콘텐츠 개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6) 2011년에 개발된 세종한국어 1, 2 과정은 예·복습용 콘텐츠로 개발되었기에 자가 학습용 콘텐츠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2015년에는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종한국어 1, 2 자가 학습용 콘텐츠 개발에 착수하였다. 새로 개발되는 세종한국어 1, 2 자가 학습용 콘텐츠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개발할 예정이다.



세종한국어 6 온라인 강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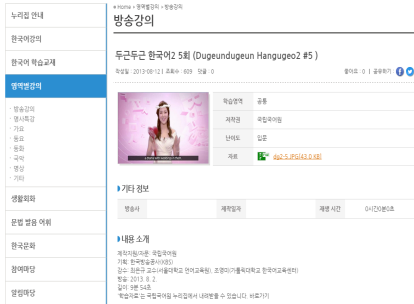


세종한국문화 2 온라인 강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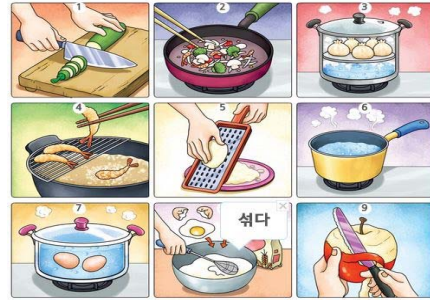
[그림 3-9] 세종한국어 6, 세종한국문화 2 온라인 강좌 화면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두근두근 한국어 1~4’(‘12년~‘14년 국립국어원)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누리-세종학당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 콘텐츠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 * 팟파핑 코리안 발음편 제작(‘13년)
- * 팟파핑 코리안 회화편 제작(‘14년)
- * 한국문화 학습만화 콘텐츠 제작(‘14년, 총 102화, 5개 언어)
- * 클립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 및 학습자료 제작(‘14년, 총 40편, 6개 언어)
- * 그림으로 보는 한국어 콘텐츠 제작(‘14년, 총 50편, 6개 언어)
- * 한국문화 100 다국어 동영상 자막 제공(‘13~‘14년, 총 76편, 4개 언어 제공)



두근두근한국어 화면



그림으로 보는 한국어 화면



팍파핑 코리안



한국문화 학습만화 콘텐츠

[그림 3-10] 멀티미디어 한국어교육 자료('13년~'14년)

누리-세종학당은 2014년 국적 입력자 기준으로 총 152개국의 학습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학당이 설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해외 학습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어교육 수요는 높으나 온라인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현실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전 세계에서 누리-세종학당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누리-세종학당의 접근성과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국내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건의 이민자들에게는 방문 교육 지도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대상 방문 교육 지도사들 중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3급) 취득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2014년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한국어 방문 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방문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해 온 사업이지만, 한국어교원 교육 및 교육 자료 개발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국립국어원에서 그 내용을 통합하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처 간 예산 및 행정력의 중복 투입을 피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다국어판(베트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일본어) 교육 자료를 디브이디(DVD) 교재로 개발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학습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자가 학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도 자유롭게 시간을 내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의 한국어교육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11]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화면

한국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 통합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대상의 집합 교육, 방문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학습자 집단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부(KSL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내용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로는 여러 부처 간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내용적 통합을 추진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한국어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1)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어교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교원들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파견 지역을 선정하고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국외 연수회를 개최하는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13년에는 총 5개국에 11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7개국에 20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3-15>은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국가 및 도시의 현황이다.

〈표 3-15〉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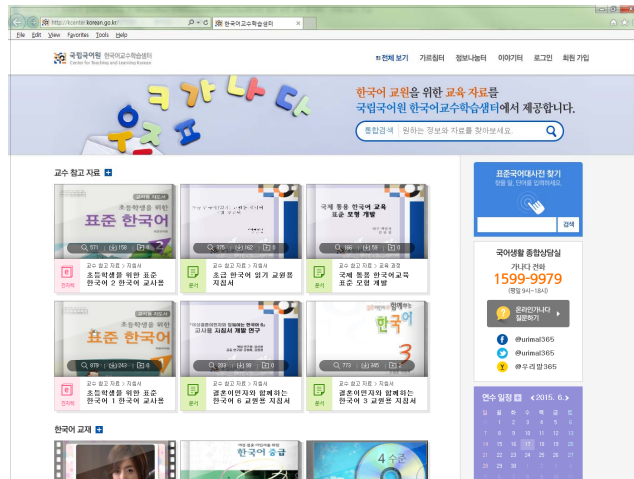
연도	국가(지역)	인원
2013	호주(시드니), 미국(하와이), 일본(오사카/동경), 몽골(울란바토르), 중국(북경)	11명
2014	중국(충칭/옌벤), 프랑스(파리/리옹), 미국(인디애나폴리스/하와이), 일본(오사카/후쿠오카/도쿄), 베트남(호찌민/하노이), 인도(뉴델리), 필리핀(마닐라)	20명

이 사업은 사전에 현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언어권 학습자들의 특성과 현지 요구를 반영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전문 교원을 선정하여 파견하였기에 현지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2013년 6월에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국외 한국어교원 연수회의 경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84%에 달하는 등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은 전반적으로 현지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외에는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써 국외 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지역별로 연차적·단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원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교육 상담 및 한국어교육 소식 소개

한국어교원들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국외에서는 한국어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문 서적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으로서 온라인, 전화, 누리소통망 서비스와 연계된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한국어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어 교수 학습에 관한 상담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한국어교원의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한국어 관련 문의 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담 장치의 제공을 요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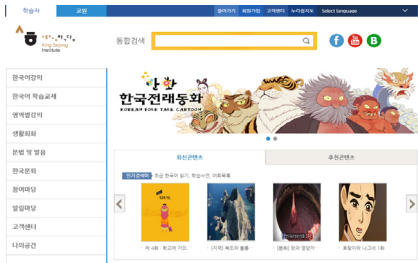


[그림 3-12] 한국어교육학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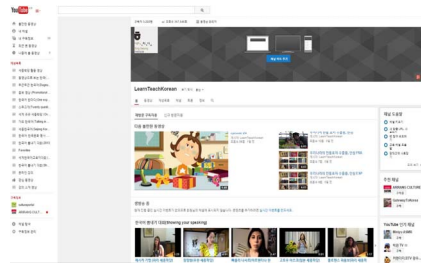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한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 및 상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빈도 주요 상담 사례집을 질의응답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한국어교원의 질문 및 상담 사례는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그것을 유형화한다면 그 자체로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구축 및 공유 체계 수립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hadang.org)은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수요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학당 유튜브 공식 채널, 세종학당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을 포함하여 온라인 소통 창구를 4개 마련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학습자 및 교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hadang.org)은 11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 교원, 세종학당 관리자에게 필요한 전문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쌍방향으로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기능을 강화하였다. 누리·세종학당 게시글의 내용을 누리소통망 서비스로 퍼갈 수 있는 기능, 게시글 ‘좋아요’ 나타내기 기능 등은 소통 기능을 강화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누리-세종학당' 화면



세종학당 유튜브 화면



세종학당 페이스북 화면



세종학당 블로그 화면

[그림 3-13] 세종학당의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

이와 같은 누리-세종학당의 성능 개선 및 강화는 기존 누리-세종학당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한 결과이다. 더욱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학습자와 교원 페이지를 분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의 학습 진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고 국가 표준인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GCDN, Global Contents Delivery Network)의 활용을 통해 보다 빠르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사용자 접속률이 2013년 41%에서 2014년 51%로 10%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과 교육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므로, 누리-세종학당의 모바일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누리-세종학당 웹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원 및 학습자들의 활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어 교수 학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일반 교육 기관 공동 연수회로 확대·운영되었다. 한국어교원들은 다양한 변인을 가진 여러 국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반 교육 기관 한국어교원들에게도 공식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참석자를 결정하고, 참석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희망 교육 내용을 조사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13년, '14년 한국어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는 각각 경력 교원과 신입 교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원들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원 연수회에서 일방적인 전달형 강의는 선호도가 낮고 이해도도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한국어교육 현장 사례 발표, 분임별 토론형 연수회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교원 연수회를 통해 신입 교원 및 경력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어교원에게 경력 주기에 따라 적절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어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어교원이 담당하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다양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효율적인 교원 재교육을 위해서는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에 인적 정보,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어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의 경력, 교육 환경, 학습자의 특성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5.1. 수립 배경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어 정보화 과제에서는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확대 운영,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제별 계획 수립 배경과 사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글과 국어 자료의 시대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의 항구적인 보존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 국어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을 종합하고, 정비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서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 문화유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한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이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관을 확보하고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글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에 따라 문화 콘텐츠로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글박물관을 개관하고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과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런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한글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한글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전시 자료를 확보하고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고, 한글문화 자원을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둘째,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내실 있는 한글 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한글을 활용한 문화 활동에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글 연계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한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한국어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한글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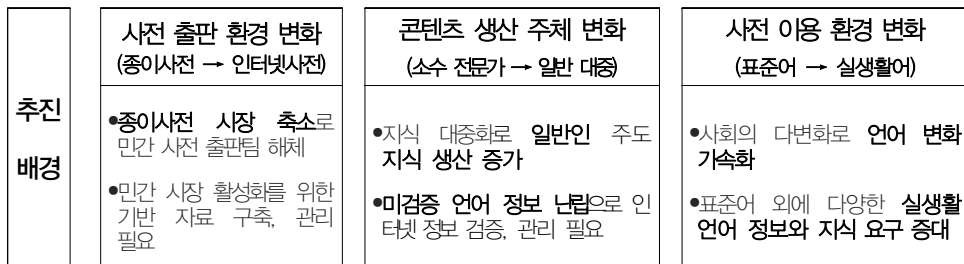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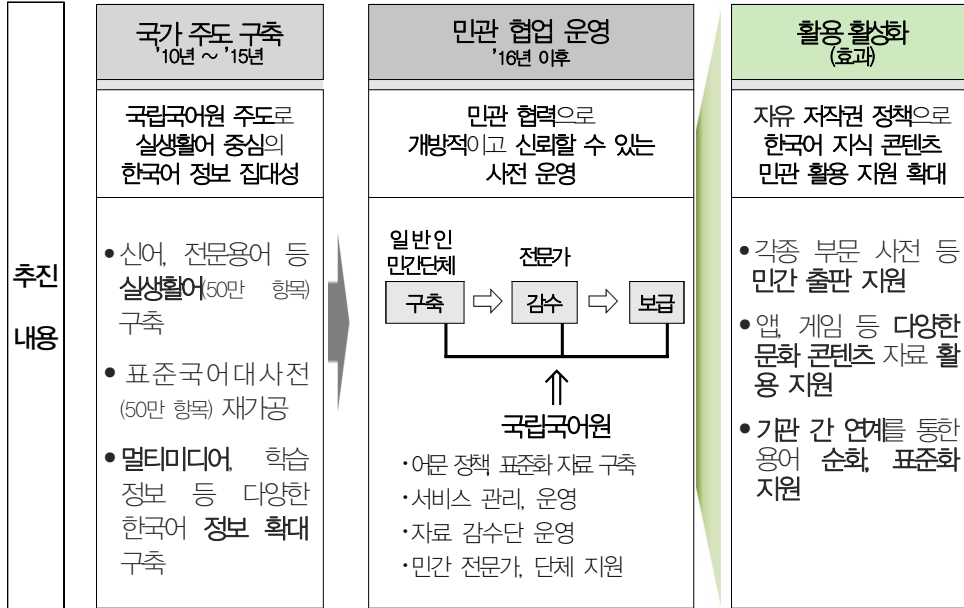
나.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확대 운영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50만 어휘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2008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전임과 동시에 믿을 만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검색의 편의성까지 더해서 언중들의 신뢰도가 높고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 국어사전을 대표하는 사전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어휘의 뜻풀이가 어렵거나 순환적이거나 비체계적인 풀이로 되어 있고, 표준어 중심으로 된 규범 지향적인 사전인 탓에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뜻풀이를 쉽고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풀이하고, 실생활에서 요청되는 국어 지식 및 국어 문화 관련 정보를 집대성하고, 검색의 편의성을 더욱 높인 사전 편찬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 사이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사전 편찬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 양상을 파악하고 언중들에게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생활의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사전을 편찬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의 발전 및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의 언어 능력 향상과 국어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을 2010년부터 시작하였고, 2013년과 2014년도에도 사전 편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은 다음과 같은 추진 배경과 목표, 임무를 가지고서 전개된 사업이다.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어 지식 콘텐츠로 문화 융성 기반 강화**



[그림 3-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국립국어원이 기획·총괄하여 부문별로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의 담당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6〉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참여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진행 총괄, 사전편찬추진위원회·국어심의회 운영, 부처 간 협력 사업 추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결과 통보, 자료 협조
국어심의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최종 검토, 자문
사전편찬추진위원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검토, 자문
국립국어원	사업 실무 총괄, 기본계획 수립,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실무추진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작업 수행(직접 수행, 용역 등)
민간단체, 관련 학계	어휘 수집, 분류 등 관련 작업 진행
산업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설계, 구축

이런 흐름에서 2013년~2014년에는 과제별 세부 목표를 한국어 지식 정보의 수집과 관리와 제공을 위해 상시적인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우리말 사전의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언어 자원을 상시 관찰하고 수집하여 실시간 자료를 획득하고 자료의 현행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을 통하여 신어 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시간 언어 자료를 얻고 자료를 현행화하였다. 둘째, 개방적 편찬 체계 운영을 위한 인터넷 기반 언어 지식 검증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업 지원 시스템,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분류 및 검증 지원 시스템, 일반인 편찬 지원 체계 등의 개발 사업을 전개하였다. 셋째, 표준어, 방언, 전문용어 등 사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활용어와 전문용어 등의 신규 자료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이미 구축된 자료는 표현·표기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용 다국어 사전을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5개 언어로 된 다국어사전을 편찬하였고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2)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

오늘날의 한국어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예전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의 다양화

분화로 인하여 각 분야에서 새로이 쓰이는 말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언중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유통됨으로써 다양한 새로운 말들과 여러 변종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역동적인 상황 속의 한국어의 모습을 자세히 알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과제별 세부 목표를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춘 말뭉치 등의 언어 정보 자원을 구축하여 유통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문자코드를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미래형 한국어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시 말뭉치와 분석 말뭉치의 의미를 분석하고, 개념 어휘망을 구축하며, 언어 자원 검증-평가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둘째, 한국어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어 자원을 관리하고 공유하고 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 역사 정보, 학습용 콘텐츠를 구축하고, 한국어 정보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소수사용 한국어 언어 자원을 구축하였다. 셋째, 문자코드 표준화 등 언어 자원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자 자료를 정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3)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

한국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의 강화로 인한 국내외의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정보화하여 구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학습용 도구를 개발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과제별 세부 목표를 한국어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하였다. 첫째,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위한 기초 언어 자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한국어 이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기초사전 표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삽화,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로 구축하였다. 둘째, 소수자와 외국인용 한국어 교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한국어 교수학습센터를 구축하여 한국어교원들의 한국어교육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소수자, 외국인용 한국어 학습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둔 언어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사의 대상으로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지역어와 민족생활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어사용의 모습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어와 민족생활어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2011년 1월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 4단계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어의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는 2010년도의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이 지역어가 지니는 역사 문화적 가치 및 문화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데 81.6%가 찬성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과제별 세부 목표를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지역어 자료 조사 및 구축을 통한 언어문화 자료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어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어 문화유산 자료로 구축하고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어 보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어의 급속한 소멸을 막고자 하였다. 둘째, 지역어 경연대회를 지역 축제로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여러 지역의 언어문화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별 행사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어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등 지역어의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어 진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5.2. 추진 성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과 국어 정보화 분야의 주요 추진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는 한글박물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내실화,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 주간 행사 개최를 추진하였다. 둘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확대 운영에서는 신어 조사 및 생활용어 구축, ‘협업 지원 시스템, 어휘 분석 시스템, 분류 및 검증 지원 시스템, 일반인 편찬 지원 체계’의 개발, 전문용어의 구축, 전문용어 분류 체계 재설정과 재분류, 관련어 정비, 외래어 및 순화어 정보 정비, 사전 구축 자료의 표현·표기 감수, 다국어사전의 확대 구축,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추가 개발을 추진하였다. 셋째,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에서는 언어 정보 자원 통합 연계 체제 구축,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 한국어 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 문자 자료의 정제와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구축, 온라인 교수 학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에서는 지역어 구술 자료 전사,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어 자료 구축, 지역 언어문화 행사 개최, 지역별 언어문화 행사 모형의 개발·보급, 지역어 활용 상품 개발 지원, 지역어 교재의 개발·보급을 추진하였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1) 한글박물관의 성공적 개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중심 기관의 역할을 할 한글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2010년 3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에 들어가고, 2011년 7월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 사이, 총면적 11,322㎡)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8월 30일에 건립 공사를 준공하였다.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한 2013년 5월에 개관위원회를 발족하여 개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며, 2014년 2월 한글박물관 직제가 확정됨으로써 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0월 8일에 개관식을 하고 10월 9일에 정식으로 개관함으로써 추진 계획에 맞게 정상대로 개관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그림 3-15] 국립한글박물관 전경

한글박물관 건립은 2009년 12월에 건립에 관한 업무 보고를 한 이래로 개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한글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만을 짓고 조직만을 갖추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2012년 2월에는 전시 콘텐츠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한글박물관 종합 발전 방안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월에는 홍윤표 전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와 문화예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관위원회를 발족하여 세 차례의 회의를 하고 2014년에도 세 차례의 회의를 더 하는 등, 개관 준비를 차곡 차곡 진행하였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적 문화 콘텐츠인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 공간으로서의 한글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자료

수집,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등에 관한 한글박물관의 핵심 기능에 대하여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것을 한글박물관 개관 준비 과정에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개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4년 10월 8일 개관식부터 12월 31일까지 한글박물관을 찾은 사람은 129,124명(목표치는 129,000명)에 달하며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각종 언론사에서 개관 관련 보도를 400여 건이나 내보낸 바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81점(목표치는 69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는 등, 한글박물관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글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철저한 준비와 시의적절한 대응에 의해 성공적으로 개관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관점에서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한글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박물관 개관을 준비함으로써 한글박물관이 동적인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 한글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내실화

한글박물관은 성공적인 개관도 중요하지만 활발하고 알차게 운영을 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전시·체험 콘텐츠의 구축,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 및 제공, 각종 연구 모임 및 학술 행사 개최와 지원, 한글과 연계한 교육 및 문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시 콘텐츠 및 체험 콘텐츠 구축에서는 ‘한글이 걸어온 길’과 같은 상설 전시와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와 같은 기획 전시를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한글을 접할 수 있도록 한글놀이터를 설치하고 외국인들이 쉽게 한글을 배워 보도록 한 한글배움터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한글박물관을 찾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을 담은 한글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7〉 국립한글박물관 주요 공간

공간	기능
 <p>상설 전시실(2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전시에서는 1443년(세종 25년)에 완성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한글의 확산 과정을 교육·종교·생활·예술·인쇄 등의 주제로 보여 준다. • 또한 다양한 한글 자료와 영상·체험 자료를 제공하여 한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기획 전시실(3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4회 기획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글문화를 소개하여 한글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고 아울러 한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각 전시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며 크게 두 가지 주제-한글의 언어·문자적 가치와 한글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p>한글배움터(3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 등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체험 학습 공간이다. 한글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의 종류와 자·모음 글자를 모아쓰는 원리를 발음과 함께 익히고, 한글을 통해 한국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한글놀이터(3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한글이 가진 힘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 공간이다. '쉬운 한글', '예쁜 한글', '한글 동산'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들이 오감을 통해 한글의 구성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한글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글 자료 10,509점(구입 2,781점, 기증 7,728점)을 수집하고 한글박물관 『소장 자료 총서』를 발간하여 사람들의 한글 자료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글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글문화 학술 모임을 2회 개최하고 국제학술대회를 1회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활발히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한글과 연계한 교육·문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한글의 가치를 공유

하고 확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교사,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6종을 47회 운영하여 모두 1,190여 명이 참여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는 연극, 음악극, 동화 구연 등의 문화행사 4종을 31회 개최하여 모두 3,433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획 전시와 연계하여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10회 개최하고, 작가와의 대화를 7회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에 밀착형, 이용자 맞춤형 교육 및 문화 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 주간 행사 개최

한글이 우리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한글을 직접 접하고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 주간 행사를 2013년과 2014년에 각 1회씩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한글아 놀자’라는 주제로 한글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날 경축식을 지원하고, ‘한글 꿈, 한글 꽃’ 전시회 개최, 한글 서예전 개최, 집현전 학술대회 개최, ‘한글을 노래하다’, ‘한글로 깨어나다’ 등의 공연 개최, ‘세계로 피어나는 한글’, ‘한글 평화를 말하다’ 등의 전시회 개최, ‘한글 놀이터’, ‘한글 옷이 날개’, ‘한글 휘호 대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거나 개최하였다. 또한 한글 발전과 한글 학습에 성과를 보인, 한글 발전 유공자와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2014년에는 ‘한글,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한글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 꾸밈전’, 한국의 넋 한글, 아름다운 우리 한글 등의 전시회를 열고, 궁중무용, 한글 반포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진 한글문화큰잔치 전야제를 열고, ‘우리 소리 우리 몸짓’, ‘한글의 꿈, 한글로 피어나다’ 등의 공연을 개최하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한글 창작 뮤지컬 공연을 지원하거나 개최하였으며, 한글 발전과 한글 학습에 성과를 보인, 한글 발전 유공자와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격려하였다. 이와 같은 행사 지원과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글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이고 한글과 한국어가 우리 국민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16] 한글주간 행사, 전시 사진

이처럼 세계인이 한글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가치를 느껴봄으로써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내실 있는 준비와 운영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언어정보 자원 통합 관리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확대 운영

(1) 언어 자원의 상시 관찰 및 수집으로 실시간 자료를 획득하고 자료의 현행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사업을 시작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실제 언어 자원을 관찰하여 2013년~2014년에도 신어와 생활용어 자료를 조사·구축하였다. 신어는 2013년에는 476항목, 2014년에는 334항목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시스템에 구축하면서 개발해 둔 자동 신어 조사기를 활용하여 조사하

여 모두 810항목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구축하였으며, 생활용어는 2013년에 5,112항목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실시간 언어 자료를 획득하고 사전을 현행화 작업이 추진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생활 사용 어휘의 개수가 더욱 늘어 언중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 새롭게 표준어로 지정된 ‘빠지다’ 등의 말들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하여 집필하여 추가하고, 뜻풀이 등 미비한 사전 정보를 분기별로 보완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전 이용률을 제고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월평균 이용 횟수가 2013년도에는 244,000건으로 목표 대비 124%, 2014년에는 283,000건으로 목표 대비 12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사전 정보의 정확성, 신뢰도를 높이고 언중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를 구축하고 보완하고, 『표준국어대사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언어 자원의 현행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국어사전이 우리 국민의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도 중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사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료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사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개방적 편찬 체제 운영을 위한 인터넷 기반 언어 지식 검증 체계 마련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은 협업 지원 시스템 및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분류 및 검증 지원 시스템 개발, 일반인 편찬 지원 체계 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2013년에 협업 지원 시스템 및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4년에 분류 및 검증 지원시스템, 일반인 편찬 지원 체계 개발함으로써,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 추진의 결과로 언어 지식 관리 협업 지원 시스템 및 일반인 편찬 작업 지원 시스템 등이 개발되어 개방적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사전 편찬에서 벗어나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표준어 이외의 실생활 언어의 경우, 언중과 힘을 합하여 실시간으로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 지향하는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준어, 전문용어 등의 사전 콘텐츠의 지속적 구축

언어의 모습을 담는 사전은 실제 언어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서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11개 분야의 전문용어 구축, 전문용어의 분류 체계 재설정과 그에 따른 용어 재분류 작업, 관련어 정비, 외래어 및 순화어 정보 정비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18〉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콘텐츠 구축 실적('13년~'14년)

• 전문용어 11분야(환경, 패션, 역사, 언어, 문학, 운동, 건축, 건설, 선박, 항공, 우주통신) 61,447항목 구축('13년)
• 전문용어 분류 체계 재설정 및 403,521항목 재분류('13년 202,601항목, '14년 200,920항목)
• 관련어 80,090항목 정비 구축('13년 30,000항목, '14년 50,090항목)
• 교육용 규범 정보 구축('13년 500항목, '14년 20,230항목)
• 외래어 및 순화어 정보 정비 구축('13년 인명 12,000항목 정비, 순화어 정보 15,000항목 등록, 외래어 심의 정보 25,000항목 등록)
• 개방형 사전 구축 자료 표현·표기 감수('14년 전문용어 18.3만 항목, 한국어기초사전 2.7만 항목 감수)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대체로 목표한 바에 따라서 원활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전문용어가 신규로 6만 여회 이상을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전문용어 분류 체계를 재설정하고 실제 구축되어 있는 전문용어를 재분류함으로써 전문용어의 틀을 정비하였다. 이처럼 전문용어를 신규로 구축할 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를 손보고 재분류한 것은 사전에 올라 있는 말에서 전문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에서도 전문용어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용 규범 정보를 구축하여 언중들로 하여금 규범과 관련한 자세한 해설을 사전을 통해서 쉽게 접하고 규범에 관한 이해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규범과 관련한 정보는 외래어 및 순화어에서도 중요하게 요청되는 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외래어 및

순화어 정보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들 어휘에 관한 규범과 관련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언중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어휘가 다른 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여 주기 위한 관련어 정비 사업도 2013년~201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이 어떤 어휘 자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제시되어 있는 관련어에 관련한 정보를 클릭 하나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어휘를 어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그 어휘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나 방언 자료는 신규로 더 이상 구축되지 못했다. 지역어를 조사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반적인 노력에 비추어 보면 이전의 방언 자료 조사에서 얻은 성과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사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신규로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구축된 자료의 표현·표기 감수 작업 등이 목표한 바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콘텐츠 구축 및 정비도 추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전에 새로 들어갈 자료를 구축하여 사전의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와 같은 표현·표기 감수 작업은 사전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2013년도에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구축에서 자료 구축의 편협성, 포절 의심 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기구축 자료의 품질에 대한 외부 지적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선을 위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 감수단을 활용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교정과 교열을 행하고, 감수를 추진함으로써 사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자료에서 보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자 한 점은 시의적절한 판단이자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전의 신뢰도 향상과 질적인 향상에 인력과 자금을 투입한 것은 양적인 팽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개선 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182,900항목의 표현·표기를 감수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한국어 학습용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도 마찬가지로 27,000항목의 표현·표기를 감수하였다.

이런 사업 추진은 국가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신뢰성 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품질 확보·강화와 저작권 분쟁 요소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점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저작권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사전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 구축한 콘텐츠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운영했다는 면에서 개방적인 특색을 지닌다. 즉 국가가 집대성하여 구축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을 두지 않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운영 방침은 그간 상업적인 이유로 민간에서 국어사전을 발행하거나 구축하는 일이 몹시 어려워 새로운 콘텐츠의 확보가 어려웠던 현실에서, 국가가 구축한 사전 콘텐츠가 새로운 사전 콘텐츠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을 제공한다면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2차, 3차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부문별 맞춤형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활용한다면 국가 언어 지식을 모두가 공유할 뿐만 아니라 언중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한국어 학습자용 “다국어사전” 확장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찬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용 “다국어 사전”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1단계 사업에서 5개 언어로 번역하여 편찬된 이래, 또 다른 5개 언어로 편찬하는 사업 역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수행되었다. 2013년~2014년에는 영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대상으로 하여 각 언어당 34,800항목의 다국어 사전을 추가로 구축하여 다국어사전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그 결과 모두 17만 4천 항목의 대역어가 구축되었다. 그리

고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4개 국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따라서 계획한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하여 “다국어사전”은 모두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구축이 되고, 이들 언어에 따라서 각각 검색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본래 2단계 사업에서 번역 대상으로 선정했던 언어는 힌디어, 터키어, 아랍어, 스페인어, 크메르어였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의 수요, 학습자의 요구 및 전문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 언어를 아랍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변경하여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이들 언어를 매개로 하여 언어생활을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정보 제공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며, 이들 언어의 사용자가 많고 사용 지역이 넓어 앞으로 이들 언어로 사전을 구축할 경우 앞으로의 확장성에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요구 상황의 변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기도 하고 다국어 사전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글의 위상 변화 및 한글에 대한 국제적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전 구축과 관련한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어기초사전”의 번역을 통하여 구축된 “다국어사전”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구축된 자료가 정확하고도 언어별 화자의 직관에 잘 부합하는 형태로 번역되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수와 교열·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 어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언어 정보 자원 축적 및 확산

(1) 미래형 한국어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미래형 한국어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언어 정보 자원 통합 연계 체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언어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언어 정보 나눔터

(<http://ithub.korean.go.kr>)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종 말뭉치’의 검색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성과를 볼 때 언어 정보 자원 통합 연계 체제 구축, 언어 정보 나눔터의 성공적 개설과 운영, 말뭉치 검색 기능 강화가 애초의 목표대로 이루어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다.

이처럼 언어 정보 자원의 축적 및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어 정보 자원에 대한 검색 수요와 활용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원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것은 수요에 부응하여야 그 활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이라 판단된다. 사업의 결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언어 정보 나눔터(<http://ithub.korean.go.kr>)는 언어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사용자들이 단순히 사용자로만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언어 정보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원천 자료를 2차, 3차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의 결과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림 3-17] 언어 정보 나눔터(<http://ithub.korean.go.kr>)

언어 정보 자원 통합 연계 체제 구축 사업과 아울러, 국어 정보 처리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매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를 2013년에는 국민대에서 열고 2014년에는 강원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또한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진 대회에는 2013년에는 16개 팀이, 2014년에는 34개 팀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는 계획된 목표에 비하여 각각 107% 및 111%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이 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는 그간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연구 인력들에게 좋은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 대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좋은 취지를 더욱 살리고 국어 정보 처리에 관한 저변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대회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관련 학술 및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어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시스템 구축

한국어 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디지털 한글 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한글, 장터를 점령하다’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에 개최하였고, 어린이용 한국어교육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로 4,177문제를 구축·개발하였고, 세종 역사 자료 말뭉치에 있는 15~16세기 국어 역사 자료를 정제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업은 모두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사업을 통해 한국어 정보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글, 장터를 점령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디지털 한글 박물관 특별 기획전은 일반인에게 고전소설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활용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리고 어린이용 한국어교육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구축한 것은 게임을 통해 국어 및 한국어교육 기능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능성 게임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익숙한 어린이들과 청소년

년들에게, 게임을 통해 한글 교육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 및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세종 역사 자료 말뭉치를 정제하는 사업은 국어사 연구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건”이나 언어 정보 나눔터 등을 통하여 국어의 역사적 정보를 검색하여 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활용도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언어 자원의 표준화의 지속적인 추진

언어 자원의 표준화를 위해서 문자 자료를 정제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표준화 기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대법원 인명용 한자 및 한자음 정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2013년 문자 자료 정제 및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는 제40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IRG) 회의(홍콩)에 참석하였고, 2014년 문자 자료 정제 및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는 제42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 회의(중국)와 제43차 국제한자특별전문위원회 회의(미국)에 참석하여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한자 검토 관련 사업으로는 2013년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검토(261자)를 하였으며, 2014년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검토(2,592자)를 통하여 한자와 한자음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듯 언어 자원의 표준화 및 기구에 꾸준히 참여하여 문자 코드 및 한자 등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은 언어 자원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터넷 정보 통신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충실히 해야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정책·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 촉진

(1)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위한 학습자, 오류 말뭉치 등 기초 언어 자원 구축

한국어교육 정보화를 위한 기초 언어자원 구축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한국어기초사전” 내에서 활용될 990항목의 삽화·사진·동영상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 990항목의 자료를 모두 구축하였고 이를 “한국어기초사전”에 탑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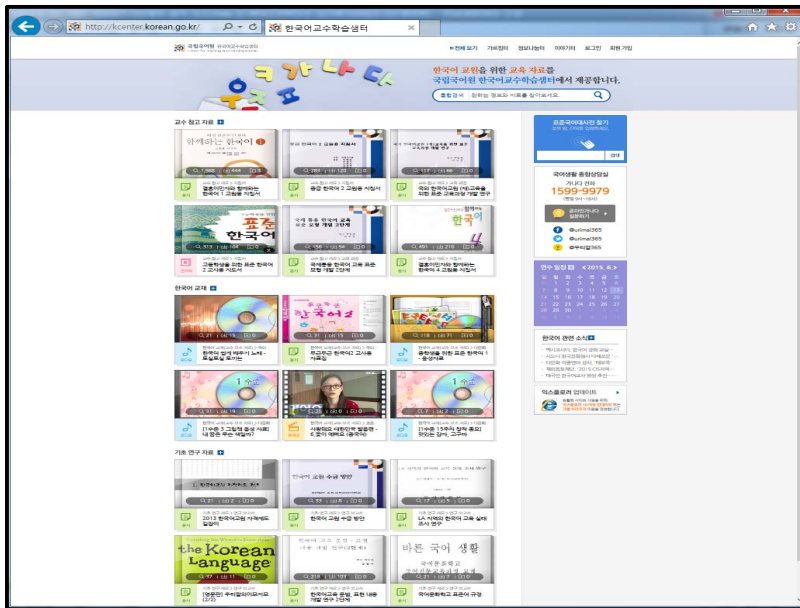
외국어로써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쉬운 말로써 어떤 어휘 또는 개념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한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조 도구를 제시하여 이해와 학습을 돕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보조 도구로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삽화·사진·동영상 및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이다. 따라서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효율적인 도구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육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학습 자료를 다변화하고, “한국어기초사전”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가 한국어교육 정보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것이 교육 정보화의 핵심적인 내용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정보화는 무엇을 의미하여, 그것은 또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같이 최신 동향 및 기술을 반영한 코스웨어(courseware) 형태의 자료 제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소수자, 외국인용 한국어 교수, 학습 지원 체계 구축

소수자 외국인용 한국어 교수 및 학습을 돕기 위한 온라인 교수 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획에 따라 2014년에 온라인 한국어교수학습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그

결과 국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교수 참고 자료’, ‘한국어 교재’, ‘기초 연구 자료’ 등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수업 자료실 등으로 이루어진 가르침터, 정보 나눔터, 이야기터 등의 메뉴로 구성된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kcenter.korean.go.kr>)”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8]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kcenter.korean.go.kr>)

이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국내외 한국어교원들에게 한국어교육에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것인데, 이는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의 한국어교육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이런 대응은 교원들의 한국어교육 정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 및 한국어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어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언어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국어교원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교수학습센터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다.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

1) 지역어 자료 조사 및 구축을 통한 언어문화 자료 보존

소멸해 가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어 자료를 실제로 조사하고 여기에서 얻은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어 구술 자료 전사,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어 자료 구축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어 구술 자료 전사는 지역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9개 권역 지역어의 구술 자료를 전사하고 표준어로 대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처음에 목표했던 국내 9지점(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과 국외 2지점(중국, 우즈베크)의 지역어 구술 자료의 추가 전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다. 이처럼 조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고 표준어로 대역한 것은 국내의 지역 언어 사용의 모습을 포착하여 자료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어와 지역의 언어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3년도를 끝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바라 하겠다. 지역어가 서 있을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에 실린 지역어 자료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방언 자료 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어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면에서도 이 사업은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조사 지역을 일본이나 미주 등으로 넓히고, 사회적 계층에도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지역어 자료 조사 현황

〈표 3-19〉 한국어의 지역어 분포 조사 실적('13년~'14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1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8지점)	경기(인천광역시), 강원(정선군), 충북(영동군), 충남(천안시), 전남(광양시), 경북(봉화군), 경남(하동군), 제주(서귀포시)
2011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3지점)	중국 길림성 도문시, 연변조선족자치주(무주촌), 영길현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12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9개 권역별 4개 지점씩)	경기(용인, 화성, 포천, 파주), 강원(삼척, 원주, 양양, 홍천) 충북(제천, 청원, 충주, 돈화) 충남(공주, 대전, 논산, 서천) 전북(완주, 남원, 무주, 군산), 전남(함평, 곡성, 진도, 영광), 경북(경주, 상주, 청송, 고령), 경남(고성, 창원, 창녕, 산청), 제주(건입, 한경, 호근, 표선)의 구술발화 자료 2시간 분량 전사 및 대역
2012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1지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2013년~2014년 진행된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은 2010년~2012년 수집한 어촌 4개 권역의 기초어휘 자료집을 정리하고 기초어휘 조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한 사업을 질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어촌 지역의 언어문화를 자료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데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 이와 같은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은 아직도 조사하고 수집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 장기간의 계획과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데도 2013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표 3-20〉 민족생활어 조사 현황

민족생활어 조사	조사 지역	추진 실적
2007년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도	해녀·어부·민속주 조사
	경북 북부 지역	제례음식, 혼례음식, 향토음식
	전북 전주	민족건축어
	경북 영덕, 칠곡, 문경	육지 해녀, 미역업, 어부, 옹기장, 대고장, 유기장
	경북 성주, 경산	세시풍속, 민속놀이, 짚생활어, 소목장
	전북 부안, 순창	김치, 젓갈, 장아찌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	심마니·한지장·광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 진례면	옹기장, 사기장
	충남 금산, 대전	금산 사람들의 생활어, 대장장이, 무속인, 단청장
	전남 담양	참빗장, 죽렴장, 부채장, 채상장, 악기장

민족생활어 조사	조사 지역	추진 실적
2008년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도	구덕, 차롱
	경북	안동포 길쌈
	서울, 경기	단청장
	대구	모필
	경남	두석장
	충북	시장(矢匠)
	강원도	사찰생활어
	경기	남사당놀이
	충남	초고장, 승무
	전남	나주소반장
		제주도, 경북 북부, 경북 동부, 경남, 충북, 강원도, 경기도, 충남, 전남, 중국 조선족
2009년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도	호상옷
	경북	경북 북부지역 토속음식
	전북	남원목기
	경북 영천, 경산, 영덕	장 담그기
	경남	임신, 출산
	충북	배첩장
	강원도	한지 공예
	경기도	도검(刀劍)
	대전·충남	북 메우기
	전남	한과(남도 의례 음식장)
	제주도, 경북 북부, 전북, 경북 동남부, 경남, 충북, 강원, 경기, 대전·충남, 전남	떡
2010년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도 서부(비양도)	비양도의 고기잡이
	동해안 남부(경북 경주 감포읍)	그물 손질부터 어판장까지
	서해안 중남부(부안, 영광)	염전
	남해안 중부(경남 남해군 삼동면)	죽방렴
	제주도 서부(비양도) 동해안 남부(경북 경주 감포읍) 서해안 중남부(부안) 남해안 중부(경남 남해군 삼동면)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민족생활어 조사	조사 지역	추진 실적
2011년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도 동부(우도)	해초류
	동해안 북부 (강릉시, 평창군)	명태잡이에서 덕장까지
	서해안 중부(태안)	자염
	남해안 서남부(해남)	돌살, 김 양식
	제주도 동부(우도) 동해안 북부(강릉) 서해안 중부(태안) 남해안 서남부(해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2년 민족생활어 조사	제주도 근해(추자도)	추자도 고기잡이
	동해 근해(울릉도)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
	서해 근해(외연도)	외연도의 어로 생활
	남해 근해(옥지도, 가덕도)	채낚기, 송어들이
	제주도 근해(추자도), 동해 근해 (울릉도), 서해 근해(외연도), 남해 근해(옥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지역어 자료 구축은 2004년~2012년 사이에 수집된 지역어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전사하여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자료로 구축한 파일은 총 59건으로 애초 목표로 삼았던 40건 대비 147.5%로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초 자료로 재구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와 지역어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지역어 경연대회를 지역 축제로 활성화

지역어 경연대회를 지역 축제로 활성화하여 지역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경남(13년)과 강원(14년)에서 예정대로 지역 축제와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

이 두 행사는 모두 ‘민속 문화의 해’와 연계하여 추진된 것인데, 이처럼 지역어 경연대회를 지역 언어문화 행사로 승격시켜 개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지역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행사로

치러냄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언어문화 행사의 모형을 개발·보급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2013년 마이 오이소 사투리 한마당



2014년 마카오서요 사투리 한마당

[그림 3-19] 지역어 경연대회 사진

다만 행사의 성격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어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언어문화 정체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성격을 고려하여 세부 행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그들이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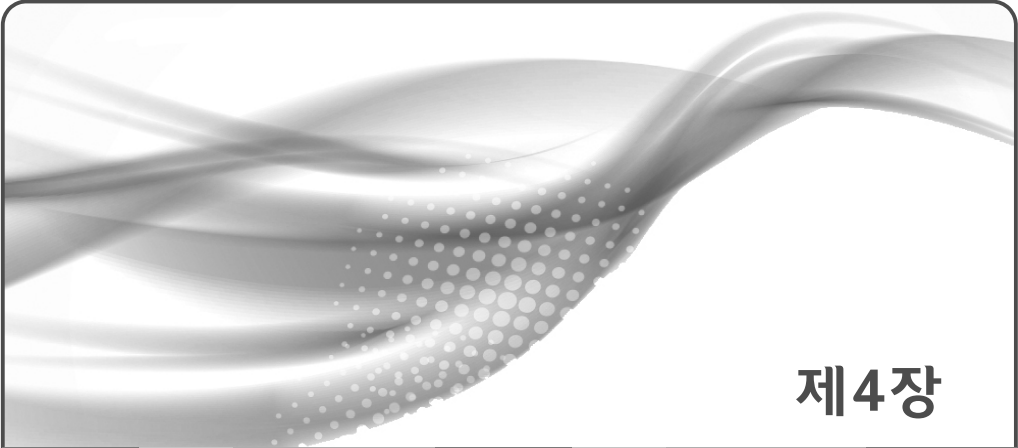
3) 지역어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 자료를 개발

지역어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어 어휘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어를 활용한 언어문화 상품 개발 공모전’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 차원의 지역어 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지역어 진흥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역어를 활용한 상품의 원형 개발 정책 및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지역어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이 사업이 지역어를 진흥하는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현 문화 산업과의 연계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바일의 특성상 그 효과의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하게 한다.

지역어 학습 자료 개발은 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를 전사하고 민족생활어의 기초 어휘 자료집을 정리함으로써 지역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역어 학습 자료는 지역어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습 도구로 필요하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2건을 모두 개발하였으나 이렇게 만든 자료가 아직은 지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에 머무르고 있어, 교재의 개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어 조사 자료와 민족생활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어 학습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제4장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제1절 비전과 목표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제4장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제1절

비전과 목표

언어 공동체 내부에서 시행하는 언어정책의 목표는 공동체의 필요가 투영된 언어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우리 언어 공동체에 있었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어 국민의 자긍심과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연합이 출범하였고, 한국어의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어 출범하였으며, 국어 문화유산 및 한글문화 확산을 담당할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이로써 이전에 비해 언어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수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우리말을 아끼고 잘 가꾸며, 쉽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쓰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여전히 있다. 이로 인해 품격이 낮은 표현들이나 언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의 표현이 널리 나타나고, 외래어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는 서로 간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더욱 늘어나 국민의 언어생활이 각박해지고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런 국내의 상황은, 국외에서는 한글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 한국어 붐이 확산되어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바이다. 이런 국내외 국어 환경의 비대칭적인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어사용의 현실과 국민들의 국어에 관한 의식과 관련 지식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을 보여 주는 국내외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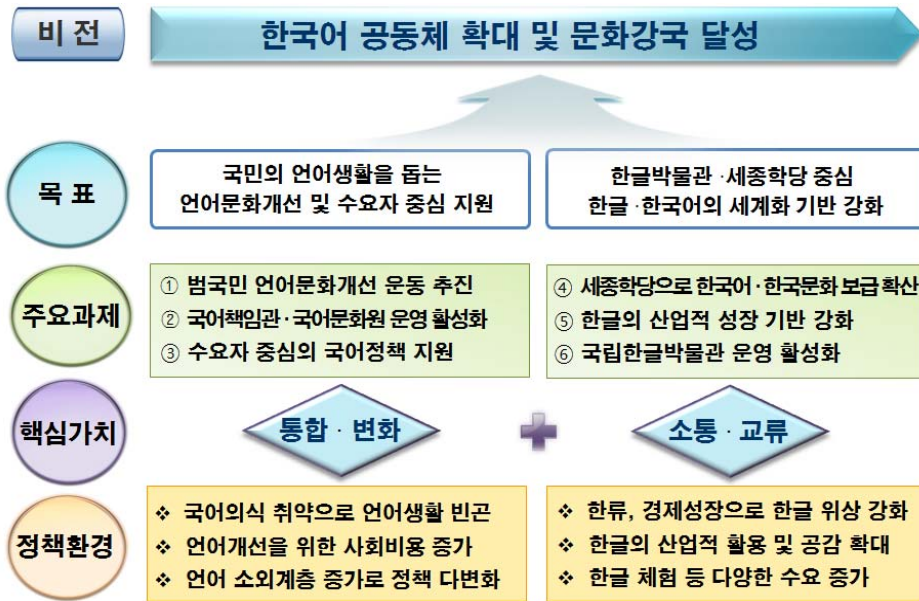
〈표 4-1〉 국내외 국어 환경의 비대칭적 상황

국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한국어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낀다(98.2%) ◎ 평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평균 30.6%, 청소년 96%) ◎ 민원서류나 금융기관의 서류에 쓰인 말이 어렵다(54.7%)
국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사용자: 7천7백만 명(세계 13위 언어) ◎ 세종학당: 13개국 23개소('10년) → 54개국 130개소('14년) ◎ 한글학교: 114개국 1,885교('10년) → 116개국 1,918교('14년) ◎ 한국어 채택 초·중등학교: 21개국 525교('10년) → 26개국 1,111교('14년) ◎ 한국학과 개설 대학교: 57개국 688교('10년) → 81개국 845교('13년)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언어정책은 한국어 공동체 확대 및 문화강국 달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와 여섯 가지 주요 과제를 세워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 가지 목표의 첫째는 국민의 언어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어문규범을 현실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새롭게 출범한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재단을 중심으로 하여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 국어 상황과 국외의 국어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서 수립한 비전과 목표로 국어문화의 개선과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국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런 비전과 두 가지 목표 아래에 첫째 과제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추진, 둘째 과제로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 셋째 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국어 정책 지원, 넷째 과제로 세종학당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산, 다섯째 과제로 한글의 산업적 성장 기반 강화, 여섯째 과제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의 6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가치는 언어공동체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어사용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과 한국어 사용자 간의 소통과 교류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어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4-1] 앞으로의 언어정책 비전과 목표

이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추진인데, 이 과제는 ① 쉽고 바른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 ② 고품격의 바른 언어 사용을 선도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③ 미래세대의 자율 참여로 가꾸가는 청소년 언어, ④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홍보 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소통하는 데에 훌륭한 도구로서 공공언어와 방송 언어 등의 매체 언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의 우리의 언어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언어를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과제를 추진할 때, 관이 앞장을 서기보다는 국민들의 국어의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참여가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둘째 과제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인데, 이 과제는 ①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② 국어문화원을 지역 국어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육성, ③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연계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각 지역별 거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며, 국어의 살을 찌우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국어책임관을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국어 문화와 국어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국어정책 지원인데, 이 과제는 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어·언어정책 구현, ② 국어 소외계층의 언어능력 향상 지원, ③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국어정책에서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교육 등을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넷째 과제는 세종학당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산인데, 이 과제는 ① 부처간 협력 및 기업 후원 유치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 강화, ② 교육과정 다양화 및 시설 지원 등의 운영 내실화, ③ 세종학당 운영 체계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국외 한국어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조직의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기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국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섯째 과제는 한글의 산업적 성장 기반 강화인데, 이 과제는 ① 국민 참여 한글문화 축제 활성화, ② 한글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한글이 우리들에게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고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섯째 과제는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활성화인데, 이 과제는 ①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는 기획 전시 개최, ② 문자, 언어 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교육 강좌 운영, ③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공공자원화 추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으나, 개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운영을 어떻게 알차게 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박물관이 한글을 문화·산업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며, 한글문화자원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전 세계인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알리는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1.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추진

1.1. 쉽고 바른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

쉽고 바른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의 쉽고 올바른 언어 사용이 선행해야 한다. 즉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정부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도 자료의 표현부터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낸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매월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 문서에 들어가는 전문용어, 어려운 말, 외래어들을 개선하고 표준화하고 순화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잘되는 공공언어를 구현하는 데에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을 중점 지원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어전문관’(국어책임관 보좌) 설치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13. 12. 박성호 의원 발의)하고, 국어문화원을 확대(15년 5개 내외)하여 지역 언어문화운동 거점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며 전국의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수회도 개최(15. 8. 예정)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언어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어정책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므로 상시 공공언어 감수와 점검,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 마련과 보급(15. 3.), 맞춤형 교육 지원(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순회강연 등), 전화·온라인 상담 지원 등의 공공언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1.2. 고품격의 바른 언어 사용을 선도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국민이 품격이 있는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송과 인터넷 언어가 개선되고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일은 언어 사용 주체인 방송과 인터넷 쪽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직능단체 및 방송국 협업을 통한 자율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방송인 스스로 언어문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에 지원하고, 방송 프로그램(예: MBC 우리말 나들이)과 연계한 바른 언어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방송언어의 오염·청정 정도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을 제공하는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언론인들이 언어 의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인 언어 의식 개선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기획 과정을 개설하거나 방송·신문 등 대중매체 종사자를 위한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제공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인터넷 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플’을 예방하는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학부모 대상 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학부모 아카데미, 참여형 공연 교육 등) 등을 강화하며, 전국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등의 바른 댓글 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1.3. 미래세대의 자율 참여로 가꾸어 가는 청소년 언어

앞으로의 국어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두루 활발히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역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 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언어생활 개선 방안을 담은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바르고 고운 우리말’)를 개발하여(16차 시) 보급하며, 한글주간과 연계한 ‘자랑스러운 한글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언어 예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성e언어’(EBS, 4분), 감동 언어 영상 콘텐츠 제작·방영, 보급(6월, 전국 학교)을 통

하여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주제로 재미와 교훈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종탄신(5월)부터 한글날(10월)까지 우리말과 우리글을 주제로 한 전국 경연대회(‘청소년 언어문화 동영상(UCC)’ 공모전, 연극제, 경진대회, 가요제, 우리말 겨루기 등)를 개최하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축제(MBC ‘시낭송회’, 아나운서연합회 ‘우리말 콘서트’ 등)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돕고자 한다.

1.4.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홍보

이와 같이 전개되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며, 주요 일간지나 정부 정책홍보 책자 등에 기획보도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여러 행사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범국민연합이 주도하는 언어문화 콘서트, 경진대회, 동영상(UCC) 공모전, 연극제, 성인 문해 백일장 등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공연 및 경연 대회를 열고자 한다. 또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누리집(www.urimal.kr)을 통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인터넷 포털 누리집에 언어문화 개선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누리소통망 활용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2.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운영 활성화

2.1.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국어 관련 진흥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국어진흥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하여 2014년에는 38개인 것을 2015년에는 60개로 늘리고자 한다. 그리고 '국어전문관'(국어책임관 보좌) 운영을 권고하고 국어전문가 과정(국어문화학교) 수강을 권고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자체 국어책임관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15년 지자체 합동 평가의 평가 지표에 국어 활동 실적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2.2. 국어문화원을 지역 국어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

지역 국어문화운동의 거점으로 국어문화원이 각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어분야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문화원을 신규로 지정하여 확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에 20개소인 것을 2015년에는 25개소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국어문화원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평가를 하여 이에 걸맞게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자녀, 노인 등의 각 지역 국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말글 강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바른 공공언어 쓰기 강연을 하며,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전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3.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연계 강화

이처럼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이 서로 연계를 맺어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매월 주요 지역별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자체 국어책임관 및 지역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연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지역 국어 발전과 지역민의 국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상호 연계 속에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수요자 중심의 국어정책 지원

3.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어언어정책 구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문규범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상시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어문규범 종합 관리 시스템을 2015년~2016년에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언어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표준어를 추가 사정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있는 오류 수정안을 심의하여 2015년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언어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편찬하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구축된 항목들의 질적인 개선에 힘을 쏟아 교정·교열(27만 항목) 및 정비·보완(관련어 5만 항목, 전문용어 재분류 23만 항목 등)을 할 예정이고,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만들고 있는 다국어사전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대상으로 각 언어당 1만 5천 항목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확대하고 번역 표준안을 보급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용어의 표준적인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가 참여하는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전국 지하철역명 번역 통일안을 마련하고, 2016년 이후는 공공용어 번역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할 것이다.

3.2. 국어 소외계층의 언어능력 향상 지원

한국어 화자들이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국어 화자들의 언어능력이 고루 발달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 교실’을 1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맞춤형 교재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

한 국어사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준어 교육(발음·억양, 어휘·표현, 어문규범 등)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인들(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법안이 2015년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수어 말뭉치 구축, 수어 전문용어 사전(사회복지, 의료, 법률) 구축, 문화정보 수어 영상 개발, 수어 연구 및 점자 표준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어 및 점자 사용자와 수어 및 점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어와는 구분되는 독자적 언어로서의 수어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3.3.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국민의 국어 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어 능력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 및 공무원, 교사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문화학교 등의 현장 탐방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특강을 개설하도록 할 것이다.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어 관련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국어 능력에 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 배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력과 학습 부진' 과목을 신규로 개설하고, 독서·화법 특별 과정을 각 2회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언어 향상 과정을 연 2회에 걸쳐서 개설하며,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와 대학 교양국어 강사 과정도 각 1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세종학당으로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산

4.1. 부처 간 협력 및 기업 후원 유치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 강화

국외 한국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조직적 연대와

협조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하는 ‘세종학당정책 협의회’를 2015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국외 한국어 효율적 보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해 갈 것이다. 그리고 국외 주요 대학 및 공공기관(국외지사) 등의 전략적인 학당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등의 후원을 유치하여 교육 자료, 기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4.2. 교육과정 다양화 및 시설 지원 등의 운영 내실화

한국어교육을 입체적으로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과정을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문화 체험 과정(영화·무용 등)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을 늘려서(14년 16명→15년 20명) 파견하고자 한다. 그리고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의 형태로 개발하고 앱을 개발하여 모바일 학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에 파견되는 교원의 수를 2014년의 38명에서 2015년에는 50명으로 확대하고, 우수 학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 우수 학습자 초청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4.3. 세종학당 운영 체계 강화

국외 한국어 보급과 진흥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이 질 높게 운영되면 한국어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세종학당의 알찬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등의 평가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 성취도 파악을 위한 평가 시험을 2014년의 초급에 이어서 2015년에는 중급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보완 교육 또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한글의 산업적 성장 기반 강화

5.1. 국민 참여 한글문화 축제 활성화

한글이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한글에 관해서 느끼고 한글의 가치를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한글문화 축제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에서도 한글사랑캠페인(목포대), 우리말겨루기대회(상명대) 등의 한글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국외에서도 한글축제(파리), 한글날 글짓기(나이로비), 한국노래대회(오번) 등의 세종학당을 통한 한류 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주한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계 행사로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고, 외국인 한글 글짓기·말하기 대회와 외국인 참여 전통 민속경연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즐거움과 보람이 함께하는 한글문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2. 한글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한글, 정보기술(IT), 문화 등이 잘 어우러지는 한글의 산업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글 국제 공모전을 추진하고, 한글날(한글주간, 10월)에 대외 수상작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 한글 활용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6.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활성화

6.1.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는 기획 전시 개최

국립한글박물관의 성공적 개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글의 여러 가치를 전 세계인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또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현대 작가들이 말과 글을 부리는 방식(가제)’, ‘한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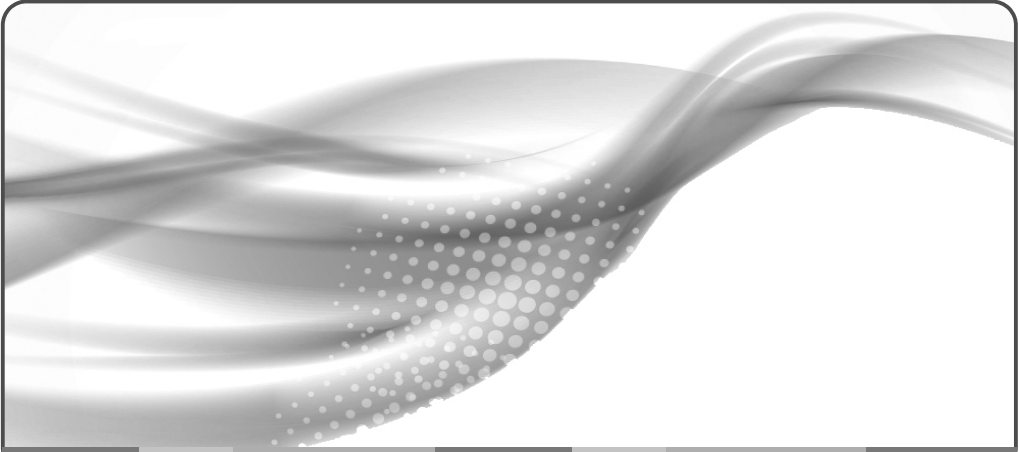
화 - 활자와 디지털 매체(가제)'와 같은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자 한다.

6.2. 문자, 언어 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교육 강좌 운영

한글 탐험, 한글 보따리 등 어린이·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21종에 걸쳐서 개발하고 운영하여 한글이라는 문자가 서로 간의 소통과 소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문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가치를 만들어 가는지를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6.3.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공공자원화 추진

한글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각 시대에 걸쳐서 어떤 도구로써 어떤 가치를 생산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글 창제 이후부터 근현대를 망라하는 한글문화자원을 체계적 수집하여 정리하고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한글의 옛 모습을 이해함은 물론이고 한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글의 역사와 현시대 문화 현상(정보화, 세계화, 산업화 등)을 반영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글 자료를 구입하고 소장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기증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한글문화유산을 언제든지 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디지털 한글박물관을 개편하여 2015년 한글날에 재개관하기로 한다.



부
부

국 어 기 본 법

제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24호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제1장 총 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 (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보 칙 <개정 2011.4.14.>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부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
일부개정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일부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3호
일부개정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4호
일부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일부개정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2호
일부개정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7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에는 지역·나이·성(性)·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 임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조(국어심의회 회의)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국어심의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의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8.22.]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3조의2(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2. 한국어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3. 삭제 <2014.12.2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2.8.22.]

제14조의3(협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12.8.22.]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8.22.]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전문개정 2012.8.22.]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삭제 <2008.10.20.>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출 것
 - 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 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

답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에 상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7.16.]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부 칙 〈제25872호, 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8.2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응용 언어학, 언어학 개론, 대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심리 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 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 교수 이론, 한국어 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 이해 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 교육론, 한국어 한자 교육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 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 문학 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 문화 비평, 현대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등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2.8.2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4조제3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14)]

한국어교원자격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 호
Certificate Number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Qualification Grade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무시험 검정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 호 목 자격기준
3. 수여 조건: 해당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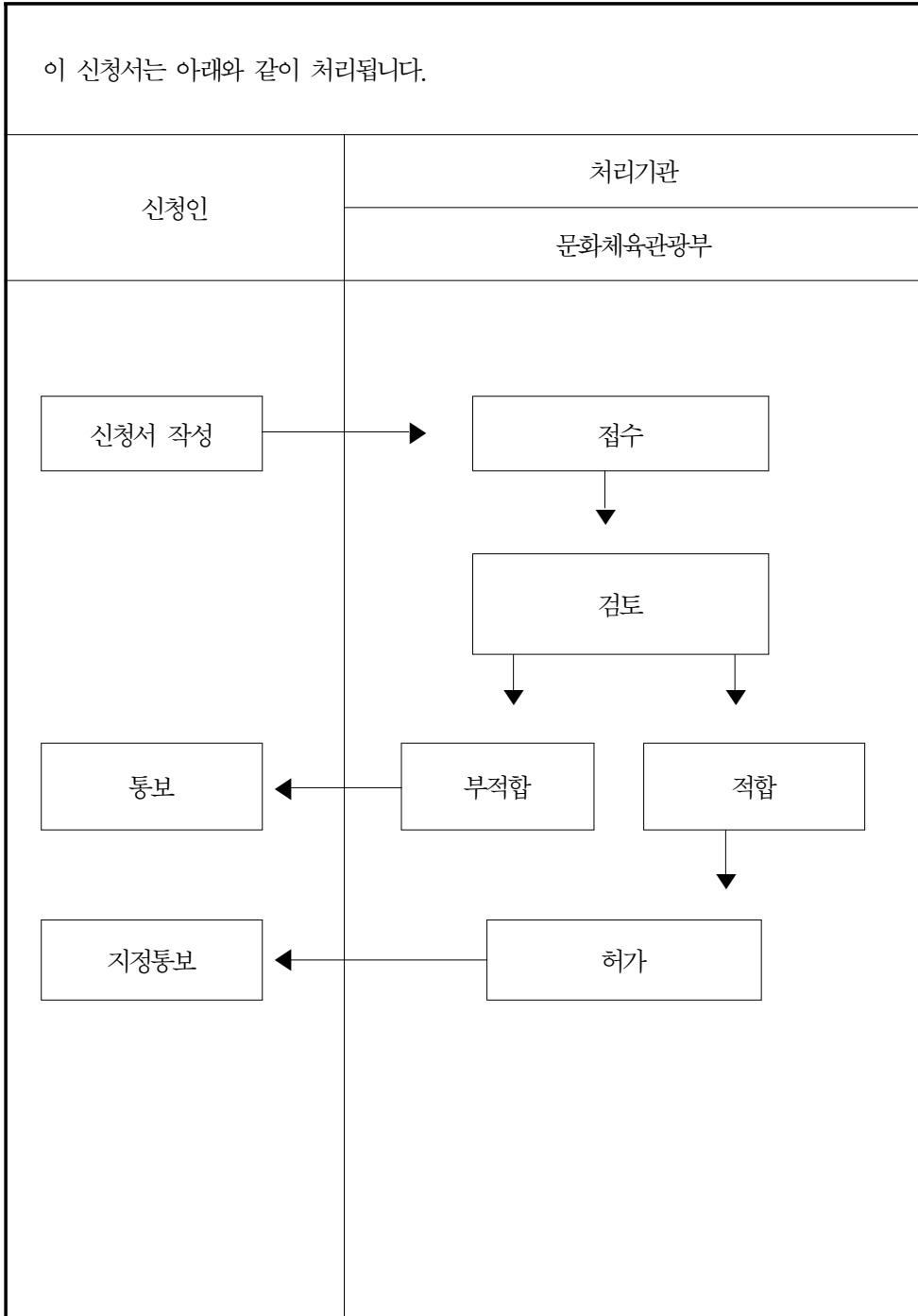
(앞쪽)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단체명·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 요망 사항 :				
<p>「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시행 2011. 6.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단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 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 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반명함판, 3×4cm)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영문) <small>※여권에 적힌 이름</small>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국 적	
	④주소	<small>※자격증 발송 주소임</small>		⑤전화(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⑦신청 등급	()급-()번			⑧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⑨학력	부터	까지	최종 학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⑩양성 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시간		
				
⑪한국어 교육 근무경력	부터	까지	근무기관	직위(급)	발령자	
				
				
				
<p>「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 구비 서류: 뒤쪽 참조 ※ 작성 시 유의 사항: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②번란에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⑧번란부터 ⑩번란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⑪번의 직위(급)란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수 수 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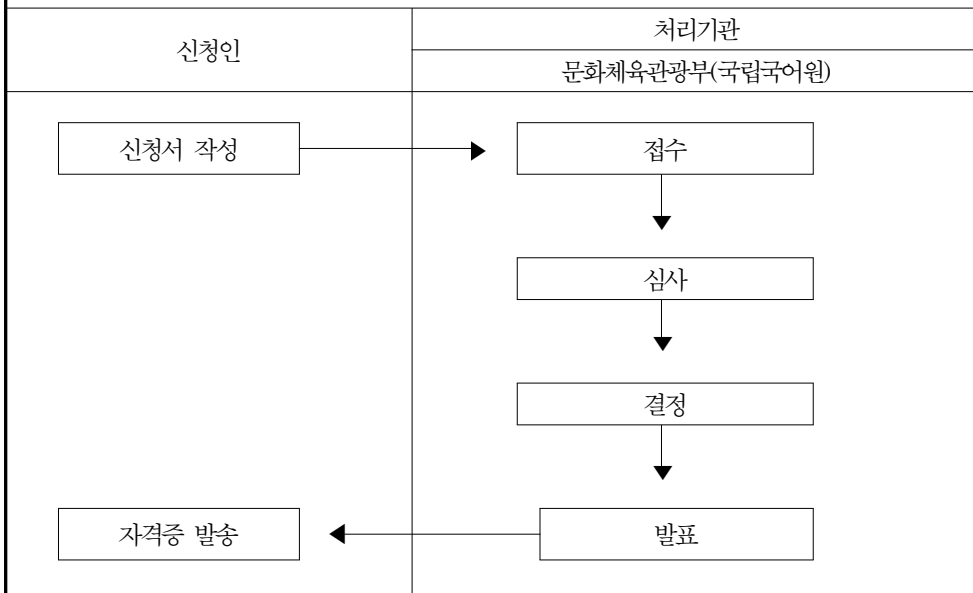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뒤쪽)

※ 구비 서류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기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 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시간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시간		()시간					
	<p>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발급 기관의 장</p>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left: 100px;">직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강의 경력	연도	학기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	비고
강의 시간 합계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직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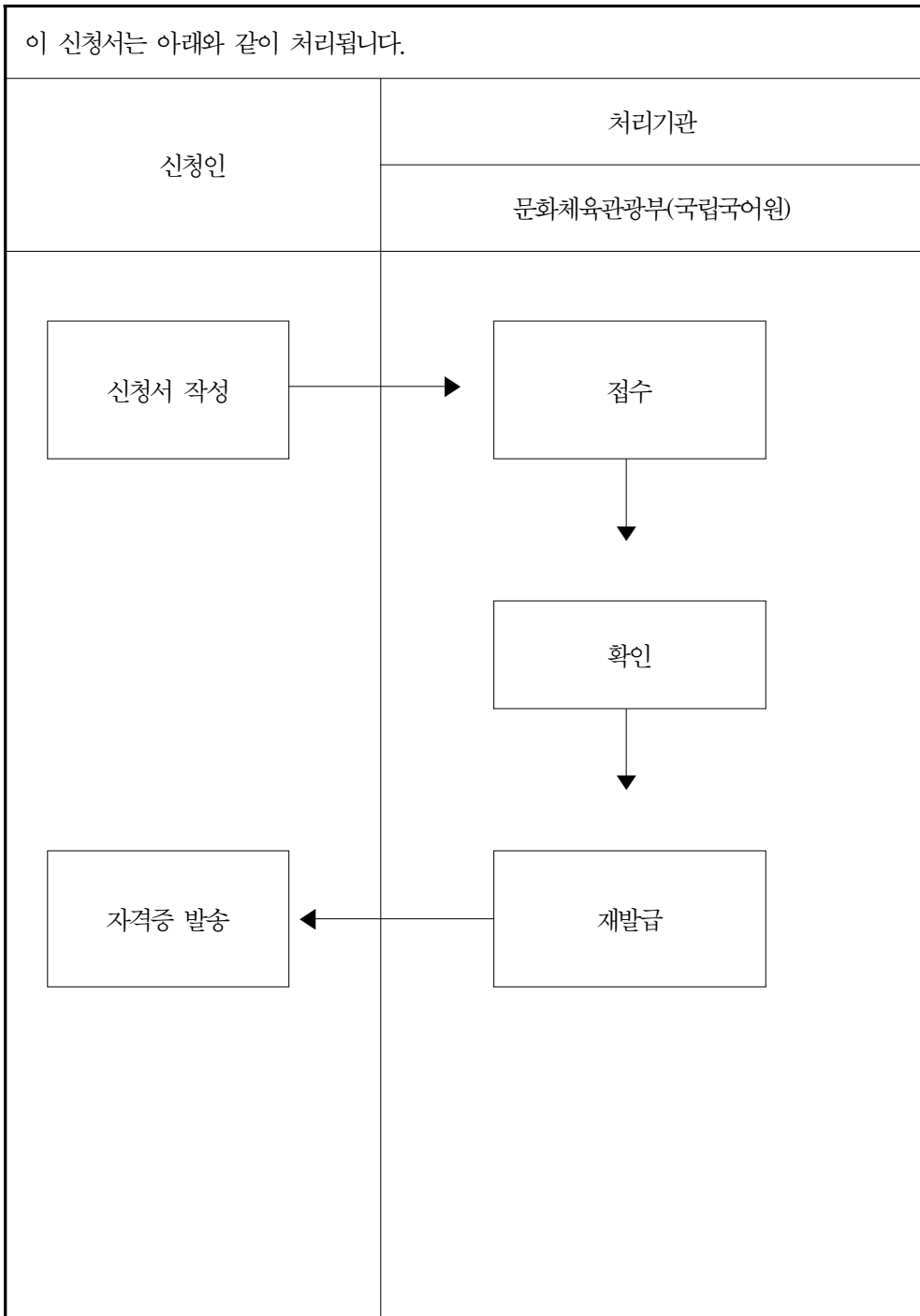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자 우 편		전화(휴대전화)	
	주 소			
자 격	등 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p>「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수 수 료	수입인지 10,000원
<p>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5호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신청 기관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① 신청 과목명			② 과목의 해당 영역 () 영역	
③ 과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부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박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학부 연계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다른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교양과목 <input type="checkbox"/> 전공 교직과목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④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토론식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접 기재:)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학점 / 시간		
	기타			
⑤ 주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부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⑦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신청 기관의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60px;"> 직인 </div> </d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신청과정		□ 대학(학부과정) □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신청기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1. 한국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4. 한국 문화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5. 한국어교 육 실습			
총 과목 수	(개)			총 학점	(학점)		
붙임 서류: 교수요목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신청 기관의 장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직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신청기관명				과정명			
과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단기 집중과정 <input type="checkbox"/> 방학과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정원				교육기간			
수업일수/주당				수업시간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어학				3.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교 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5. 한국어 교육 실습			
총 과목 수	(개)		총 이수시간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정 소개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신청 기관의 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직인 </div>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국어심의회 운영세칙

제부개정 1995. 12. 23.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일부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28호
 전부개정 2009. 10. 1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일부개정 2014. 5.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취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3조(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전문소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 선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 각각 호선한다.

제7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① 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1인이 심의회나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

로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의결) ① 심의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①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개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회의 참석자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협조 요구) ① 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에게 의뢰)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

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지명) ① 영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어문 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임무) ① 영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보관 및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6조(수당 등)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업무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의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31호, 2014.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축 기 간 : 20 ~ 20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

위원님 귀하

회의 구분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심의 안건	
심의 자료 내 용	
심의 자료	'붙임'과 같음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어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일정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또는

() 위원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심의회(분과위원회) 회의록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어심의회(또는 분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간 사 (인)
 ()서 기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1. 안 건 :
2. 수명 기간 :
3. 결과 보고 내용('붙임'과 같음)
4. 검토 의견

5. 전문소위원회 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어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위원회 위원장 (인)

()소위원회 간 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총괄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집필	강미영(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이운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황용주(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박용찬(대구대학교 교수) 방성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준환(창원대학교 교수)
편집	신능호(국어정책과 주무관) 조민령(국어정책과 주무관)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인쇄일 | 2015년 7월 7일

발행일 | 2015년 7월 7일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전화 | (044)203-2536, 전송: (044)203-3467
www.mcst.go.kr

인쇄처 | 계문사 (044)868-7451